

2019

사회적경제 정책 모니터 보고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2019.12.31.

목 차

1. 정책모니터링의 의의	4
1. 정책모니터링 사업의 목적	4
2. 정책모니터링 사업의 추진경과	5
3. 결 론	6
2. 정책별 평가	7
1. 통합 지원 체계	9
2. 사회적금융	17
3. 인재양성	41
4. 지역기반 연계 분야	64
5. 사회적 가치	71
6. 사회적경제 기본법	98
3. 총평	122
1. 요약	122
2. 정책 제언	122
4. 부록 [모니터 자료]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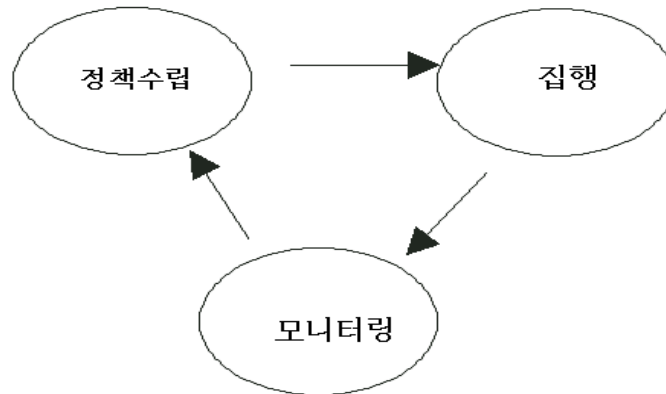
1. 정책모니터링 사업의 의의

1. 정책모니터링 사업의 목적

1. 정책모니터링의 개념

- 정책모니터링은 정책이 집행되고 있는 동안 정책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고 분류하여 향후 미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함
- 정책모니터링은 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결과를 정책결정자에게 전달하여 정책이 지향하는 목표와 목적들을 성취하기 위해 정책을 조정하도록 하기 위함

정책모니터링의 순환도



자료: 한성수 외(2009), 『지역사회서비스 수요자 중심 모니터링체계 개발연구』

2. 정책모니터링의 목적

- 2017년 5월 촛불 시민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언하고,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금융 접근성 강화, 사회적 경제 인력양성 체계 강화, 사회서비스·문화예술·프랜차이즈·소셜벤처·지역 기반 연계 등을 통해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음

○ 이에 연대회의는 사회적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현장의 정책 역량을 제고 할 목적으로 ‘문재인정부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였음

2. 정책모니터링의 주요절차

1. 주요경과

○ 연대회의는 2019년 9월 문재인정부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 할 것을 결의하고 2019년 12월까지 4개월에 걸쳐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체계, △사회적 금융, △사회적 경제 인재양성, △지역 기반 연계, △사회적 가치, △사회적 경제 기본법 분야에서 정책모니터링을 수행하였음

2. 주요절차

○ 정동열(2009)은 정책모니터링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로 자료수집, 분석, 보고서, 대응의 프로세스를 제시하였음

○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절차 등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정책모니터링을 수행하였음

분 야	내 용																						
자료수집 (data collection)	정책모니터링에 필요한 자료수집																						
자료분석 (data analysis)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자료수집</td> <td>⇒</td> <td>자료분석</td> <td>⇒</td> <td>설문지</td> <td>⇒</td> <td>FGI</td> <td>⇒</td> <td>중간 보고서</td> <td>⇒</td> <td>최종 보고서</td> </tr> <tr> <td>10월 4일</td> <td></td> <td>10월 11일</td> <td></td> <td>10월 - 11월 초</td> <td></td> <td>10월25일</td> <td></td> <td>11월22일</td> <td></td> <td>12월31일</td> </tr> </table>	자료수집	⇒	자료분석	⇒	설문지	⇒	FGI	⇒	중간 보고서	⇒	최종 보고서	10월 4일		10월 11일		10월 - 11월 초		10월25일		11월22일		12월31일
자료수집	⇒	자료분석	⇒	설문지	⇒	FGI	⇒	중간 보고서	⇒	최종 보고서													
10월 4일		10월 11일		10월 - 11월 초		10월25일		11월22일		12월31일													
보고서 (reporting)	정책형성(input) - 정책집행(process) - 정책성과(output) 과정 간 정책 충실성, 효율성, 효과성 등을 평가하여 보고서 제출																						
대응 (action)	11월 28일 연대회의의 활동가 대회 토론회 발표 및 신문기고																						

자료 : 정동열 외(2009), 『정부·자치단체 청년고용정책 모니터링』

3. 결 론

연대회의는 지난 4개월의 정책 모니터링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경제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양극화와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다만, 사회적 경제 분야를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롭게 시도된 과제여서 정책들이 본 궤도에 오르는 데는 시간과 투자가 필요함 역시 확인하였음

이에 연대회의는 작은 주춧돌을 놓는다는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주마가편(走馬加鞭)의 심정으로 정책모니터링의 결과를 정리하여 발신하며, 정부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작업이 헛된 메아리가 되질 않길 바라고 있음

한편 연대회의는 2020년에는 2019년 진행한 경험을 살려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나갈 예정임

2. 정책별 평가

1. 통합 지원체계
2. 사회적 금융
3. 인재 양성
4. 지역기반 연계 분야
5. 사회적 가치
6. 사회적경제기본법

1. 통합 지원체계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 강민수

목 차

- I.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모니터링의 목적과 절차
 - 1. 정책모니터링의 목적
 - 2. 통합지원체계 모니터링 절차
- II. 통합지원체계에 대한 모니터링 지표 설정
 - 1. 통합지원체계의 개념
 - 2. 평가의 범주와 지표의 설계
- III. 문재인정부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정책 분석 결과
 - 1. 주요정책
 - 2. 설문조사결과
 - 3. 이해관계자 인터뷰 결과
- IV. 정책 제안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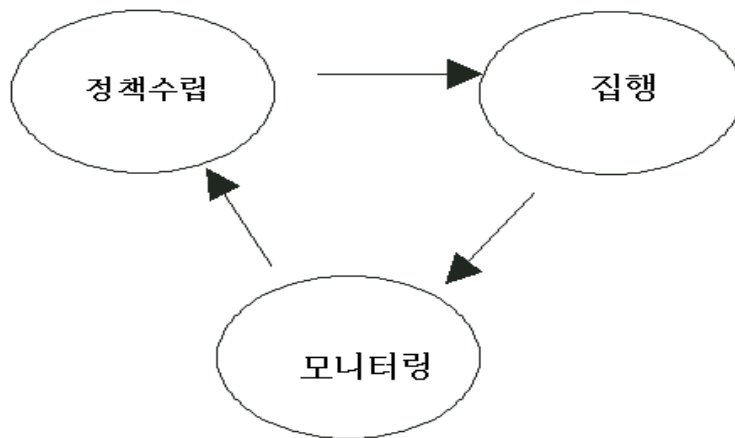
I.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모니터링의 목적과 절차

1. 정책모니터링의 목적

○ 정책모니터링의 목적

- 정책모니터링은 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결과를 정책결정자에게 전달하여 정책이 지향하는 목표와 목적들을 성취하기 위해 정책을 조정하도록 하기 위함(한성수 외, 2009)

정책모니터링의 순환도



자료: 한성수 외(2009),『지역사회서비스 수요자 중심 모니터링체계 개발연구』

○ 정책모니터링의 목표

- 연대대회의 통합지원체계 정책모니터링은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수립을 위한 정책형성과정에서의 충실성, 정책집행과정에서의 효율성, 정책성과의 효과성을 추적하여 사회적경제를 위한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데 있음

2. 문재인정부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모니터링 절차

○ 주요절차

- 정동열(2009)은 정책모니터링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로 자료수집, 분석, 보고서, 대응의 프로세스를 제시하였음
-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절차등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정책모니터링을 수행하였음

분야	내용																						
자료수집 (data collection)	통합지원체계 정책모니터링에 필요한 자료수집																						
자료분석 (data analysis)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border: none;">자료수집</td> <td style="border: none;">⇒</td> <td style="border: none;">자료분석</td> <td style="border: none;">⇒</td> <td style="border: none;">설문지</td> <td style="border: none;">⇒</td> <td style="border: none;">FGI</td> <td style="border: none;">⇒</td> <td style="border: none;">중간 보고서</td> <td style="border: none;">⇒</td> <td style="border: none;">최종 보고서</td> </tr> <tr> <td style="border: none;">10월 4일</td> <td style="border: none;"></td> <td style="border: none;">10월 11일</td> <td style="border: none;"></td> <td style="border: none;">10월 - 11월 초</td> <td style="border: none;"></td> <td style="border: none;">10월25일</td> <td style="border: none;"></td> <td style="border: none;">11월22일</td> <td style="border: none;"></td> <td style="border: none;">11월28일</td> </tr> </table>	자료수집	⇒	자료분석	⇒	설문지	⇒	FGI	⇒	중간 보고서	⇒	최종 보고서	10월 4일		10월 11일		10월 - 11월 초		10월25일		11월22일		11월28일
자료수집	⇒	자료분석	⇒	설문지	⇒	FGI	⇒	중간 보고서	⇒	최종 보고서													
10월 4일		10월 11일		10월 - 11월 초		10월25일		11월22일		11월28일													
보고서 (reporting)	정책형성(input) - 정책집행(process) - 정책성과(output) 과정 간 정책 충실성, 효율성, 효과성 등을 평가하여 보고서 제출																						
대응 (action)	11월 28일 연대회의 활동가 대회 토론회 발표 및 사회화(신문기고, 취재협조)																						

자료 : 정동열 외(2009),『정부·자치단체 청년고용정책 모니터링』

○ 자료수집

- 문재인정부가 발표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주요 자료의 수집

○ 자료분석

- 수집된 자료를 분류하고 문재인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해 분석을 수행함

○ 보고서

- 자료를 수집하고 분류하여 정리하고 정책시사점을 얻기 위해 설문조사 및 관련자 인터뷰

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였음

○ 대응

- 중간보고서를 바탕으로 연대회의 활동가 대회에서 활동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과를 외부화 함으로써 정책을 조정 할 수 있도록 제안 함

II.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에 대한 모니터링 지표의 설정

1. 통합지원체계의 개념

○ 통합지원체계

- 통합지원체계란 부처별, 유형별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분산되어 수행되는 정책에 대해 통합적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각 기관의 활동을 상호 연계하거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연계망을 말함

2. 평가범주와 지표의 설계

○ 평가의 범주

- 정책평가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사안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으로 평가대상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라는 내용의 진술과 그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가에 관한 진술로 이루어질 수 있음

-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가 시행된 2013년 이후 진행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환성 외(2014)은 국제과제에 대한 평가는 효율적인 국정운영과 성과 창출을 위해 국정과제를 i) 평가체계, ii) 평가방법론, iii) 평가지표, iv) 성과관리, v) 평가 결과의 환류 및 활용의 범주에서 연구해 왔다고 하였음

○ 평가지표의 설계

- 최영출(2009)등은 경제, 산업분야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정책모니터링을 수행함에 있어 전략적 적합성과 실행가능성의 차원에서 평가요인과 요소를 설계하고 있는 데 이들의 논의를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평가를 위한 범위와 지표를 설계하였음

평가기준과 평가지표

구분	평가기준	평가지표
정책 형성	정책목표의 타당성	- 정책목표의 명확성
	계획내용의 충실성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하위 정책수단(세부사업 등)의 충실성 - 계획수립을 위한 여론수렴 여부 및 관련절차의 이행 여부
정책 집행	시행과정의 효율성	- 일정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여부 - 자원의 효율적 집행 여부
	시행과정의 적실성	- 행정여건과 상황변화의 포착 및 적절한 대응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제대로 알리고 있는지 여부
정책 성과	목표의 달성도	- 당초 설정한 계획목표의 달성 여부
	정책효과성	- 해당 정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여부

- 효과성이란 정책목표 달성의 정도를 의미함
- 효율성이란 투입 대 산출의 비율로 표현되는 정책의 능률성을 판단하는 것 임
- 적정성이란 정책의 집행 결과 처음에 제기된 문제가 어느 정도나 해결되었는가를 가리키는 기준을 의미함
- 적절성이란 어떤 정책의 목표나 정책집행의 결과가 과연 어느 정도나 가치 있는 것이냐를 평가하는 기준을 의미함

○ 문재인정부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에 대한 평가지표의 개발

-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여 문재인정부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정책형성과정에서의 충실성, 정책집행과정에서의 효율성, 정책성과의 효과성을 중심으로 설문을 개발하였으며 설문내용을 보완하고 정책 시사점을 얻을 목적으로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터뷰를 병행하여 수행하였음

III.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정책 분석 결과

1. 문재인정부의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에 관한 주요정책

○ 통합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

- 부처별로 지원제도가 분산되어 있음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비용 유발, 정책연계성저조, 민·관 협업 부족을 초래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문재인 정부는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 대통령 비서실에 사회적경제비서관 직 신설

- 사회적경제비서관이 중심이 되어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넓히고 정부와 공공기관 내 사회적경제 정책관련 정책을 조정하고 있음

○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2017.7.19)

- 사회적경제 활성화 (국정과제 26_기재부)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법 제정 및 사회적경제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적경제 정책 지원을 효율화

○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2017.10.18)

- 통합 지원체계구축을 위해 첫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3법 제정, 둘째,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 및 사회적경제발전위 설치의 2대과제를 제시함

2.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 조사개요

- 목 적 : 문재인정부의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정책에 대한 적절성, 효과성 등 정책전반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개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 기 간 : 2019년 10월 ~ 2019년 11월
- 대 상 : 사회적경제 관련 당사자, 중간지원조직 종사자, 연구자, 공무원 등
- 인 원 : 총 212명
- 자료수집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자가 기입방식
- 분석방법 : 설문응답자 대상 관련항목별 빈도분석

○ 설문내용

- 본 조사에 사용된 조사 설문은 문재인정부 사회적경제 통합추진정책에 대한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성과 사항 및 응답자 일반사항으로 되어있음
- 각 문항의 측정은 Likert 7점 척도방식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음

설문의 구성 및 내용

구 분	세부항목
정책형성	문재인정부의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참여 여부
	문재인정부의 통합지원체계 정책 수립과정에서 의견 반영정도
정책집행	문재인정부의 사회적경제 통합지원 정책의 효과정도
정책성과	문재인정부의 사회적경제에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

○ 응답자 특성

- 전 체 : 212명
- 소 속 : 사회적경제조직 32%, 연합회 등 9%, 중간지원조직 53%, 유관조직 6%
- 경력별 : 1-3년 39%, 3-5년 17%, 5-7년 17%, 7년 이상 21%
- 연령별 : 30세 이하 17%, 30대 36%, 40대 25%, 50대 이상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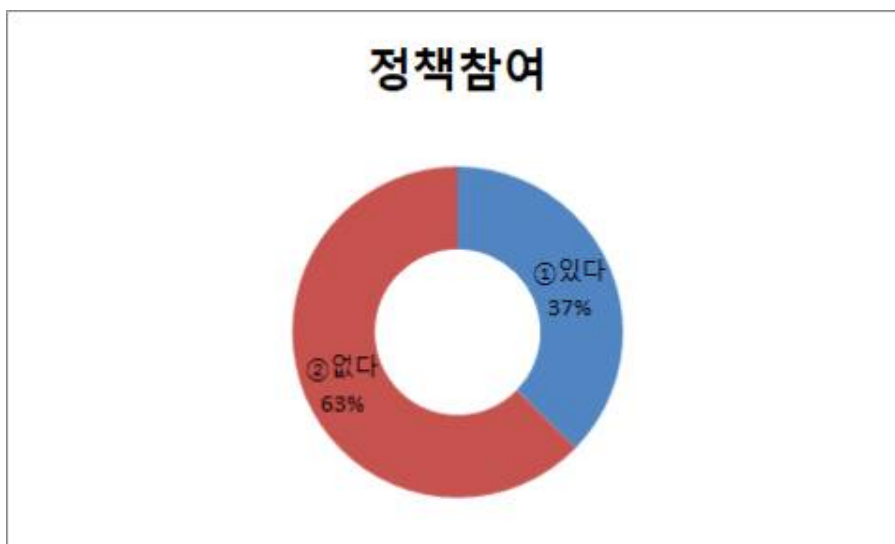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구분

	구 분	빈 도	퍼센트
소 속	사회적경제조직	68	32%
	연합회 및 네트워크	19	9%
	중간지원조직	112	53%
	연구/유관조직	13	6%
경 력	1년~3년	83	39%
	3년~5년	36	17%
	5년~7년 미만	36	17%
	7년 이상	44	21%
	무응답	13	6%
연 령	30세 이하	37	17%
	30대	76	36%
	40대	53	25%
	50대 이상	44	21%
	무응답	2	1%

○ 조사결과 분석

(1) 정책참여

사회적경제 관련자들의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정책 형성 과정에 대한 참여도는 응답자 전체 중 전체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37%가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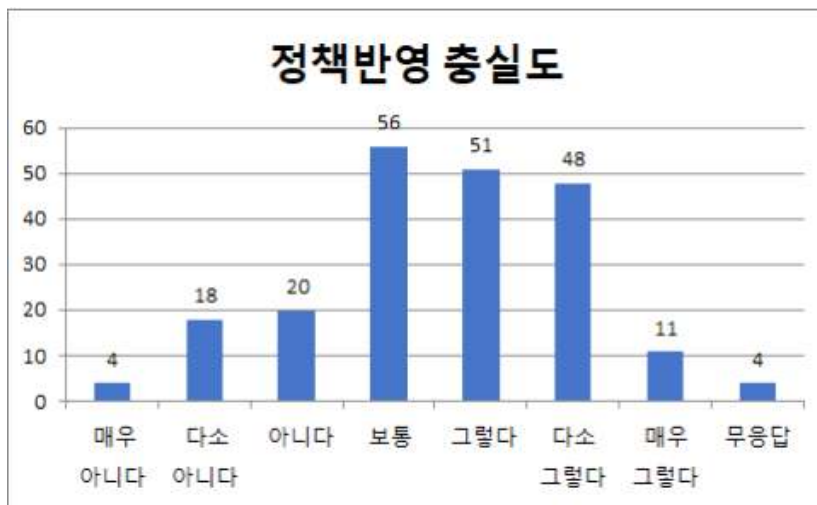


내 용	빈 도		퍼센트
귀하는 문재인정부의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정책 수립 과정에 어떤 경로로든 참여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다	78	37%
	없다	131	63%

한편 구글설문을 통해 응답한 111명을 대상으로 정책 형성과정에 대한 참여 여부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경제 당사자(기업, 연합회)의 경우 통합지원정책과정에 약48%가 참여하였으며, 중간지원조직 종사자는 38%가 정책형성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 되었음

(2) 정책반영 충실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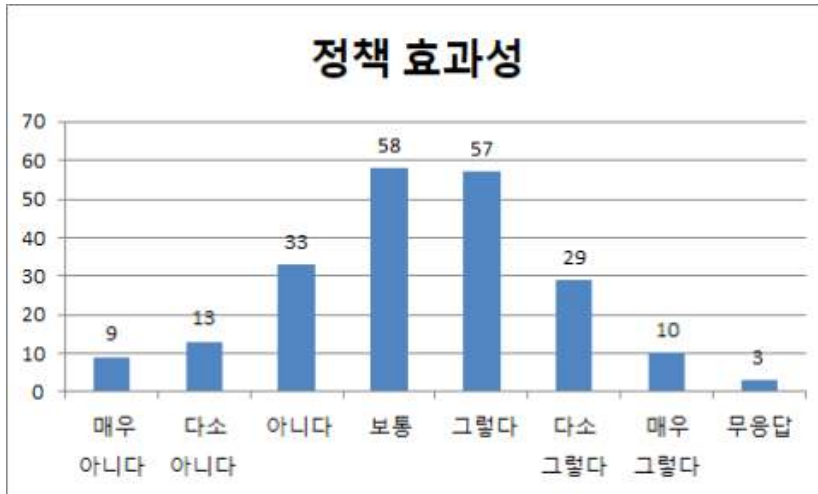
사회적경제 관련자들의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정책 과정 중 민간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해 그렇다 이상의 긍정 답변이 52%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내 용	빈 도		퍼센트
문재인정부는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정책 수립과정에 민간의 의견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아니다	4	2%
	다소 아니다	18	8%
	아니다	20	9%
	보통	56	26%
	그렇다	51	24%
	다소 그렇다	48	23%
	매우 그렇다	11	5%
	무응답	4	2%
합계	212	100%	

(3) 정책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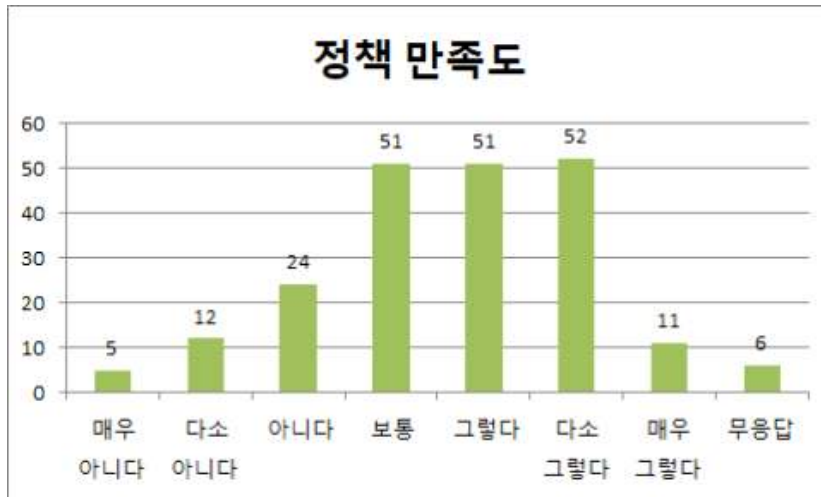
문재인정부의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정책관련이 부처별, 유형별로 나뉘어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통합에 얼마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묻은 결과 그렇다 이상의 긍정 답변이 45%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내 용	빈 도		퍼센트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귀하는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매우 아니다	9
다소 아니다		13	6%
아니다		33	16%
보통		58	27%
그렇다		57	27%
다소 그렇다		29	14%
매우 그렇다		10	5%
무응답		3	1%
합계		212	100%

(4) 정책 만족도

문재인정부의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정책관련 정책 만족도에 대해 물은 결과 그렇다 이상의 긍정 답변이 55%인 것으로 파악되어 불만보다는 만족 응답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내 용	빈 도		퍼센트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귀하는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매우 아니다	5	2%
	다소 아니다	12	6%
	아니다	24	11%
	보통	51	24%
	그렇다	51	24%
	다소 그렇다	52	25%
	매우 그렇다	11	5%
	무응답	6	3%
	합계	212	100%

3. 문재인정부의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에 대한 이해관계자 인터뷰 결과

○ 조사개요

- 조사일정 : 2019년 10월 25일 오전 10:00~12:00 (2시간)
- 조사대상 : 총 1그룹
- 조사장소 : 신나는조합 교육장
- 참석자
 - 하태욱 전북 사회적경제과 과장
 - 하재찬 권역지원기관전국협의회 운영위원장
 - 최현수 경기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협의회 회장
 - 심옥빈 인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상임대표
 - 구명숙 서울시 관악구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상임이사
 - 안인숙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
 - 사회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

○ 인터뷰 내용 및 결과

-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의 정책 형성과정에 대한 의견
 - 광역, 기초 단위에서 사회적경제위원회를 구성하여 (형식 또는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 문제를 다루고 있음
 - 다만 정책 형성과정에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필수적으로 충분히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도 나타나고 있음
-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의 정책 집행과정에 대한 의견
 - 통합지원체계를 지역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중앙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믹싱하여 재구성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 통합지원체계 미비 : 중앙에서 각 부처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는 체계가 없어서, 정책 간 시너지가 발휘할 수 없으며 예산 집행에 있어 효과성 떨어지는(일명 지원정책 갈아타기) 현상이 발생하는 등, 현장이 지역과제 해결형으로 사고하기 어렵게 함
 - 한편 각 부처는 자신의 전달체계를 작동시키는 데 머무르고 있어서, 현장 지원조직 간의 연계협력도 불가능한 실정임
 -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재부가 통합추진을 위한 조정기능 앞장서야 할 필요가 있음

- 일례로 중앙에서는 부처 간 정책 조정 (상호 영향력, 자원공유, 전달체계 확인 등, 지방정부에서는 수행 담당자와 민간거버넌스의 목표와 전략 구상과 조정/협업) 지역발전 전략 하에 정부 부처 정책 재배치, 지역 역량 강화 차원에서 재설계, 중앙정부에 조정된 내용으로 정책사업 변경 협의, 시군구 지자체에서는 정책 실행과 주체 발굴 및 역량을 강화 하는 것 등이 이뤄지는 것이 통합추진 체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하겠음

- 결론적으로 현행 부처별로 나뉘어 수립되고 있는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을 통합하고 수립된 정책은 공식적인 거버넌스기구를 통해서 지방정부와 함께 수행되어야 함

○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의 정책 성과에 대한 의견







- 활성화 정책이 현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음
-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정책의 결과 개별 조직들간의 자발적 협력이 이뤄지기 시작하였음
- 주민의 정책수립/실행 과정에 참여의 기회 확대되고 있음

○ 기타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의 정책의 성과제고를 위한 의견

- 사회적경제통합 추진체계정책의 완성은, 설계초안에 해당하는 정책과 실행 자원을 담보한 행정과 그것에 영혼을 불어 넣어 완성하는 현장의 협업 구조, 그것의 완성도에 달려 있음
- 한편 중간지원조직으로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역할이 중앙정부 부처 간 정책 조정 시, 회의 간사인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고민을 기재부가 중심이 되어 한다면, 이를 실효성 있게 변경해 나갈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퍼올리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V.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정책제안

1. 문재인정부의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평가결과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의 구현			
① 불필요한 행정비용 유발 ② 정책연계성저조, ③ 민·관 협업 부족 현상 해결에 기여			
모니터링 평가항목	모니터링 평가지표	모니터링 결과	평가
정책 형성	정책목표의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정운영과제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수립 	
	계획내용의 충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하위 정책수단(세부사업 등)의 충실성 계획수립을 위한 여론 수렴 여부 및 관련절차의 이행 여부 	
정책 집행	시행과정의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에서 각 부처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는 체계가 없어서, 정책 간 시너지가 발행할 수 없으며 예산 집행에 있어 효과가 떨어짐 각 부처는 자신의 전달체계를 작동시키는데 머무르고 있어서, 현장 지원조직 간의 연계협력도 불가능한 실정 	
	시행과정의 적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여건과 상황변화의 포착 및 적절한 대응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게 제대로 알리고 있는지 여부 	
정책 성과	목표의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초 설정한 계획목표의 달성 여부 	
	정책효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정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여부 	
↑			
수요자 정책 만족도 조사			
↑			
수요자의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처별로 나뉘어 수행되고 있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통합된 정책의 수립과 집행되어야 함 사회적경제 정책은 정부의 공식적 거버넌스 구조를 통해 지방정부와 함께 수행되어야 함 			

2. 정책제언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는 현재 문재인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이 첫째, 정책수립 및 조정과정에서 민간의 참여가 구조화되어 있지 못하고 둘째, 부처 간 정책이 통합되어 지방정부에 전달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 하에 아래의 내용을 제안하고자 함

○ 17개 부처로 나뉘어 시행되고 있는 정부정책의 실질적 통합이 필요

- 현재 사회적경제 정책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의 하나로 관리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그 시행이 17개 부처로 나뉘어 진행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되고 있음
- 한편 사회적경제비서관이 중심이 되어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넓히고 정부와 공공기관 내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을 조정하고 있으나 계획한 만큼 민관의 협업이 촉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함
- 이에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사회적경제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가칭)사회적경제민관위원회’의 설치를 제언 함

○ 정부와 지방정부 간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한 통합과 조정이 필요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는 정책을 수립하고 부처 간 정책을 조정하여 전달하고 지방정부는 정부 부처 정책의 해석과 지방정부의 현실을 반영한 재설계 등이 이루어져야 하겠음
- 그러나 현실은 각 부처는 자신의 전달체계를 작동시키는 데 머무르고 있어서, 현장 지원 조직 간의 연계나 협력이 많이 부족하고 일부에서는 소위 정부정책 갈아타기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부처 내 사회적경제 정책을 통합하고 수립된 정책은 공식적인 거버넌스기구를 통해서 지방정부와 함께 수행되도록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을 조정할 것을 제언 함

○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민간의 참여가 필요

- 일반적으로 정부정책은 plan⇒do⇒see의 과정으로 진행되며 민간의 참여는 플랜 이후

의 과정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음

- 하지만,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계획수립 단계에서의 민간 참여가 보다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여 만족도 제고에 기여 할 수 있다고 하겠음
- 이에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사회적경제 정책의 수립과정에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책이 개선 되어야한다고 제언 함

< 참고문헌 >

- 오철호, & 이기식. (2008). 국정과제점검·평가의 기준과 방법론.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93-211.
- 이환성 외(2014), 국정과제평가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 정동열 외(2009), 정부·자치단체 청년고용정책 모니터링, 한국고용정보원.
- 최영출. (2009). 기획세션: 국정과제개발평가단: 경제, 산업분야 주요정책과제의 모니터링 방향.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09, 251-267.
- 한성수 외(2009), 지역사회서비스 수요자 중심 모니터링체계 개발연구, 보건복지부.

2. 사회적 금융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회적금융위원회

목 차

1. 들어가며

- 가. 필요성
- 나. 목적
- 다. 평가개요

2. 정책별 평가

- 가. 정책자금 공급 평가
- 나. 민간금융 공급 평가_사회가치연대기금
- 다. 민간금융 공급 평가_신협
- 라. 민간금융 공급 평가_임팩트투자
- 마. 자치단체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조례 및 기금 설치 평가
- 바. 중개기관 육성 방안 평가

3. 사회적금융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4. 총평

○ [붙임] 사회적금융활성화 방안(2018.2.8.) 보고서 별첨

1 | 들어가며

가. 필요성

○ 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회적금융위원회의 활동 점검

- 사회적금융위원회는 공제분과(공제사업 수행 기관으로 구성)와 중개기관분과(비영리 사회적금융기관과 신탁으로 구성)를 두고 있음
- 공제분과는 공동의 사회적경제 공제상품 개발을 목표로 공동실천을 준비해 왔으며, 중개분과는 정부의 사회적금융 활성화 정책에 대응해 사회적경제에 기반한 비영리사회적금융기관의 역할 강화를 함께 협의해 옴.

○ 정부의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점검을 통해 민간의 과제 수립

- 중개기관분과의 경우 사회적금융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어 외부 환경 요인으로써의 정부의 활성화 방안을 점거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중개기관분과는 사회적금융의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니고 왔으며, 이를 해결할 공동 실천을 모색 중에 있어 과제 인식의 합의와 사회적경제 기업들과의 공유 과정이 필요함.

나. 목적

○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이 사회적경제의 금융 문제를 해소 하였는지를 점검해 정책 개선 과제를 수립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항목별로 점검
- 16개 통합지원기관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금융 조달 상황을 점검하고 사회적경제의 대응 활동을 파악

○ 금융위원회의는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자조기금 조성 과 규제금융을 위한 기금 조성을 공동의 실천으로 수립하고 있는데 이의 근거를 확보하고자 함.

- 16개 통합지원기관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자조기금 조성 현황을 파악

- 비영리 사회적금융기관과 신협이 중심이 되어 구제금융 기금 설치를 활동가대회 때 선포할 계획을 수립

다. 평가개요

-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2018. 2. 8. 발표)에 근거해 평가 항목을 구성함
- 이에 따라 중개기관들이 역할을 나눠 다음의 항목을 평가함
 - ▲정책 자금 공급 평가 ▲민간 금융 공급 평가(사회가치연대기금/신협/임팩트 투자)
 - ▲자치단체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조례 및 기금 설치 평가 ▲중개기관 육성 방안 평가 등
- 16개 통합지원기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의 지역의 변화를 파악함.

2 정책별 평가

가. 정책자금 공급 평가

○ 추진 현황 및 진단

사회적금융활성화방안 내용		추진현황	현황 진단																																																																		
쪽수	내용																																																																				
<p>□ 정책자금 공급실적 (단위 : 억원, 개)</p> <table border="1"> <thead> <tr> <th>유형</th> <th>공급기관</th> <th>'19년 목표</th> <th>'19.1-3분기 공급규모</th> <th>(기업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6">대출</td> <td>소계</td> <td>960</td> <td>758</td> <td>(515)</td> </tr> <tr> <td>서민금융진흥원</td> <td>50</td> <td>35</td> <td>(60)</td> </tr> <tr> <td>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td> <td>500</td> <td>489</td> <td>(219)</td> </tr> <tr> <td>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td> <td>100</td> <td>48</td> <td>(86)</td> </tr> <tr> <td>신협</td> <td>300</td> <td>156</td> <td>(128)</td> </tr> <tr> <td>새마을금고</td> <td>10</td> <td>30</td> <td>(22)</td> </tr> <tr> <td rowspan="4">보증</td> <td>소계</td> <td>1,850</td> <td>1,945</td> <td>(997)</td> </tr> <tr> <td>신용보증기금</td> <td>1,000</td> <td>1,061</td> <td>(592)</td> </tr> <tr> <td>지역신용보증재단</td> <td>150</td> <td>104</td> <td>(223)</td> </tr> <tr> <td>기술보증기금</td> <td>700</td> <td>780</td> <td>(182)</td> </tr> <tr> <td rowspan="3">투자</td> <td>소계</td> <td>420</td> <td>626</td> <td>(66)</td> </tr> <tr> <td>한국성장금융</td> <td>200</td> <td>210</td> <td>(22)</td> </tr> <tr> <td>한국벤처투자</td> <td>220</td> <td>416</td> <td>(44)</td> </tr> <tr> <td>총계</td> <td>-</td> <td>3,230</td> <td>3,329</td> <td>(1,578)</td> </tr> </tbody> </table>					유형	공급기관	'19년 목표	'19.1-3분기 공급규모	(기업수)	대출	소계	960	758	(515)	서민금융진흥원	50	35	(6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00	489	(219)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00	48	(86)	신협	300	156	(128)	새마을금고	10	30	(22)	보증	소계	1,850	1,945	(997)	신용보증기금	1,000	1,061	(592)	지역신용보증재단	150	104	(223)	기술보증기금	700	780	(182)	투자	소계	420	626	(66)	한국성장금융	200	210	(22)	한국벤처투자	220	416	(44)	총계	-	3,230	3,329	(1,578)
유형	공급기관	'19년 목표	'19.1-3분기 공급규모	(기업수)																																																																	
대출	소계	960	758	(515)																																																																	
	서민금융진흥원	50	35	(6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00	489	(219)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00	48	(86)																																																																	
	신협	300	156	(128)																																																																	
	새마을금고	10	30	(22)																																																																	
보증	소계	1,850	1,945	(997)																																																																	
	신용보증기금	1,000	1,061	(592)																																																																	
	지역신용보증재단	150	104	(223)																																																																	
	기술보증기금	700	780	(182)																																																																	
투자	소계	420	626	(66)																																																																	
	한국성장금융	200	210	(22)																																																																	
	한국벤처투자	220	416	(44)																																																																	
총계	-	3,230	3,329	(1,578)																																																																	
<p>□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자금공급 지속 확대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재원 바탕으로 금융지원을 통해 자생력을 갖추어 나가는 기업들의 사례 축적을 통해 향후 민간 투자·자금공급으로의 확산을 기대 																																																																					
<p>□ '19년에는 3분기까지 1,578개社에 3,329억원의 자금을 공급하여 올해 설정한 목표 공급규모(3,230 억원)를 既 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년 중 1,937억원 공급(목표치 1,000억원 대비 197% 공급 달성) ○ (대출) 3분기 중 MG사회적경제기업 육성사업(새마을금고) 및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소진공) 개시하는 등 대출 공급 대폭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년 상반기까지 376억원 공급 → 3분기까지 758억원 공급(약 100% 증가) ○ (보증) '19년 중 3분기까지 목표 대비 105% 既 공급 ○ (투자) 한국성장금융 및 한국벤처투자에서 조성한 하위펀드의 적극적인 투자 집행으로 '19년 공급 목표 초과 달성(목표대비 149%) 																																																																					
<p>□ (향후계획) '19년도 자금공급 실적 점검을 바탕으로 '20년도 공급목표를 수립하고, 차기 사회적금융</p>																																																																					

협의회를 통해 발표('20.1분기 중)						
□ (총 규모) '19년 1~3분기 중 은행권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총 2,515건, 3,542억원(건당 평균 1.4억원)의 자금을 공급 ○ 금액 기준으로 '18년도 전체 실적(3,424억원)의 103.5%에 해당						
□ 2019년 상반기 은행권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자금지원실적						
(기업유형별)						
(단위 : 건, 억원, %)						
구 분	2018년			2019년 1~3분기		
	건수	금액	비중 (금액기준)	건수	금액	비중 (금액기준)
사회적기업	2,499	2,987	(87.2)	2,029	2,552	(72.1)
협동조합	185	278	(8.1)	275	872	(24.6)
마을기업	188	138	(4.0)	96	86	(2.4)
자활기업	114	21	(0.6)	115	32	(0.9)
소 계	2,986	3,424	(100.0)	2,515	3,542	(100.0)
□ (기업유형별)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 2,552억원(72.1%)으로 대부분이며, 협동조합 872억원(24.6%), 마을기업 86억원(2.4%), 자활기업 32억(0.9%) 순						
(지원유형별)						
(단위 : 건, 억원, %)						
구 분	2018년			2019년 1~3분기		
	건수	금액	비중 (금액기준)	건수	금액	비중 (금액기준)
대출	1,795	3,355	(98.0)	1,568	3,476	(98.1)
출자	3	6	(0.2)	1	5	(0.1)
기부·후원	86	18	(0.5)	62	32	(0.9)
제품구매	1,096	40	(1.2)	853	28	(0.8)
기타	6	7	(0.2)	31	1	(0.0)
소 계	2,986	3,424	(100.0)	2,515	3,542	(100.0)
□ (지원유형별) 대출이 3,476억원(98.1%)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기부·후원 32억원(0.9%), 제품구매 28억원(0.8%), 출자 5억원(0.1%) 순						
□ (은행별) 기업(727억원, 20.5%), 신한(644억원, 18.2%), 농협(561억원, 15.8%) 실적이 전체 실적의 과반 이상(1,932억원, 54.5%)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우리(474억원, 13.4%), 하나(473억원, 13.3%), 국민(421억원, 11.9%) 순 , 지방은행은 대구(66억원, 1.9%), 경남(39억원, 1.1%), 광주(38억원, 1.1%) 순						

○ 개선방안 및 제언

- 공급규모의 확대 필요
 - 3분기 까지 전년대비 총 용자규모(3,329억)는 3배이상 증가하였으나, 전체 사회적 경제기업 수 및 자금수요의 비해서는 여전히 과소공급 상태에 있음
- 대출한도 상향 필요
 - 정책자금 공급기관 중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투자상품을 제외한 모든 기관이 평균 5천만원 정도의 개인신용 대출 한도금액 수준으로 자금 공급 중에 있음
 - 최근 사회적경제기업의 매출 및 자산규모의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평균 1억원 이상의 신용 대출 다양한 기업의 금융수요에 맞는 상품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공급 필요
 - 기업유형 중 사회적기업 자금공급 실적이 72.1%로 대부분의 자금공급이 사회적기업으로 편중되어 있음
 - 이는 정책금융기관의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의 다양한 기업유형에 금융지원 경험 부족으로 인한 정보비대칭에 기인할 수 있음
 - 향후 정책금융기관들과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 및 사회적금융 중개기관들과의 네트워크·파트너십 형성을 통한 의견 전달 필요
- 사회적경제기업 DB를 활용한 사회적금융 추가 현황 조사 필요
 - 사회적금융협의회를 통해 조사된 정책자금 공급 현황으로는 금융공급의 지역편중문제 또는 대출상품별 대출기간, 한도, 평가기준 등에 대한 평가에 한계가 있음
 - 사회적금융협의회의 참여기관 중 대출·보증 기관 및 17개의 은행의 취급한 약 5천개의 기업신용공여정보 및 사회적경제기업 현황을 바탕으로 구축된 신용정보원 DB구축 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금융에 대한 개선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나. 민간금융 공급 평가_사회가치연대기금

○ 추진 현황 및 진단

사회적금융활성화방안 내용		추진현황	현황 진단
쪽수	내용		
12~13	<p><input type="checkbox"/> 민간 자율적으로 사회적금융 민간기금 설립추진</p> <p>○올해(2018)안에 사회가치기금 설립·운영 개시를 목표로 추진</p> <p>○기금 운영주체는 출자·대출·출연·보증 등 다양한 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형태를 채택</p>	<p>- <input checked="" type="checkbox"/> 완료 <input type="checkbox"/> 진행 중 <input type="checkbox"/> 미실시</p> <p>- <input checked="" type="checkbox"/> 완료 <input type="checkbox"/> 진행 중 <input type="checkbox"/> 미실시</p>	<p>- '18.12.27. 재단법인 인가 - '19.1.23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공식 출범</p> <p>- 재단법인으로 설립하여, 출자·대출·출연·보증 등 가능함</p>
	<p><input type="checkbox"/> 사회가치기금은 사회적금융중개기관 등을 통해 자금을 간접 지원하는 등 도매기금(wholesaler)으로서 역할을 수행</p> <p>○사회적금융중개기관은 사회적경제기업에 주로 투·융자</p> <p>○일정한도내에서 사회적가치 창출이 큰 일반 중소기업, 낙후지역 개발사업 등도 투·융자대상에 포함</p>	<p>- <input type="checkbox"/> 완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진행 중 <input type="checkbox"/> 미실시</p> <p>- <input type="checkbox"/> 완료 <input type="checkbox"/> 진행 중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미실시</p>	<p>- '19년 11월 11일 현재, 재단법인 밴드(15억원)에 배분함</p> <p>해당없음</p>
	<p><input type="checkbox"/>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의 규모·자금 수요,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5년간 3천억 규모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조성</p> <p>○정부·지자체에서 사회적가치기금에 출연을 추진하고 미소금융 재원에서도 출자·출연이 가능하도록 서민금융법 개정 추진</p>	<p>- <input type="checkbox"/> 완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진행 중 <input type="checkbox"/> 미실시</p> <p>- <input type="checkbox"/> 완료 <input type="checkbox"/> 진행 중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미실시</p>	<p>- 연대기금 출범 시 1년 600억원씩 5년간 3,0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했으나, '19년 10월 현재 35억원 조성</p> <p>- 연대기금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요청했으나, 법 개정 사항으로 신중히 검토 중</p>
	<p><input type="checkbox"/> 민간의 자율적인 논의와 자금모집 등을 통해 기금설립을 추진해 나가되, 정부도 기재부를 중심으로 설립 지원</p> <p>○민간주도 「사회가치기금(Social Benefit Fund) 추진단」 설립</p> <p>○국제 임팩트투자 민간협의체(GSG) 가입 지원을 통해 미국·영국 등의 사회적금융 선진사례를 도입·자문하는 창구로 활용</p>	<p>- <input checked="" type="checkbox"/> 완료 <input type="checkbox"/> 진행 중 <input type="checkbox"/> 미실시</p> <p>- <input type="checkbox"/> 완료 <input type="checkbox"/> 진행 중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미실시</p>	<p>- 추진단(단장:송경용) 10명, 기획위원회(위원장:김재구) 3명, 재단설립준비위원회(위원장:양동수) 6명, 연구팀으로 구성되어 운영됨</p> <p>해당없음</p>

- 연대기금 출범 경과

· '18.02 (가칭)사회가치연대기금 설립 추진단(단장:송경용신부) 구성

* 정부(기재부, 금융위), 사회적경제 협의체, 사회적금융 관련기관, 금융 전문가

등 약 20명이 참여

- * 기금의 법적 성격과 업무영역, 거버넌스 등 설립방안을 협의

· '18.06 사회가치연대기금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운영

- * 추진단 내에 기획위원회와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법인 설립에 필요한 법적절차와 실무준비를 진행

· '18.12.27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설립 인가 (기획재정부)

· '19.01.23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공식 출범

- * 국무총리, 출연기관 대표, 사회적경제조직 대표 등 400여명이 참석한 출범식, 현판식 진행

- 출범 이후 사업 총평

· 연대기금은 올해 1월 출범하였으나, 기금 조성뿐만 아니라 중개기관을 통한 융자사업 등 전반적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 기금 조성

· 연대기금의 출범 시 조성 목표는 5년간 총 3,000억원(민간 50 : 정부 50 매칭)임

· 민간기금 조성은 농협·신협·새마을금고 500억원, 은행연합회 1,000억원 등으로 조성하기로 했고, '19년 4~5월 즈음 1차로 은행연합회 600억원, 신협 150억원을 출연에 대한 내부 의결함

· '19년 10월 현재, 은행연합회와 신협에서 35억원이 실제 입금되었으며, '19년 11월 현재 은행연합회에서 연내에 500억원을 추가 입금하기로 함

-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을 통한 융자

· 연대기금과 협의를 시작했던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은 4개 기관이었으나, 사회연대은행이 불참의사를 밝혀 3개 기관과 사업 개시 또는 협의 중임

- * 3개 기관 : 재단법인 밴드(前 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공제사업단), 한국자활공제연합회, 신나는조합

· 사업을 개시한 기관은 재단법인 밴드로 15억원을 배분받았으며, 나머지 2개 기관은 사업협의 중임

○ 개선방안 및 제언

- 민간 투자 등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필요

· 민간기금 조성 목표액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기금은 점차 소진되기

마련이므로 장기적인 기금 조성 계획이 있어야 함

. 선배 협동조합, 시중 은행 등이 지속적으로 출연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일반기업 등 민간의 다양한 기금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금융 기금을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 비율 확대 등 법 개정 필요

- 자금 공급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금융 인프라 확충

. 공공영역과 금융상품을 달리 하는 것이 연대기금의 차별성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적금융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차별성이어야 함

. 즉,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 개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뿐 아니라 당사자협의체의 자조기금 조성을 위한 자금 매칭, 민간기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고민 필요

. 이는 정부 정책에 흔들리지 않는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이 되기 위한 가장 우선과제로 인식되어야 함

- 중개기관 융자사업의 시스템 변화 필요

. 현재 공공영역(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되는 사회적금융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융자금을 갚지 못하면 민간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이하 중개기관)이 책임져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왔으며, 한국 최초 민간 사회적금융을 표방한 연대기금의 이에 대한 개선을 기대함

그러나, 연대기금 역시 손실금액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를 중개기관이 책임지는 방식으로 사업이 설계되었음

. 또한, 사회적금융은 단순히 융자를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교육, 컨설팅 등 융자 이후 사후관리가 필요한데도 이에 대한 운영비 지원도 전무하여 저금리 대출을 할 수 밖에 없는 중개기관은 운영비를 자부담하며 사업을 해야하는 구조임

. 현재와 같이 중개기관을 통한 융자사업을 지속한다면, 손실책임 및 운영비 부담 등으로 신규 중개기관을 육성하기는 어려울 것임

. 이에 연대기금 내 대손처리 근거 마련, 중개기관 배분금의 일정비율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그중 일부는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게 하는 등 개선 필요함

* 영국 BSC의 중개기관 운영비는 사용된 기금의 5%를 차지함('17년6월말기준)

다. 민간금융 공급 평가_신협

○ 추진 현황 및 진단

사회적금융활성화방안 내용		추진현황	현황 진단
쪽수	내용		
21P	사회적경제기업 대출 확대 - 2019년 신규공급 300억 원 - 신용(2.5%), 담보(3.0%)	- <input type="checkbox"/> 완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진행 중 <input type="checkbox"/> 미실시 * 2019년 중 300억원 신규 공급 목표 * 2019. 10월말 기준 156억원 실행 (대출 잔액 248억원)	- 수도권 외 지역의 대출수요가 매우 적음 - 공적금융의 역할 비대
	사회적금융 거점신협 지정·육성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완료 <input type="checkbox"/> 진행 중 <input type="checkbox"/> 미실시 * 2019. 8월 71개 신협을 사회적금융 거점신협으로 지정	- '대출'이라는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 연대, 협력의 점점 확보 가능 - 토론회, 박람회 등은 다소 피상적 관계에 머물 수 있음
	지역 내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참여 및 활성화	- <input type="checkbox"/> 완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진행 중 <input type="checkbox"/> 미실시 * 사회적금융 거점신협을 중심으로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과 협력 및 네트워킹	-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 필요 - 중앙회 차원에서 지역별 점점 형성 노력 중

- (사회적경제기업 대출 확대)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대출상품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금융공급 확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등 공적금융의 공급 확대로 민간금융기관(신협)으로의 대출 수요가 매우 적음

- (사회적금융 거점신협 지정, 육성) 2019.8월 중 71개 신협을 사회적금융 거점신협으로 지정

* 거점신협 위주로 사회적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별로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력 및 네트워크 참여 유도

* 중앙회 차원 연 2회 거점신협 워크숍, 연 2회 지역별 워크숍 추진 및 지원

- (지역 내 네트워크 참여 및 활성화) 지역별 사회적경제 협의체 등에 거점신협이 적극적으로 결합

* 지역 이슈 공유, 공동 협력사업 추진 등

○ 개선방안 및 제언

- 사회적금융 거점신협이 지역의 사회적경제조직과 다양하게 접촉할 수 있도록 정보 교류 및 배려 필요

라. 민간금융 공급 평가_임팩트투자

○ 추진 현황 및 진단

사회적금융활성화방안 내용		추진현황	현황 진단
쪽수	내용		
18p	성장사다리펀드 내 '사회투자펀드 조성' - 18년 상반기중 1차 300억규모 - 향후 5년간 최대 1,000억원 확대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완료 <input type="checkbox"/> 진행 중 <input type="checkbox"/> 미실시	- 18년12월, 사회투자펀드 2차 소셜 임팩트투자 위탁운용사 선정(250억 원) - 19년12월, 소셜임팩트투자 2차 위 탁운용사 선정예정(200억원)
19p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추가 조성운용 - 18년, 예산75억+민간출자금 조성 - 19년 이후 예산에 추가반영	- <input type="checkbox"/> 완료 <input type="checkbox"/> 진행 중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미실시	- 현황 파악 불가
20p	소셜벤처에 투자하는 임팩트펀드 조성 운용 - 18년, 총 1,000억원 조성 목표 - 모태펀드에서 펀드에 80%출자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완료 <input type="checkbox"/> 진행 중 <input type="checkbox"/> 미실시	- 18년, 892억원 결성 이후 - 19년, 1,009억원 결성 완료

- 성장사다리펀드 내 사회투자펀드 조성

: 18년 12월, 사회투자펀드 2차 소셜임팩트투자 위탁운용사 선정(더웰스인베스트먼트, 펀드 최소결성금액 250억원)

: 19년, 10월, 사회투자펀드 2차 소셜임팩트투자 부문 위탁운용사 선정 공고 중 (19년 12월 중 선정, 위탁운용금액 총 200억원 이내)

-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추가 조성 및 운용: 현황 파악 불가

- 소셜벤처에 투자하는 임팩트펀드 조성 및 운용

: 현재 총11개 펀드(결성총액 1,901억원) 조성

: 19년(1,009억원 결성, 74억원 집행), 18년(892억원 결성, 292억원 집행)

*모태펀드(한국벤처투자)내 소셜임팩트 부문 펀드 결성 및 투자 현황

연번	펀드명	결성일	결성총액 (투자금액)	존속 기간	운용사
1	비하이임팩트투자조합 1호	20190919	150억원 (0억원)	8년	비하이인베스트먼트
2	디스플레이벤처투자조합제2호	20190809	309억원 (37억원)	8년	디쓰리쥬빌리파트너스
3	마그나프렌드임팩트인헨스펀드	20190806	250억원 (17억원)	8년	마그나엔베스트먼트
4	케이비소셜임팩트투자조합	20190806	150억원 (20억원)	8년	케이비인베스트먼트
5	대성따뜻한임팩트투자조합	20190726	150억원 (0억원)	8년	대성창업투자
6	미래ESV투자조합제1호	20181218	125억원 (27억원)	8년	저북지역대학연합기술지 주
7	CCVC코리아임팩트펀드	20181129	195억원 (45억원)	8년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8	미시간글로벌소셜임팩트투자조합	20181120	125억원 (50억원)	8년	미시간벤처캐피탈
9	다담4차산업소셜임팩트투자조합	20181116	145억원 (55억원)	8년	다담인베스트먼트
10	코메스2019-2소셜임팩트투자조합	20181116	100억원 (10억원)	8년	코메스인베스트먼트
11	엘로우독같이하다 투자조합	20180711	202억원 (103억원)	8년	엘로우독

○ 개선방안 및 제언

- 2019년 7월, 제2회 사회적경제박람회 대통령 연설에서 임팩트투자 확대 언급
 - * 모태펀드를 통한 임팩트펀드 조성 (2020년 까지, 5,000억원 / 2019년에 1,000억원 조성)
 - * 임팩트 보증 제도 확대(2020년까지 1,500억원)
- 하지만 기존 소셜벤처 임팩트 투자(모태펀드 내)의 운용실적 미미
 - * 결성총액 대비 약 19% 투자집행
 - * 19년 1,009억원 중 74억원 투자(약 6%), 18년 892억원 중 290억원 투자(약 32%)
 - 투자운용사의 적극적 투자 활동 전개를 위한 유인책 마련 및 투자 유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의 투자유치 컨설팅 등의 서비스 공급 필요
 - 공공기금(연기금 등) 및 개인, 비영리법인 등으로 부터의 투자 확대를 위한 세

금 혜택 등의 투자 유인 제고 장치 마련

- 투자유치가 성공 할 수 있을 수준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이 성장 할 수 있도록 성장지원정책의 재정비 및 현실화 필요

마. 자치단체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조례 및 기금 설치 평가

○ 추진 현황 및 진단

사회적금융활성화방안 내용		추진현황	현황 진단		
쪽 수	내용				
※ 자치단체 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 없음.					
자치단체 사회적경제 관련 기금 설치 및 관련 조례 현황 (단위 : 년, 억 원)					
구분	지역	명칭	조례 및 설치	조성 액	목표액
광역	서울	사회투자기금	2012 / 사회투자기금 설치 ~ 조례	578	-
	경기	사회적경제기금	2016 / 사회적경제기금 ~ 조례	120	1,000
	세종	사회투자기금	2018 / 사회투자기금 ~ 조례	10	30
	충남	(추진 중)	(2020)	-	(100)
	전북	(추진 중)	(2020)	-	(100)
	경남	(추진 중)	(2020)	-	(150)
	강원	사회적경제지원기금 (‘17년 말 기금 폐지)	기본조례 10조의2(특별보증) ‘18 신설	21	100
광주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17년 말 존속기한 종료)	2013 / 기본조례 제22조(기금의 설치)	-	-	
기초	성북	사회투자기금	2014/ 기본조례 제10조(~기금의 설치)	12.5	
	성동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2015 /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 조례	16	
	은평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2015 / 기본조례제22조(기금의 조성,운용)	7.7	
	강동	사회적경제기금	2018 / 기본조례 제14조(기금의설치)	2.2	
	화성	사회적경제지원기금	2015 / 사회적경제지원기금 ~ 조례	629	
*장지연(2019)‘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육성과제’, 『사회적금융 현황과 과제 국회 토론회 자료집(‘19.9.20)』 p18 일부 인용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① 자치단체 기금 조성 추진 및 관련 조례 제정에 관한 사항은 정부의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의 대상이 아님. ②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17.7) 발표 이후 기금이 설치 된 곳은 세종시와 서울시 강동구 2개 자치단체 이며, 관련 조례가 제정 된 곳은 세종시임.					

③ 강원도의 경우 사회적경제기금은 2017년 말로 폐지하고 2018년 조례 개정을 통해 특례보증을 신설해 기금 설치에 따른 재정 부담을 해소 하고, 기금 운용 효과를 내음.
 진단) 정부의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해 자치단체 기금 설치 제약을 유발

○ 개선방안 및 제언

-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과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이 자치단체의 활성화 정책을 촉진하기 보다는 중앙 정부의 지원 정책에 의존하는 경향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임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자치단체의 책무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 필요

바. 중개기관 육성 방안 평가

○ 추진 현황 및 진단

사회적금융활성화방안 내용		추진현황	현황 진단
쪽수	내용		
23P	서민금융진흥원의 민간사업수행기관 추가 선정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완료 <input type="checkbox"/> 진행 중 <input type="checkbox"/> 미실시	- 서민금융진흥원의 민간 사업수행기관을 사업역량 및 지역적 배분 등을 감안하여 추가 선정 (4개->13개)
23P	서민금융진흥원내 (가칭)사회적기업지원위원회를 설치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완료 <input type="checkbox"/> 진행 중 <input type="checkbox"/> 미실시	-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사업수행기관 지원평가위원회를 설치하였음
23P	동 위원회에서 민간 사업수행 우수기관에 대해 운영비 지원, 교부금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	- <input type="checkbox"/> 완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진행 중 <input type="checkbox"/> 미실시	- 사업수행기관들의 대출집행 및 부실율 실적을 평가하여 교부금 확대의 인센티브 제공. 단, 운영비지원은 미실시.
23P	사회투자펀드 등 사회적금융 관련 투자자금 운용시, 일반 운용사 외에 사회적금융에 전문성을 갖춘 중개기관의 참여 확대	- <input type="checkbox"/> 완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진행 중 <input type="checkbox"/> 미실시	- 한국사회혁신금융이 PEF운용 자격을 갖췄으며 펀드 운영 예정
23P	신보·지신보 보증 및 기타 정책자금 운용에 있어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 검토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완료 <input type="checkbox"/> 진행 중 <input type="checkbox"/> 미실시	- 신보의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개발시 한국사회혁신금융, 신나는조합 등이 개발사, 자문위원 등으로 참여
23P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실태조사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완료 <input type="checkbox"/> 진행 중 <input type="checkbox"/> 미실시	-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실태조사 및 DB를 구축하고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내 사회적금융 페이지 신설
23P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의 사회적금융협의회 참여 및 네트워크·파트너	- <input type="checkbox"/> 완료 <input type="checkbox"/> 진행 중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미실시	- 가장 최근의 사회적금융협의회에 참여기관은 사회적금융협의회 참여 17개 기관(기재부, 중기부, 금감원, 서민금융진흥원, 은행연합회, 신

	<p>쉽 형성을 촉진</p>	<p>보, 지신보, 기보, 신탁,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중진공, 소진공, 성장금융, 벤처투자, 신용정보원)과 금융위원회(주재), 사회가치연대기금, 신한대체투자자로 중개기관의 참여는 없었음</p>
--	-----------------	---

- 중개기관 실태조사결과 60%의 중개기관이 수도권중심으로 소재하고 있고 활성화 제약요인으로 손실부담, 사업재원, 운용비 부족, 사회적 관심 부족으로 조사됨
- 민간부문의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실태조사와 DB는 구축되었으나 육성에 대한 계획은 부재함
- 활성화 방안에서는 중개기관DB구축의 목적을 사회적금융협의회 공동의 자산으로 구축하여 위탁기관 및 지원대상 선정 등에 활용하며, 사회가치기금 설치 이후에는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인증제도의 기초 자료로 활용으로 밝히고 있으나 활용된 바 없고, 사회적금융협의회 중개기관 참여도 이루어진바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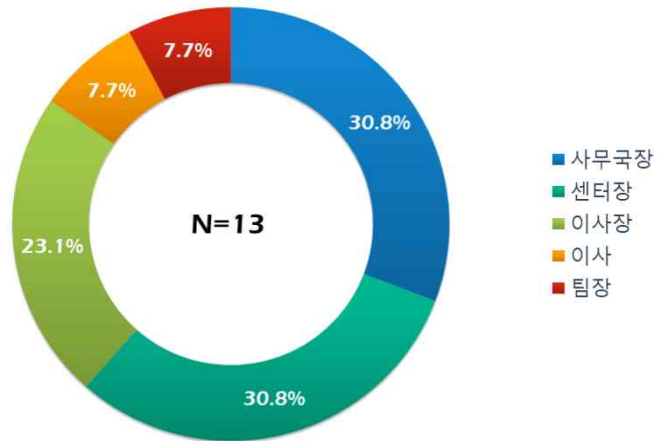
○ 개선방안 및 제언

-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의 정체성에 관한 진지한 논의와 현 실태를 기반으로, 중개기관 육성 방안을 구체적으로 다시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본 정책과제의 매우 낮은 추진율은 실행력을 담보하지 못하는 주체의 문제도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금융위, 사회적금융협의회,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아니라 개별부처(기재부, 노동부, 복지부 등) 중심의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3 | 사회적금융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가. 응답 현황

- ① 응답자는 총 16명
 - 권역별통합지원기관(14)
 - : 충북 1개 기관 2명 응답
 - 부문협의체(1)
- ② 통합지원기관 응답율 : 87.5%



*무기명으로 직책 확인안되는 수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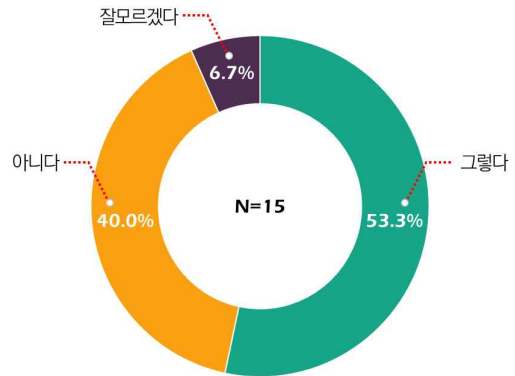
③ 응답기관

- 사람과경제(충북)
-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대전)
-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전북사회적기업협동조합지원센터
- 사회적협동조합 살림(광주)
- 지역과소셜비즈(경북)
- 경상북도사회적기업협의회
-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 세상(경기)
- 신나는조합(서울)
- 모두의경제사회적협동조합(경남)
- (사)커뮤니티와경제(대구) /
- 사)상생나무(전남)
- 인천권역
- 무기명(2곳)

나. 응답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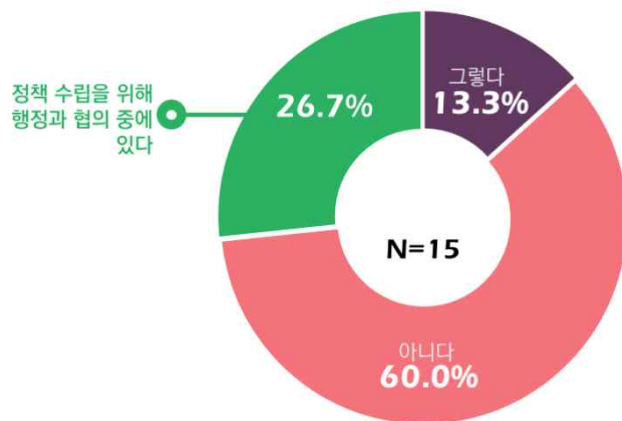
1. 2018년 2월에 발표한 정부의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은 자치단체의 사회적금융 활성화정책을 촉진시키는 환경이 되었는가 ?

응답자의 반수 이상(그렇다, 53.5%)이 정부의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이 자치단체의 사회적금융 활성화 정책을 촉진시켰다고 응답을 하였음. 그러나, '아니다'도 40.0%로 자치단체의 사회적금융 활성화에는 많은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으로 보임.



2. 귀하가 속한 자치단체는 사회적금융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였는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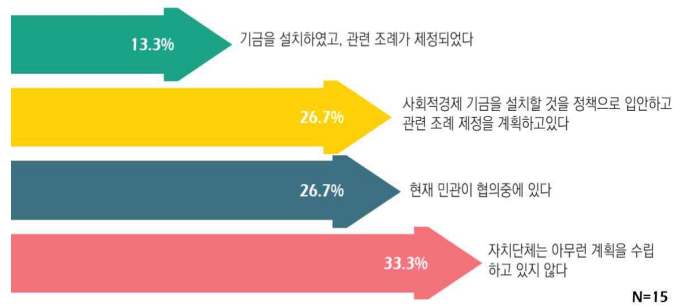
응답 기관이 속한 자치단체의 사회적금융 활성화 정책을 수립한 곳은 13.3%, 협의 중인 곳이 26.7%이나, '아니다'가 60.0%로 자치단체의 사회적금융 관심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보임



3. 귀하가 속한 자치단체의 지방정부는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는가 ?

기금설치 및 조례제정된 자치단체는 13.3%이며, 사회적경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와 관련해 어떠한 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자치단체는 1/3에 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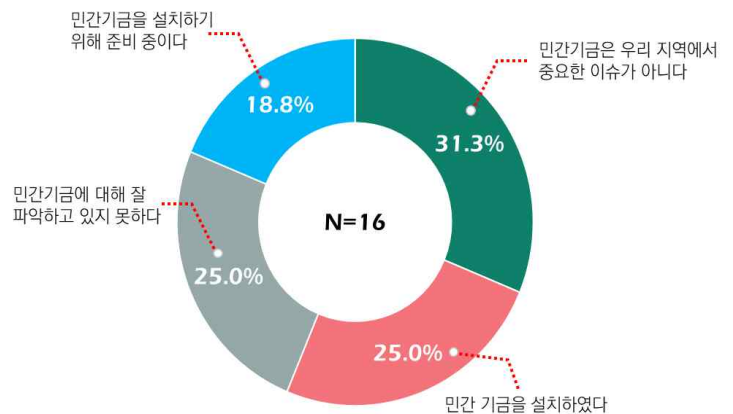
- 협의 중 : 인천,대구,무기명(1)
- 정책입안 : 경남,경북,전북,
- 기금조성 : 서울,경기,광주



4. 지역의 사회적경제네트워크(또는 협의회 등) 차원에서 사회적경제민간기금을 설치하였거나 준비하고 있는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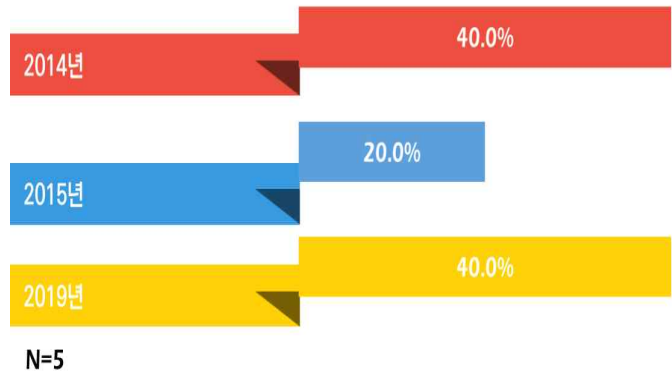
민간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하면 민간기금 이슈가 주요 의제로 작용하고 있는 지역은 43.8%임. 또한 1/3은 민간기금이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고 응답을 하였음.

- 준비중:전북,무기명(1),인천
- 기금설치 : 충남, 서울
- 중요한 지역 이슈 아님 : 광주, 대전, 경남, 울산



4-1. 민간기금을 설치한 시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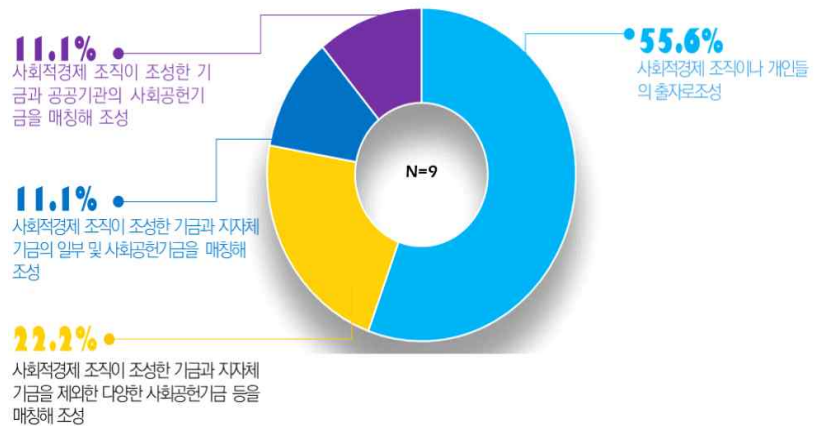
정부의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2018년을 기준으로 볼 때, 민간기금은 활성화 방안 발표 이전 시기부터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음.



4-2. 민간기금은 어떤 형태로 조성되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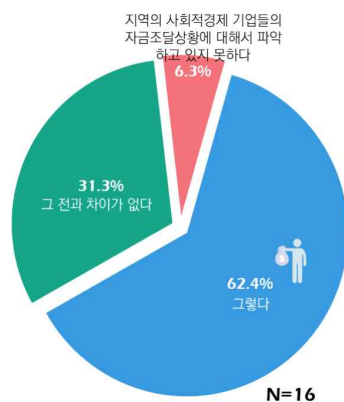
자조기금은 당사자들이 조성하는 출자금이 가장 기본이 되고 있음. 이를 바탕으로 자치단체의 기금과 공공기관 등의 사회공헌기금을 매칭하는 방법이 시도되고 있음.

- 공공기관 결합 : 인천
- 공공+기업사회공헌 : 무기명(1)
- 지자체+공공+기업사회공헌 : 전북



5. 정부의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금조달 상황은 나아졌는가 ?

‘그렇다’가 62.4%로 정부의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금 조달 상황을 호전시킨 것으로 나타남



5-1.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금조달 상황이 나아졌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

응답 9개>

- 당위 등 논의 분위기가 만들어졌음.
- 중앙에 집중하여 조성, 배분되어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에 전달되지 어려움
- 금융 대출을 통한 기업의 자산 취득 사례가 여러 건 존재함
- 금융기관의 관심도 및 사회적가치 영향
- 유관기관의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아짐
- 신용보증기금의 관련 용자실적 증대
- 자금공급체의 확대
- 금융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들과 소통을 진행했을 때 더 나빠지지는 않음
- 기업 대출액 증가

5-2. 자금조달 상황이 나빠졌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

응답 없음.

6. 정부의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기타 의견

응답 12개>

- 신뢰자본 및 사회적가치 자본으로 그 가능성과 일반기업과의 차별성을 견인하기 위한 방식으로 운영조성되어야 하며, 지역 다양한 중계기관 설치와 중계기관의 협력을 통한 지역자본 형성에 기여해야 함.
- 용자나 보증형태의 사회적금융 이외의 투자나 사회혁신채권 등의 방식이 활성화되었으면 함
- 자치단체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 필요
- 금융의 본질이 정보의 제공에 따른 보상(?)이라는 측면에서보면 현재 일부 기업에 집중되는 사회적금융 자금은 당연한 것이라고 판단됨. 사회적금융도 포용금융이라는 포장아래 소위 잘 나가는 몇몇기업에게 집중되는 현상에서 보편적인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확대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
- 지역에서 접점을 만들어가는 중계기관 설치가 중요함

- '금융'이란 적은 이자를 통해 자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임. 현재의 저리지원 중심이 아니라, 미국의 B-coop.의 예시처럼, "자금 조달 및 투자 유치에 유리"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 전환 기준을 현저히 높이고, 사회 시스템 안에서 사회적경제를 육성하는 쪽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임.
- 한도나 상환기간에 대한 확대와 보다 많은 민간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 높음
- 관주도의 고속성장형 사회적금융생태계를 지양하고 현장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민간차원의 사회적금융 생태계조성을 위한 지원체계필요
- 현실성 있고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함
- 사회적금융 지역거점금융사를 설치하고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금융사 인센티브 부여 검토 필요
- 빌릴 때는 화폐로 빌리고, 갚을 때는 사회적가치로 갚는 형태가 사회적금융의 진정한 본질일 것. 그러한 기본방향에서 설계가 되어야...
- 문화예술등 사업자 없는 기관도 금융접근성

4 총평

가.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수립, 시도는 좋았으나 사회적금융 왜곡 유발 가능성 높아 보임

- 사회적금융 활성화 정책은 제도 금융권의 역할을 강화하는 환경을 마련하였지만 실질적 역할 수행을 이끌어내지는 못했음.
- 제도 금융권의 역할 강화가 사회적경제에 전문화 된 비영리기관의 금융 중개 및 공급 역할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민간 기금의 조성 촉진을 기관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여 소규모 중개기관의 역할 부재 현상을 유발, 유사기관과의 역할 충돌로 질서 교란, 개별 민간단체의 사회공헌기금 유입 축소 유발 등의 부작용을 보이고 있음.

나. 사회적금융 공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실질적 대책 수립 필요

- 정부의 자금공급 확대 정책이 지자체의 역할을 축소시키거나, 민간금융기관의 역할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동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민간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적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특히 신탁의 경우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영향력 있는 금융기관임이 검증되었으나, 제도적으로 위험 분산 장치가 부재해 질적 도약의 한계가 있음.
- 정부는 제도 개선, 금융인프라 확대를 위한 유인정책 수립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사회적금융 활성화의 근거를 마련해 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나아가 권역별 사회적금융 공급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다. 금융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자발적 노력과 전문가(기관) 양성 촉진

- 사회적금융의 공급 불균형은 자금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아님. 사회적금융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 기업의 금융 솔루션을 제시하고 금융상의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전문인력과 전문기관의 불균형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 비영리사회적금융전문기관의 경험과 노하우를 지역으로 이전시킬 수 있도록 사회적금융 전문기관의 인큐베티팅,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역할을 부여하여야 함.

- 사회적경제의 연대에 기반한 자조기금 조성을 강화해 금융 사각지대를 줄이고, 긴급자금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정책금융과 제도권 금융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함. 또한 자조기금 규모화를 위한 대응투자 등에 대한 조치 필요.

3. 인재 양성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교육위원회

문재인 정부는 2018년 7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사회적경제 인재유입 확대와 종사자 역량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어, 2019년 8월 정책의 중간점검 차원에서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였다. 사회적경제연대회의 교육위원회에서는 2019년 11월 현재 까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사회적 경제 정책(인재양성 부문)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고, 표집된 설문을 분석하여 결과 보고하면 다음과 같다.

1. 설문조사 결과개요

- 1) 목적 :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부정책(사회적경제 인재양성)에 대한 체감도, 만족도, 중요도 등 평가를 기반으로 정책평가 및 향후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함
- 2) 일시 : 2019년 11월 4일 ~ 11월 10일 (총 6일간)
- 3) 대상 : ① 사회적경제 조직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1차 조직), ② 사회적경제 조직의 연합회 및 네트워크 (2차 또는 3차 조직), ③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권역별지원기관, 광역/기초 지원센터) ④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기관 및 유관 지원조직 등
- 4) 수집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설문지법
- 5) 회수현황

배포(부)	회수(부)	유효자료(부)	유효자료율(%)
온라인배포	101	85	84.1%

2. 설문문항 및 평가지표 설정

1) 설문문항 :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고용노동부, 2019. 8.) 정책 보고서를 기반으로 설문조사로 재구조화 함

1. 인재 유입 활성화 (6개 과제)	1-1. 청년 사회적경제인 양성
	① 청년 사회적가치창출활동 지원
	② 청년 사회적경제기업 취업 확대
	③ 청년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확대
	1-2. 신중년 사회적경제 진출 확대
	④ 신중년 사회적경제 교육 및 취업지원 확대
2. 사회적책임 의식과 경영마인드를 겸비한 리더 육성 (9개 과제)	⑤ 신중년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지원
	⑥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2-1. 대학 내 전문교육과정 확대
	① 사회적경제 학부 개설 지원
	② 사회적경제 석·박사 학위과정 확대
	③ 외국 대학과 교류 지원 및 해외연수 프로그램 확대
	2-2. 대학생들을 예비 사회적경제 리더로 육성
	④ 희망사다리 장학생 대상 사회적경제 교육 제공
	⑤ 사회적경제기업 탐방 프로그램 제공
	⑥ KOICA 등 해외봉사단 사회적경제 교육 및 컨설팅 제공
	⑦ 대학생협 활성화 지원
	2-3. 사회적경제 유망분야 리더 육성
⑧ 권역별 사회적경제 리더 포럼 운영	
⑨ 도시재생 등 사회적경제 진출 유망분야 전문리더 육성 지원	
3. 사회적경제 종사자 역량 및 전문성 강화 (5개 과제)	3-1. 교육의 접근성 제고
	① 사회적경제기업 중간관리자 대상 회계·마케팅 분야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② 훈련비용 지원 등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 대상 맞춤형 교육·훈련 제공
	3-2. 대상별 맞춤형 교육훈련 제공
	③ 사회적경제 전용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K-MOOC 강좌 개설
	④ 지역 중심 사회적경제 전문교육 확대
⑤ 사회적경제기업 훈련 프로그램 개발비 및 인건비 지원	
4. 풀뿌리 사회적경제 토대 구축 (6개 과제)	4-1. 초·중·고 학령기 교육접근성 확대
	① 사회적경제 과목개설, 교원 역량 강화 등
	② 차기 교육과정 개편 시 사회적경제 내용 반영
	4-2. 지역주민의 교육 접근성 강화
	③ 지역교육센터 등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상시학습 지원
	④ 지역주민의 다양한 사회적경제 활동 지원

5. 종합지원체계 구축 (6개 과제)	4-3. 국민의 이해도 및 인식 제고
	⑤ 사회적경제 통합행사 개최
	⑥ 민관협업을 통한 사회적경제 인식 확대
	5-1. 인재양성 통합 추진체계 구축
	① 지역·현장 중심 사회적경제 교육 제공
	②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개발 등 중앙 뒷받침 시스템 구축
	5-2. 콘텐츠 및 강사양성 등 인프라 구축
	③ 사회적경제 교육 콘텐츠 개발
	④ 신재생에너지 등 분야별 사회적경제 전문 강사 양성
	5-3. 공무원 및 지원조직 역량 강화
	⑤ 기능별 특화과정 개설 등 지원조직 역량 강화
	⑥ 공무원 교육과정 내 사회적경제 교육 반영

2) 설문방법 : 3개의 평가지표(체감도, 만족도, 체감도 등)를 설정하고 7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를 통해 응답자로 하여금 제시된 문장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답변하도록 한다.

(1) 체감도란?

본 설문에서 체감도는 ‘정책 체감도(Policy Perception)’로 정의 한다. 정책 체감도는 정부정책에서 목표하는 국민들이 정책홍보(PR) 및 결과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인 상태로 정부의 정책이 궁극적으로 목표 정책 대상자들의 의견, 태도, 행동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의미한다.

(2) 만족도란?

정부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정책수단을 선택하고 그 수단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정책만족도는 달라진다. 본 설문에서 만족도는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고용노동부, 2019. 8.)에서 제시된 정책부문 및 과제를 중심으로 해당 정책의 현재 시점(what it is)에서 느끼는 심리적인 정책 만족감으로 정의한다.

(3) 중요도란?

본 설문의 대상자는 정책의 수혜자(당사자) 이며 동시에 참여자(중간지원조직

종사자)가 된다. ‘중요도’는 다양관 관점에서 정부가 제시한 정책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정책이 대해 향후에 얼마나 지속될 필요(what should be)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척도라 할 수 있다.

3. 통계 분석방법 및 결과

1) 인구 통계적 특징분석

본 설문문의 인구 통계적 특징을 분석하였고 그 특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설문 인구 통계적 구분>

조직별	응답자	응답율
① 사회적경제조직	22	21.8%
② 연합회/네트워크	7	6.9%
③ 중간지원조직	68	67.3%
④ 연구/유관기관	4	4.0%
총합계	101	

연령별	응답자	응답율
① 30세 이하	27	26.7%
② 31~40세	49	48.5%
③ 41~50세 이하	15	14.9%
④ 51세 이상	8	7.9%
무응답	2	2.0%
총합계	101	

경력별	응답자	응답율
① 1년~3년	55	54.5%
② 3년~5년	15	14.9%
③ 5년~7년 미만	10	9.9%
④ 7년 이상	9	8.9%
무응답	12	11.9%
총합계	101	

2) 평가지표 단위 베스트 정책과 워스트 정책

설문 전체 응답자 의 단순 통계를 집계하여 선정한 각 평가지표 단위의 베스트(Best) 5 와 워스트(worst) 5를 선정하면 아래와 같다.

(1) 체감도

no	정책별 체감도	평균
1	4-3.국민의이해도및인식제고 ⑤ 사회적경제 통합행사 개최	4.63
2	1-1.청년사회적경제인양성 ③ 청년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확대	4.60
3	1-1.청년사회적경제인양성 ① 청년 사회적가치창출활동 지원	4.43
4	5-1.인재양성통합추진체계구축 ① 지역·현장 중심 사회적경제 교육 제공	4.32
5	4-3.국민의이해도및인식제고 ⑥ 민관협업을 통한 사회적경제 인식 확대	4.30
정책별 체감도 하위		
32	5-2.컨텐츠및강사양성등인프라구축 ④ 신재생에너지 등 분야별 사회적경제 전문 강사 양성	3.45
33	2-2.대학생들을예비사회적경제리더로육성 ⑥ KOICA 등 해외봉사단 사회적경제 교육 및 컨설팅 제공	3.33
34	2-2.대학생들을예비사회적경제리더로육성 ⑦ 대학생협 활성화 지원	3.30
35	2-2.대학생들을예비사회적경제리더로육성 ④ 희망사다리 장학생 대상 사회적경제 교육 제공	3.26
36	2-1.대학내전문교육과정확대 ③ 외국 대학과 교류 지원 및 해외연수 프로그램 확대	3.21

(2) 만족도

no	정책별 만족도	평균
1	4-3.국민의이해도및인식제고 ⑤ 사회적경제 통합행사 개최	4.47
2	1-1.청년사회적경제인양성 ③ 청년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확대	4.40
3	5-1.인재양성통합추진체계구축 ① 지역·현장 중심 사회적경제 교육 제공	4.24
4	4-3.국민의이해도및인식제고 ⑥ 민관협업을 통한 사회적경제 인식 확대	4.23
5	1-1.청년사회적경제인양성 ② 청년 사회적경제기업 취업 확대	4.15
정책별 만족도 하위		
32	2-2.대학생들을예비사회적경제리더로육성 ⑥ KOICA 등 해외봉사단 사회적경제 교육 및 컨설팅 제공	3.52
33	5-2.컨텐츠및강사양성등인프라구축 ④ 신재생에너지 등 분야별 사회적경제 전문 강사 양성	3.45
34	5-1.인재양성통합추진체계구축 ②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개발 등 중앙 뒷받침 시스템 구축	3.43
35	2-2.대학생들을예비사회적경제리더로육성 ④ 희망사다리 장학생 대상 사회적경제 교육 제공	3.36
36	2-1.대학내전문교육과정확대 ③ 외국 대학과 교류 지원 및 해외연수 프로그램 확대	3.35

(3) 중요도

no	정책별 중요도	평균
1	5-3.공무원및지원조직역량강화 ⑥ 공무원 교육과정 內 사회적경제 교육 반영	5.83
2	5-2.컨텐츠및강사양성등인프라구축 ③ 사회적경제 교육 컨텐츠 개발	5.63
3	4-1.초·중·고학령기교육접근성확대 ② 차기 교육과정 개편 시 사회적경제 내용 반영	5.63
4	4-3.국민의이해도및인식제고 ⑥ 민관협업을 통한 사회적경제 인식 확대	5.62
5	3-1.교육의접근성제고 ② 훈련비용 지원 등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 대상 맞춤형 교육·훈련 제공	5.59
정책별 중요도 하위		
32	2-2.대학생들을예비사회적경제리더로육성 ⑤ 사회적경제기업 탐방 프로그램 제공	4.81
33	2-2.대학생들을예비사회적경제리더로육성 ⑦ 대학생협 활성화 지원	4.70
34	2-2.대학생들을예비사회적경제리더로육성 ④ 희망사다리 장학생 대상 사회적경제 교육 제공	4.65
35	2-1.대학내전문교육과정확대 ③ 외국 대학과 교류 지원 및 해외연수 프로그램 확대	4.54
36	2-2.대학생들을예비사회적경제리더로육성 ⑥ KOICA 등 해외봉사단 사회적경제 교육 및 컨설팅 제공	4.53

4) 본 설문문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을 사회적 경제조직(연합회, 네트워크)와 중간지원조직으로 구분하여 2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각각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한 Borich 요구도 통계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설문 표본의 그룹 구분>

그룹		표본(부)
A그룹	① 사회적경제 조직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1차 조직), ② 사회적경제 조직의 연합회 및 네트워크 (2차 또는 3차 조직),	27
B그룹	③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권역별지원기관, 광역/기초 지원센터) ④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기관 및 유관 지원조직 등	31

Borich 요구도는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어떤 항목에 대한 현재상황에서 적합도와 향후 상황의 중요도 간의 격차로 해당 항목의 필요수준을 분석하는 방법이다(Borich, 1980) 보리치의 우선순위 결정 공식은 전체사례수로 나누는 것이 없지만 요구도 값이 너무 크게 제시됨에 따라 전체 사례수 N으로 나누는 변형된 Borich 요구도 공식이 다음과 같이 등장되었다.

$$\text{요구도} = \frac{\{\sum(RL - PL)\} \times \overline{RL}}{N}$$

RL:필요수준, PL:현재수준, \overline{RL} : 필요수준의 평균, N: 전체 사례수

RL(Require Level)은 필요수준(또는 중요수준 = 중요도)으로 응답자들이 필요성에 대하여 인식하는 정도이며, PL(Present Level)은 조직의 구성원들이 현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이나 어떠한 상태(만족도) 인식하고 있는 정도이다. \overline{RL} 은 응답자들이 필요성에 대하여 인식하는 정도 평균값이다. N은 전체 사례수를 말한다. 보리치의 우선순위 결정공식에 의하면 두 상태의 단순한 차이를 통해 요구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수준(만족도)과 중요수준(중요도)의 차를 모두 합한 값에 필요수준의 평균을 곱한 값을 전체 사례수로 나눈 값을 통하여 요구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따라서 보리치의 계산에 의하면 필요 수준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현재 수준에 대한 인식이 낮을수록 요구도의 값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A그룹 : 사회적경제조직(연합회 및 네트워크) : 정책 우선순위											
정 책 과 제 명	추진 현황	실적	체감도 평균값	만족도 평균값	중요도 평균값	Borich 계수 값	문항內 우선 순위 (2순위까지)	★과제內 우선 순위 (3순위까지)	설문內 우선 순위 (7순위까지)	주관 부처	
1. 인재 유입 활성화 (6개 과제)											
1-1. 청년 사회적경제인 양성											
① 청년 사회적가치창출활동 지원	정상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2.6만명 지원	4.2	4.16	5.44	6.9632	2	5	23	행안부	
② 청년 사회적경제기업 취업 확대	정상	· 사회적경제기업 취업지원 진행 중	4.08	4	5.08	5.4864	3	6	29	행안부	
③ 청년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확대	정상	· 창업팀 지원(815팀), 성장지원센터 조성 중(원주·울산·광주·서울)	4.56	4.2	5.52	7.2864	1	3	19	노동부 중기부	
1-2. 신중년 사회적경제 진출 확대											
④ 신중년 사회적경제 교육 및 취업지원 확대	정상	· 신중년 취업 지원(96명 수료, 22명 취업)	3.8	3.68	5.12	7.3728	2	2	15	노동부	
⑤ 신중년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지원	정상	· 시니어 특화 창업입문 교육 중	3.56	3.6	5.08	7.5184	1	1	12	노동부 과기부	
⑥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정상	· 프로보노(265명), 전문위원 위촉(46명)	3.76	3.76	5.16	7.224	3	4	20	노동부	
2. 사회적책임 의식과 경영마인드를 겸비한 리더 육성 (9개 과제)											
2-1. 대학 내 전문교육과정 확대											
① 사회적경제 학부 개설 지원	정상	·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 진행 등	3.24	3.16	4.72	7.3632	1	1	16	노동부 교육부	
② 사회적경제 석·박사 학위과정 확대	정상	· 사회적경제리더과정 운영(이화여대 등 4개 대학)	3.16	3.4	4.68	5.9904	2	6	27	노동부	
③ 외국 대학과 교류 지원 및 해외연수 프로그램 확대	정상	· 사회적기업국제컨퍼런스 참석(3월) 사회적경제 국제포럼 개최(7.2)	3	3.04	4.32	5.5296	3	7	28	노동부 교육부	
2-2. 대학생들을 예비 사회적경제 리더로 육성											

A그룹 : 사회적경제조직(연합회 및 네트워크) : 정책 우선순위											
정 책 과 제 명	추진 현황	실적	체감도 평균값	만족도 평균값	중요도 평균값	Borich 계수 값	문항內 우선 순위 (2순위까지)	★과제內 우선 순위 (3순위까지)	설문內 우선 순위 (7순위까지)	주관 부처	
④ 희망사다리 장학생 대상 사회적경제 교육 제공	정상	· 1학기 장학생 지원 및 교육(5월, 991명)	3.08	3.2	4.6	6.44	2	5	26	교육부	
⑤ 사회적경제기업 탐방 프로그램 제공	정상	· 우수중소기업 등 3,986명 방문	3.32	3.64	4.44	3.552	4	9	32	노동부	
⑥ KOICA 등 해외봉사단 사회적경제 교육 및 컨설팅 제공	정상	· 귀국인재 사회적경제 컨설팅(5.29. 6명)	3.08	3.24	4.36	4.8832	3	8	31	외교부	
⑦ 대학생협 활성화 지원	정상	· 한국대학생협 연합회 협약체결교육진행	3.12	3.24	4.68	6.7392	1	4	25	기재부 교육부	
2-3. 사회적경제 유망분야 리더 육성											
⑧ 권역별 사회적경제 리더 포럼 운영	정상	· 사회적경제정책포럼 개최(7.2) 등	3.12	3.2	4.72	7.1744	1	2	21	노동부	
⑨ 도시재생 등 사회적경제 진출 유망분야 전문리더 육성 지원	정상	· 도시재생 등 분야별 맞춤형 교육 진행(48명 수강)	3.52	3.2	4.68	6.9264	2	3	24	노동부	
3. 사회적경제 종사자 역량 및 전문성 강화 (5개 과제)											
3-1. 교육의 접근성 제고											
① 사회적경제기업 중간관리자 대상 회계·마케팅 분야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정상	· 중간관리자 맞춤형 교육진행 중	3.96	4.12	5.48	7.4528	2	4	14	노동부	
② 훈련비용 지원 등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 대상 맞춤형 교육·훈련 제공	정상	· 종사자 1,377명, 56백만원 지원	4	4.16	5.52	7.5072	1	3	13	노동부	
3-2. 대상별 맞춤형 교육훈련 제공											
③ 사회적경제 전용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K-MOOC 강좌 개설	정상	· K-MOOC 강좌 개설 진행 중 (인천대, 사회적경제 기업가 경영전략)	3.32	3.36	4.52	5.2432	3	5	30	노동부 교육부	
④ 지역 중심 사회적경제 전문교육 확대	정상	· 신규공동훈련센터 공모 및 설명회	3.76	3.64	5.16	7.8432	2	2	11	노동부	
⑤ 사회적경제기업 훈련 프로그램 개발비 및 인건비 지원	정상	· 서울·경기 중심 사회적경제기업 훈련수요 조사 진행, 개설 준비	3.68	3.72	5.32	8.512	1	1	8	노동부	
4. 풀뿌리 사회적경제 토대 구축 (6개 과제)											
4-1. 초·중·고 학령기 교육접근성 확대											

A그룹 : 사회적경제조직(연합회 및 네트워크) : 정책 우선순위										
정책 과제명	추진 현황	실적	체감도 평균값	만족도 평균값	중요도 평균값	Borich 계수 값	문항內 우선 순위 (2순위까지)	★과제內 우선 순위 (3순위까지)	설문內 우선 순위 (7순위까지)	주관 부처
① 사회적경제 과목개설, 교원 역량 강화 등	정상	· 초·중고 사회적경제 보수 학습자료 보급(3종, 2월)	3.4	3.52	5.4	10.152	1	1	3	교육부 노동부 기재부
② 차기 교육과정 개편 시 사회적경제 내용 반영	차기 교육 과정 개편시	· 차기 교육 과정개편시 적용('21년~	3.6	3.96	5.68	9.7696	2	2	4	교육부
4-2. 지역주민의 교육 접근성 강화										
③ 지역교육센터 등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상시학습 지원	정상	· 시니어 특화 창업입문 교육 중	3.76	3.72	5.32	8.512	2	4	9	행안부 노동부 기재부
④ 지역주민의 다양한 사회적경제 활동 지원	정상	· 관광두레 PD 20명 선발, 태양광 발전 협동조합 44개소, 2.8MW 지원	3.84	3.92	5.48	8.5488	1	3	7	국토부 산업부 문체부
4-3. 국민의 이해도 및 인식 제고										
⑤ 사회적경제 통합행사 개최	정상	· 사회적경제 통합 박람회 개최(7.5-7.7, 대전)	4.08	4	5.36	7.2896	2	6	18	기재부 노동부 행안부
⑥ 민관협업을 통한 사회적경제 인식 확대	정상	· 시민단체 등 각종 네트워크 지원	4.08	4.24	5.56	7.3392	1	5	17	노동부
5. 종합지원체계 구축 (6개 과제)										
5-1. 인재양성 통합 추진체계 구축										
① 지역·현장 중심 사회적경제 교육 제공	정상	· 시민단체 등 각종 네트워크 지원	4.24	4.16	5.6	8.064	2	5	10	노동부
②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개발 등 중앙 뒷받침 시스템 구축	지연	· 연구개발센터, 인재개발원 조성	3.32	3.36	5.44	11.315	1	2	2	노동부
5-2. 콘텐츠 및 강사양성 등 인프라 구축										
③ 사회적경제 교육 콘텐츠 개발	정상	· 표준교재 개발 진행 중	3.64	3.84	5.48	8.9872	1	3	5	노동부

A그룹 : 사회적경제조직(연합회 및 네트워크) : 정책 우선순위

정 책 과 제 명	추진 현황	실적	체감도 평균값	만족도 평균값	중요도 평균값	Borich 계수 값	문항內 우선 순위 (2순위까지)	★과제內 우선 순위 (3순위까지)	설문內 우선 순위 (7순위까지)	주관 부처
④ 신재생에너지 등 분야별 사회적경제 전문 강사 양성	정상	· 강사양성 교육 진행, 풀 구성 진행 중	3.08	3.2	4.72	7.1744	2	6	22	노동부

5-3. 공무원 및 지원조직 역량 강화

⑤ 기능별 특화과정 개설 등 지원조직 역량 강화	정상	· 지원기관 교육 등 역량강화 지원	3.64	3.76	5.4	8.856	2	4	6	노동부
⑥ 공무원 교육과정 內 사회적경제 교육 반영	정상	· 공무원 대상 사회적경제 교육 진행 중	3.24	3.44	5.72	13.042	1	1	1	노동부 인사처

B그룹 : 중간지원조직 종사자 : 정책 우선순위

정 책 과 제 명	추진 현황	실적	체감도 평균값	만족도 평균값	중요도 평균값	Borich 계수 값	문항內 우선 순위 (2순위까지)	★과제內 우선 순위 (3순위까지)	설문內 우선 순위 (7순위까지)	주관 부처
1. 인재 유입 활성화 (6개 과제)										
1-1. 청년 사회적경제인 양성										
① 청년 사회적가치창출활동 지원	정상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2.6만명 지원	4.483	3.983	5.550	8.695	1	1	14	행안부
② 청년 사회적경제기업 취업 확대	정상	· 사회적경제기업 취업지원 진행 중	4.500	4.267	5.733	8.409	2	2	16	행안부
③ 청년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확대	정상	· 창업팀 지원(815팀), 성장지원센터 조성 중(원주·울산·광주·서울)	4.767	4.600	5.400	4.320	3	6	32	노동부 중기부
1-2. 신중년 사회적경제 진출 확대										

B그룹 : 중간지원조직 종사자 : 정책 우선순위										
정책과제명	추진현황	실적	체감도 평균값	만족도 평균값	중요도 평균값	Borich 계수 값	문항內 우선 순위 (2순위까지)	★과제內 우선 순위 (3순위까지)	설문內 우선 순위 (7순위까지)	주관 부처
④ 신중년 사회적경제 교육 및 취업지원 확대	정상	· 신중년 취업 지원(96명 수료, 22명 취업)	3.833	3.867	5.300	7.597	1	3	18	노동부
⑤ 신중년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지원	정상	· 시니어 특화 창업입문 교육 중	3.800	3.833	5.150	6.781	3	5	22	노동부 과기부
⑥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정상	· 프로보노(265명), 전문위원 위촉(46명)	4.100	3.983	5.283	6.868	2	4	21	노동부
2. 사회적책임 의식과 경영마인드를 겸비한 리더 육성 (9개 과제)										
2-1. 대학 내 전문교육과정 확대										
① 사회적경제 학부 개설 지원	정상	·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 진행 등	3.800	3.717	5.367	8.855	2	2	12	노동부 교육부
② 사회적경제 석·박사 학위과정 확대	정상	· 사회적경제리더과정 운영(이화여대 등 4개 대학)	3.833	3.667	5.367	9.123	1	1	10	노동부
③ 외국 대학과 교류 지원 및 해외연수 프로그램 확대	정상	· 사회적기업국제컨퍼런스 참석(3월) 사회적경제 국제포럼 개최(7.2)	3.333	3.450	4.783	6.378	3	3	23	노동부 교육부
2-2. 대학생들을 예비 사회적경제 리더로 육성										
④ 희망사다리 장학생 대상 사회적경제 교육 제공	정상	· 1학기 장학생 지원 및 교육(5월, 991명)	3.300	3.367	4.717	6.368	1	4	24	교육부
⑤ 사회적경제기업 탐방 프로그램 제공	정상	· 우수중소기업 등 3,986명 방문	3.700	3.867	4.983	5.565	2	7	28	노동부
⑥ KOICA 등 해외봉사단 사회적경제 교육 및 컨설팅 제공	정상	· 귀국인재 사회적경제 컨설팅(5.29, 6명)	3.367	3.550	4.683	5.308	4	9	31	외교부
⑦ 대학생협 활성화 지원	정상	· 한국대학생협 연합회 협약체결교육진행	3.400	3.650	4.800	5.520	3	8	29	기재부 교육부
2-3. 사회적경제 유망분야 리더 육성										

B그룹 : 중간지원조직 종사자 : 정책 우선순위										
정 책 과 제 명	추진 현황	실적	체감도 평균값	만족도 평균값	중요도 평균값	Borich 계수 값	문항內 우선 순위 (2순위까지)	★과제內 우선 순위 (3순위까지)	설문內 우선 순위 (7순위까지)	주관 부처
⑧ 권역별 사회적경제 리더 포럼 운영	정상	· 사회적경제정책포럼 개최(7.2) 등	3.817	3.883	5.050	5.892	1	5	26	노동부
⑨ 도시재생 등 사회적경제 진출 유망분야 전문리더 육성 지원	정상	· 도시재생 등 분야별 맞춤형 교육 진행(48명 수강)	3.650	3.750	4.917	5.736	2	6	27	노동부
3. 사회적경제 종사자 역량 및 전문성 강화 (5개 과제)										
3-1. 교육의 접근성 제고										
① 사회적경제기업 중간관리자 대상 회계·마케팅 분야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정상	· 중간관리자 맞춤형 교육진행 중	4.067	3.933	5.633	9.577	1	1	8	노동부
② 훈련비용 지원 등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 대상 맞춤형 교육·훈련 제공	정상	· 종사자 1,377명, 56백만원 지원	4.183	4.217	5.733	8.696	2	2	13	노동부
3-2. 대상별 맞춤형 교육훈련 제공										
③ 사회적경제 전용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K-MOOC 강좌 개설	정상	· K-MOOC 강좌 개설 진행 중 (인천대, 사회적경제 기업가 경영전략)	3.617	3.633	5.033	7.047	3	5	20	노동부 교육부
④ 지역 중심 사회적경제 전문교육 확대	정상	· 신규공동훈련센터 공모 및 설명회	3.933	4.050	5.517	8.091	2	4	17	노동부
⑤ 사회적경제기업 훈련 프로그램 개발비 및 인건비 지원	정상	· 서울경기 중심 사회적경제기업 훈련수요 조사 진행, 개설 준비	3.667	3.667	5.267	8.427	1	3	15	노동부
4. 풀뿌리 사회적경제 토대 구축 (6개 과제)										
4-1. 초·중·고 학령기 교육접근성 확대										
① 사회적경제 과목개설, 교원 역량 강화 등	정상	· 초·중고 사회적경제 보수 학습자료 보급(3종, 2월)	3.617	3.600	5.667	11.711	1	1	3	교육부

B그룹 : 중간지원조직 종사자 : 정책 우선순위										
정 책 과 제 명	추진 현황	실적	체감도 평균값	만족도 평균값	중요도 평균값	Borich 계수 값	문항內 우선 순위 (2순위까지)	★과제內 우선 순위 (3순위까지)	설문內 우선 순위 (7순위까지)	주관 부처
										노동부 기재부
② 차기 교육과정 개편 시 사회적경제 내용 반영	차기 교육 과정 개편시	· 차기 교육 과정개편시 적용('21년~	3.750	3.800	5.633	10.328	2	2	5	교육부
4-2. 지역주민의 교육 접근성 강화		· 시니어 특화 창업입문 교육 중								
③ 지역교육센터 등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상시학습 지원	정상	· 평생학습도시 신규선정(세종시 등 7개소)	3.633	3.650	5.433	9.689	1	3	7	행안부 노동부 기재부
④ 지역주민의 다양한 사회적경제 활동 지원	정상	· 관광두레 PD 20명 선발, 태양광 발전 협동조합 44개소, 2.8MW 지원	3.883	3.750	5.433	9.146	2	4	9	국토부 산업부 문체부
4-3. 국민의 이해도 및 인식 제고										
⑤ 사회적경제 통합행사 개최	정상	· 사회적경제 통합 박람회 개최(7.5-7.7, 대전)	4.783	4.633	5.600	5.413	2	6	30	기재부 노동부 행안부
⑥ 민관협업을 통한 사회적경제 인식 확대	정상	· 시민단체 등 각종 네트워크 지원	4.367	4.250	5.600	7.560	1	5	19	노동부
5. 종합지원체계 구축 (6개 과제)										
5-1. 인재양성 통합 추진체계 구축										
① 지역·현장 중심 사회적경제 교육 제공	정상	· 시민단체 등 각종 네트워크 지원	4.350	4.333	5.433	5.977	2	6	25	노동부
②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개발 등 중앙 뒷받침 시스템 구축	지연	· 연구개발센터, 인재개발원 조성	3.517	3.400	5.433	11.048	1	3	4	노동부
5-2. 콘텐츠 및 강사양성 등 인프라 구축										

B그룹 : 중간지원조직 종사자 : 정책 우선순위

정 책 과 제 명	추진 현황	실적	체감도 평균값	만족도 평균값	중요도 평균값	Borich 계수 값	문항內 우선 순위 (2순위까지)	★과제內 우선 순위 (3순위까지)	설문內 우선 순위 (7순위까지)	주관 부처
③ 사회적경제 교육 콘텐츠 개발	정상	· 표준교재 개발 진행 중	3.833	3.667	5.733	11.849	1	1	1	노동부
④ 신재생에너지 등 분야별 사회적경제 전문 강사 양성	정상	· 강사양성 교육 진행, 풀 구성 진행 중	3.550	3.517	5.250	9.100	2	5	11	노동부

5-3. 공무원 및 지원조직 역량 강화

⑤ 기능별 특화과정 개설 등 지원조직 역량 강화	정상	· 지원기관 교육 등 역량강화 지원	3.967	3.800	5.617	10.204	2	4	6	노동부
⑥ 공무원 교육과정 內 사회적경제 교육 반영	정상	· 공무원 대상 사회적경제 교육 진행 중	3.883	3.867	5.867	11.733	1	2	2	노동부 인사처

1) 전체 설문내 사회적경제 당사자(연합회&네트워크) 통계결과

순	정책별 체감도 상위	평균	정책별 만족도 상위	평균	정책별 중요도 상위	평균	정책 요구도 상위	borich	
1	③ 청년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확대	4.56	⑥ 민관협업을 통한 사회적경제 인식 확대	4.24	⑥ 공무원 교육과정 내 사회적경제 교육 반영	5.72	⑥ 공무원 교육과정 내 사회적경제 교육 반영	13.042	
2	① 청년 사회적가치창출 활동 지원	4.2	③ 청년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확대	4.2	② 차기 교육과정 개편 시 사회적경제 내용 반영	5.68	②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개발 등 중앙 뒷받침 시스템 구축	11.315	
3	① 지역·현장 중심 사회적경제 교육 제공	4.24	① 지역·현장 중심 사회적경제 교육 제공	4.16	① 지역·현장 중심 사회적경제 교육 제공	5.6	① 사회적경제 과목개설, 교원 역량 강화 등	10.152	
			② 훈련비용 지원 등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 대상 맞춤형 교육·훈련 제공	4.16					
정책별 체감도 하위		평균	정책별 만족도 하위		평균	정책별 중요도 하위	평균	정책 요구도 하위	borich
34	⑥ KOICA 등 해외봉사단 사회적경제 교육 및 컨설팅 제공	3.08	④ 희망사다리 장학생 대상 사회적경제 교육 제공	3.2	③ 사회적경제 전용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K-MOOC 강좌 개설	4.52	③ 사회적경제 전용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K-MOOC 강좌 개설	5.2432	
			④ 신재생에너지 등 분야별 사회적경제 전문 강사 양성	3.2					
			⑧ 권역별 사회적경제 리더 포럼 운영	3.2					
			⑨ 도시재생 등 사회적경제 진출 유망분야 전문리더 육성 지원	3.2					
35	④ 신재생에너지 등 분야별 사회적경제 전문 강사 양성	3.08	① 사회적경제 학부 개설 지원	3.16	⑤ 사회적경제기업 탐방 프로그램 제공	4.44	⑥ KOICA 등 해외봉사단 사회적경제 교육 및 컨설팅 제공	4.8832	
36	③ 외국 대학과 교류 지원 및 해외연수 프로그램 확대	3	③ 외국 대학과 교류 지원 및 해외연수 프로그램 확대	3.04	⑥ KOICA 등 해외봉사단 사회적경제 교육 및 컨설팅 제공	4.36	⑤ 사회적경제기업 탐방 프로그램 제공	3.552	

2) 전체 설문내 중간지원조직 종사자 통계결과

순	정책별 체감도 상위	평균	정책별 만족도 상위	평균	정책별 중요도 상위	평균	정책 요구도 상위	borich
1	⑤ 사회적경제 통합행사 개최	4.783	⑤ 사회적경제 통합행사 개최	4.783	① 청년 사회적가치창출활동 지원	5.55	③ 사회적경제 교육 콘텐츠 개발	11.849
2	③ 청년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확대	4.767	③ 청년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확대	4.767	⑥ 공무원 교육과정 내 사회적경제 교육 반영	5.867	⑥ 공무원 교육과정 내 사회적경제 교육 반영	11.733
3	② 청년 사회적경제기업 취업 확대	4.5	① 지역·현장 중심 사회적경제 교육 제공	4.333	③ 사회적 경제 교육 콘텐츠 개발	5.733	① 사회적 경제 과목개설, 교원 역량 강화 등	11.711
	정책별 체감도 하위	평균	정책별 만족도 하위	평균	정책별 중요도 하위	평균	정책 요구도 하위	borich
34	⑥ KOICA 등 해외봉사단 사회적경제 교육 및 컨설팅 제공	3.367	③ 외국 대학과 교류 지원 및 해외연수 프로그램 확대	3.45	③ 외국 대학과 교류 지원 및 해외연수 프로그램 확대	4.783	⑤ 사회적경제 통합행사 개최	5.413
35	③ 외국 대학과 교류 지원 및 해외연수 프로그램 확대	3.333	②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개발 등 중앙 뒷받침 시스템 구축	3.4	④ 희망사다리 장학생 대상 사회적경제 교육 제공	4.717	⑥ KOICA 등 해외봉사단 사회적경제 교육 및 컨설팅 제공	5.308
36	④ 희망사다리 장학생 대상 사회적경제 교육 제공	3.3	④ 희망사다리 장학생 대상 사회적경제 교육 제공	3.367	⑥ KOICA 등 해외봉사단 사회적경제 교육 및 컨설팅 제공	4.683	③ 청년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확대	4.32

3) 사회적경제 당사자(연합회&네트워크) 중간지원조직 종사자 요구도 비교

정책 요구도 상위	borich	정책 요구도 상위	borich
⑥ 공무원 교육과정 內 사회적경제 교육 반영	13.042	③ 사회적경제 교육 콘텐츠 개발	11.849
②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개발 등 중앙 뒷받침 시스템 구축	11.315	⑥ 공무원 교육과정 內 사회적경제 교육 반영	11.733
① 사회적경제 과목개설, 교원 역량 강화 등	10.152	① 사회적 경제 과목개설, 교원 역량 강화 등	11.711
정책 요구도 하위	borich	정책 요구도 하위	borich
③ 사회적경제 전용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K-MOOC 강좌 개설	5.2432	⑤ 사회적경제 통합행사 개최	5.413
⑥ KOICA 등 해외봉사단 사회적경제 교육 및 컨설팅 제공	4.8832	⑥ KOICA 등 해외봉사단 사회적경제 교육 및 컨설팅 제공	5.308
⑤ 사회적경제기업 탐방 프로그램 제공	3.552	③ 청년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확대	4.32

4) 종합

정책이 신설되거나 방향의 변화가 일어날 때도 정책 체감도에 영향을 주게 된다. 사회적경제 분야의 정책은 그동안은 없었던 정책이 신설된 경우이며, 지난 2년여간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정책을 활발히 내놓았다. 인재양성 종합정책은 그간 고용노동부와 기재부 전담 정책에서, 행안부·교육부·중기부·과기부·농림부·해수부·국토부·외교부에 이르기까지 관련부처가 확대되고 사업량 역시 증대되었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위원회가 내놓은 『2018년 사회적경제활성화정책 중간점검 보고서』에서 인재양성 정책은 다소 만족한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인재양성 종합계획이 발표('18년 7월)된지 얼마되지 않은 시기였고, 사업에 진척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인재양성 분야에 별도의 정책이 수립되었다는 것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라고 해석되었다. 따라서 올해의 모니터링이 실제 시행된 인재양성 정책에 대한 민간의 최초 평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인재양성 정책에 대한 체감도와 만족도는 비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체감도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정책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동의 수준이 높기 때문이라 해석된다. 체감도가 높은 정책은 『1.인재유입 활성화 中 1-1 청년 사회적경제인 양성 사업(행안부/노동부/중기부)』, 『5.종합지원체계구축 中 5-1-① 지역·현장 중심 사회적경제 교육 제공(노동부)』, 『4-3. 국민의 이해도 및 인식 제고 中 ⑤ 통합박람회와 ⑥ 민관협업 통한 인식확대(범부처)』였다.

사회적경제로 청년의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사회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에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사회적경제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효한 수단이었고 또한 많은 역할을 해왔지만, 그로 인해 제한적인 인식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여기서 나아가 사회적경제가 가지는 다양성을 발휘하고 확장성을 가지고자 하는 요구가 생겨나고 있었기에 체감도에 영향주는 시의성이 있는 정책이라 하겠다.

체감도가 낮은 것은 『2.사회적책임 의식과 경영마인드를 겸비한 리더 육성 中 2-2. 대학생들을 예비 사회적경제 리더로 육성(외교부/교육부)』, 『2-1-③외국 대학과 교류지원 및 해외연수 프로그램 확대(노동부/교육부)』, 『5-2-④ 신재생에너지 등 분야별 사회적경제 전문강사 양성(노동부)』이었다.

중앙의 정책사업이라 보기에는 대상 범위가 좁은 프로그램 수준의 정책이고, 정책의 추진 과정에 현장 당사자 참여 및 개입이 일어나지 않은 점이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만족도가 높은 것은 『4.풀뿌리 사회적경제 토대 구축 中 4-3-⑥ 민관협업을 통한 사회적경제 인식 확대(노동부)』, 『1-1-③ 청년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확대(노동부/중기부)』, 『4-3-⑤ 사회적경제 통합행사 개최(범부처)』, 『5.종합지원체계구축 中 5-1-① 지역·현장 중심 사회적경제 교육 제공(노동부)』이었다.

만족도가 낮은 부문은 체감도 하위 정책을 포함하며, 『2-3-⑨ 도시재생 등 사회적경제 진출 유망분야 전문리더 육성 지원(노동부)』, 『2-1-① 사회적경제 학부 개설 지원(교육부/노동부)』, 『5-1-②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개발 등 중앙 뒷받침 시스템 구축(노

동부』이었다. 특히 5-1-②는 연구개발센터와 인재개발원 등 사회적경제에 특화된 인재양성 전략과 내용을 생산해 낼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인데 정책 추진이 지체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 반영되어 있다. 사례연구와 담론 및 정책 연구를 통해 사회적경제를 풍부히 해석하고 실천전략을 도출하는 연구개발이 필요한데, 기존 대학 경영학부를 중심으로 강좌나 과정을 개설하는 등의 한정적인 대책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적경제는 정책의 결과물이기 이전에 민간의 자구적 실천에 의해 성장해 온 시민운동적 실천과 담론이 축적되어 있기에, 정책의 추진 과정에 민간의 자원과 역량이 쓰여지고 역할할 수 있도록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며, 민간의 개입과 참여가 필요하다.

중요도 높은 것은 『5. 종합지원체계 구축 中 5-3-⑥ 공무원 교육과정 內 사회적경제 교육 반영(노동부/인사처)』, 『4. 풀뿌리 사회적경제 토대구축 中 4-1-② 차기 교육과정 개편 시 사회적경제 내용 반영(교육부)』, 『5-1-① 지역·현장 중심 사회적경제 교육 제공(노동부)』, 『1-1-① 청년 사회적가치 창출활동 지원(행안부)』, 『5-2-③ 사회적경제 교육 콘텐츠 개발(노동부)』이었다.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공무원의 인식과 태도의 중요성은 무수히 언급되어 왔다. 하지만, 관료제의 경직성과 부처별 이기주의를 이겨낼 수 있는 통합추진체계가 미약하고, 나아가 상부상조와 공동체 정신이 깊었던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경제는 낯선 것이 되어버린 것이 현실이다. 공무원 교육에 중요도가 높은 것은,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정책 취지가 왜곡되거나 목표가 실종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공무원의 역할이 적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다.

중요도가 낮은 것은, 『3. 사회적경제 종사자 역량 및 전문성 강화 中 3-2-③ 사회적경제 전용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K-MOOC 강좌 개설』, 『2-1 대학내 전문교육과정 확대, 2-2 대학생들을 예비 사회적경제 리더로 육성 中 ③, ④, ⑤, ⑥(교육부/노동부)』이었다. 전반적으로 교육부 관련 다수의 정책 만족도, 체감도, 중요도가 낮은 것이 두드러진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요구수준을 보여주는 Borich 분석 결과를 살펴보았다. 먼저 만족도 수준이 낮으면서 동시에 높은 중요도 수준의 간극(gap)을 클 경우 '높은 요구도'를 가진 정책으로 정의하며 상위 4순위를 도출하면 『4-1-① 사회적경제 과목 개설, 교원 역량 강화 등(교육부/노동부/기재부)』, 『5-3-⑥ 공무원 교육과정 內 사회적경제 교육 반영(노동부/인사처)』, 『5-2-③ 사회적경제 교육 콘텐츠 개발(노동부)』, 『5-1-②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개발 등 중앙 뒷받침 시스템 구축(노동부)』등 이다.

해당 정책은 사회적경제 인재양성의 토대 구축,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정책으로서, 사회 및 정부의 시스템 변화와 관련된 분야로서 장기적이며 그 효과는 즉시적이지 않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책들의 낮은 만족도 대비 높은 요구도를 보이는 만큼 시급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결과는 정책의 진행 및 효과성 검토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한 것이라 본다.

반대로 만족도와 중요도 수준의 간극(gap) 차이가 크지 않을 경우 '낮은 요구도'를 가진 정책으로 정의하며, 하위 4순위를 도출하면 『3-2-③ 사회적경제 전용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K-MOOC 강좌 개설』, 『2-2-⑤ 사회적경제기업 탐방 프로그램 제공』, 『2-2-⑥ KOICA 등 해외봉사단 사회적경제 교육 및 컨설팅 제공』, 『4-3-⑤ 사회적경제 통합행사 개최』, 『1-1-③ 청년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확대』등 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종사자와 미래 리더 양성과 관련한 부문에서 만족도나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던 3개의 정책이 정책의 우선순위에서도 높지 않은 것과는 일치하는 결과이다. 지원조직에서 정책 만족도와 중요도가 높았던 『4-3-⑤』와 『1-1-③』가 Borich 요구도에 있어 낮게 나타난 것은, 필요 수준에 대한 인식도와 현재 수준에 대한 인식도가 모두 높기에 나타난 긍정적 수치라고 하겠다. 그러나, 『3-2-③』와 같이 아직 생소한 교육정책이거나, 제한된 접근성을 가진 『2-2-⑥』 정책의 경우 정책의 목적과 취지를 다시 한번 재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2-2-⑤』와 같이 이미 사회적경제 초기부터 활발히 진행되어 왔거나, 사업목적과 성과가 구체적인 『4-3-⑤』정책의 경우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사업의 우수 사례를 도출 및 검증하여 사례 확산 단계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사회적경제로 청년의 유입은 늘어나고, 대중의 교육기회는 빠르게 확대되어 가고 있다. 사회적경제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약간의 시도들이 있고, 사회적경제가 우리사회에서 폭넓게 인식·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토대 구축과 인재양성 종합지원체계 구축은 천천히 진행되고 있다. 정책마다 속도가 다른 것은 부처의 의지의 강약, 정책대상의 크기 정도, 실행의 수월성 여부 등으로 볼 수 있다. 교육부는 분발이 필요하고, 노동부는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기재부는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필요하다.

정책 추진의 강도만큼 현장의 도전과 성장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에 비해, 이를 지원하는 교육 및 인재양성 프로그램은 현장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민관이 공동생산자로 정책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당사자 협의회가 기획하고

집행하는 교육/ 인재양성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인재양성 정책의 기저에는 사회적경제가 지향하는 인간관과 사회관 등이 전제되는바, 인재양성 정책은 사회적경제가 우리사회에서 필수불가결한 사회/경제 활동으로 인정받고 하나의 체계로서 구축되어 가는 것과 더불어 완성되어 갈 것이다. 때문에 정책 수립의 측면에서는 지속성과 일관성이, 집행과 평가/수정에 있어서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이상을 현실로 만들어 가는 현장 활동가/기업인과의 협업이 요청된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현장이 주목해야 할 현장의 과제는 역시나, 사회적경제의 실천과 지향을 담은 교육 콘텐츠,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사회적경제의 비전과 메시지 개발이 아닐까 한다. 정부의 정책의지가 활발해졌으나, 그동안의 각 영역의 실천을, 사회적경제라는 보편적인 이름 안에 다양성으로 설명해 내거나, 사회적경제 모두가 동의하는 사회에 대한 구상과 비전을 말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여, 사회적경제에 대한 간명한 인식형성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실험과 도전이 협동을 도모하고, 기업을 창업하고, 기업간 연대, 실천의 연구/개발을 통해 더욱 활발히 전개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4. 지역기반 연계 분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지역위원회 위원장 **하재찬** 사람과경제

■ 광역 시/도별 사회적경제 정책 모니터링 조사서

	확인 불가	체감도				중계	부정적 영향				모름	긍정적 영향				중계	
		하	중	상	소계		-3	-2	-1	소계		0	1	2	3		4
농촌신활력플러스	30	12	1	2	15	45				0			2		1	3	3
	66.7%	26.7%	2.2%	4.4%	33.3%	100.0%	0.0%	0.0%	0.0%	0.0%	0.0%	0.0%	66.7%	0.0%	33.3%	100.0%	100.0%
귀농귀촌활성화	27	9	7	2	18	45				0	3		3	3		6	9
	60.0%	20.0%	15.6%	4.4%	40.0%	100.0%	0.0%	0.0%	0.0%	0.0%	33.3%	0.0%	33.3%	33.3%	0.0%	66.7%	100.0%
도시재생뉴딜	2	7	24	12	43	45		1	1	2	3	9	15	6	1	31	36
	4.4%	15.6%	53.3%	26.7%	95.6%	100.0%	0.0%	2.8%	2.8%	5.6%	8.3%	25.0%	41.7%	16.7%	2.8%	86.1%	100.0%
디자인주도 사회적 기업 혁신역량강화	21	14	7	3	24	45				0	2	4	2	2		8	10
	46.7%	31.1%	15.6%	6.7%	53.3%	100.0%	0.0%	0.0%	0.0%	0.0%	20.0%	40.0%	20.0%	20.0%	0.0%	80.0%	100.0%
부처형	1		10	34	44	45			2	2	1	11	15	11	4	41	44
	2.2%	0.0%	22.2%	75.6%	97.8%	100.0%	0.0%	4.5%	0.0%	4.5%	2.3%	25.0%	34.1%	25.0%	9.1%	93.2%	100.0%
해외진출	21	9	12	3	24	45				0	2	3	6	1	3	13	15
	46.7%	20.0%	26.7%	6.7%	53.3%	100.0%	0.0%	0.0%	0.0%	0.0%	13.3%	20.0%	40.0%	6.7%	20.0%	86.7%	100.0%
사회적농업 활성화지원사업	21	15	9	0	24	45				0		1	3	4	1	9	9
	46.7%	33.3%	20.0%	0.0%	53.3%	100.0%	0.0%	0.0%	0.0%	0.0%	0.0%	11.1%	33.3%	44.4%	11.1%	100.0%	100.0%
생활SOC	18	10	13	4	27	45				0	2	5	7	3		15	17
	40.0%	22.2%	28.9%	8.9%	60.0%	100.0%	0.0%	0.0%	0.0%	0.0%	11.8%	29.4%	41.2%	17.6%	0.0%	88.2%	100.0%
소셜벤처	3	6	17	19	42	45			2	2	1	13	9	5	6	33	36
	6.7%	13.3%	37.8%	42.2%	93.3%	100.0%	0.0%	0.0%	5.6%	5.6%	2.8%	36.1%	25.0%	13.9%	16.7%	91.7%	100.0%
어촌뉴딜	30	10	5		15	45			2	2	1	2				2	5
	66.7%	22.2%	11.1%	0.0%	33.3%	100.0%	0.0%	0.0%	40.0%	40.0%	20.0%	40.0%	0.0%	0.0%	0.0%	40.0%	100.0%
지역맞춤	2	7	17	19	43	45				0	2	9	10	13	2	34	36
	4.4%	15.6%	37.8%	42.2%	95.6%	100.0%	0.0%	0.0%	0.0%	0.0%	5.6%	25.0%	27.8%	36.1%	5.6%	94.4%	100.0%
CB BIR&D	3	7	16	19	42	45				0	3	7	13	7	5	32	35
	6.7%	15.6%	35.6%	42.2%	93.3%	100.0%	0.0%	0.0%	0.0%	0.0%	8.6%	20.0%	37.1%	20.0%	14.3%	91.4%	100.0%
CB R&D	3	12	22	8	42	45				0	3	8	10	7	2	27	30
	6.7%	26.7%	48.9%	17.8%	93.3%	100.0%	0.0%	0.0%	0.0%	0.0%	10.0%	26.7%	33.3%	23.3%	6.7%	90.0%	100.0%
커뮤니티케어	14	14	14	3	31	45				0	1	5	9	1	1	16	17
	31.1%	31.1%	31.1%	6.7%	68.9%	100.0%	0.0%	0.0%	0.0%	0.0%	5.9%	29.4%	52.9%	5.9%	5.9%	94.1%	100.0%
종합	81	42	48	50	140	221	0	1	1	2	8	13	21	9	2	45	55
	36.7%	19.0%	21.7%	22.6%	63.3%	100.0%	0.0%	1.8%	1.8%	3.6%	14.5%	23.6%	38.2%	16.4%	3.6%	81.8%	100.0%

□ 현황분석

○ 지역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이 작동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없는 것이 36.7%(與: 63.3%)로 나타남. 체감할 수 있는 것이 63.3%

농촌신활력(66.7%), 귀농귀촌(60.0%), 어촌뉴딜(66.7%),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46.7%)로 농어촌 관련 정책이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고, 어촌뉴딜의 경우 지역의 영향에 대한 평가도 모르겠다는 의견이 40%(응답자 5명 중 2명)로 나타남. 이는 몇 개 지역이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거나 공모에서 몇 지역만 선정되어 전국 시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됨.

‘생활soc(국토부)’ 사업 또한 40.0%가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또한 농어촌 정책과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됨.

이와 달리 ‘디자인주도 사회적기업 혁신역량 강화(산자부)’, ‘사회적경제기업 해외 진출 지원 강화(산자부)’ 그리고 ‘커뮤니티케어(복지부)’ 사업은 각 각 46.7%, 46.7%, 31.1%로 확인이 어려운 정책으로 조사되고 있음. 또한 31.1%, 20.0%, 31.1%로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산자부 사업의 경우 해당되거나 연계된 기업의 빈도가 적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일 것으로 보이나, 커뮤니티케어는 복지 주체의 폐쇄성이 가장 큰 원인일 것으로 보임.

○ 지역에 정책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는 고용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확인불가 2.2%/체감도 하 0.0%), 중기부 소셜벤처(확인불가 6.7%, 체감도 하 13.3%), 산자부 커뮤니티비즈니스활성화사업 비R&D(확인불가 6.7%, 체감도 하 15.6%)로 조사되었음.

-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소셜벤처, 커뮤니티비즈니스활성화 비R&D의 경우 긍정적인 영향이 93.2%, 91.7%, 94.1%로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커뮤니티비즈니스활성화사업의 경우 R&D와 비R&D가 병행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R&D의 경우 확인불가는 비R&D와 동일하게 6.7%이나, 체감도 하는 26.7%로 2배나 높음.

○ 체감도가 중/상으로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영향도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81.8%)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영향정도 모름 14.5%, 부정적 영향 3.6%로 응답함.

- 귀농귀촌활성화(66.7%), 어촌뉴딜(40.0%) 정책을 제외하고는 80.0% ~ 94.4%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음.

- 사회적농업활성화지원사업의 경우 체감도 중/상으로 응답한 9명 모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응답함. 반면 어촌뉴딜의 경우 40.0%(5명 중 2명)이 보통으로 응답하였음.

□ 정리 및 평가(※ 세부의견 종합)

∴1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이나 사업이 지역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고, 체감이 긍정적일 경우 그 영향 또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지역에 따른 차이보다는 부처 등 추진 주체에 따른 영향이 큼.

단, 사회적경제 조례 등 제도적 기반이 약하고, 사회적경제를 명시화하지 않은 부서(민관협력공동체과 등)에서 담당할 경우 체감도와 영향력에 있어서 모두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남.

∴2. 사회적경제 정책이라 하더라도 커뮤니티케어 및 커뮤니티비즈니스활성화 R&D 사업 등의 경우와 같이 실행 주체가 폐쇄적이거나 소수일 때 체감도가 낮음.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이 아니라 하더라도 실행 주체가 사회적경제 주체일 경우 사회적경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다 부처와 사회적경제 다 주체의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3. 시/도 지자체 내 사회적경제 국·과가 타 부서와 소통이 소극적인 경우가 다수 확인되었으며, 소통이 적극적인 지역과 비교할 때 그 영향력이 낮았음. 사회적경제와 연계 못 할 정책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경제 계의 필요와 욕구를 기반으로 사회적경제 관련 부서가 타 부서 사업에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연계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함.

반대의 경우. 즉 타 부서 사업을 사회적경제 주체가 진행할 경우 사회적경제와 타 부서 사업의 협력은 물론이고 사업효과도 높음.

∴4. 중앙정부의 적극성보다 지방정부의 적극성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며, 민관협력과 소통의 노력 또한 마찬가지로 확인되고 있음.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의 효과를 얻기 위하여 빠른 관;관/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 협력시스템 구축이 시급하

게 필요함.

□ 세부내용

정책	주요 의견
귀농귀촌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주관기관에 따라 추진 방향이 매우 상이하며, 이로 인해 사업 체감도가 낮으나 높음. - 시니어·퇴직자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사회적경제 유입 가능성이 큼 - 농촌 필수사업이나 지역 차원의 홍보 부재 및 추진상황 공유 부족하여 효과성이 아쉬움. 더불어 갈등해소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함
농촌 신활력 플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체감도가 낮으나 높아지고 있음 - 사업 주관기관에 따라 추진 방향이 매우 상이함 - 지역 차원의 홍보 부재 및 추진 상황 공유 부족 - 사업계획 초기 단계부터 사회적경제 주체 참여 필요
어촌뉴딜 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주관기관과 사회적경제 주체 간의 교류 등이 부족하여 기존 어촌 정책과의 차별성을 체감하기 어려움. 단 사업 교류 확대 및 상승을 기대감은 있음. - 지역 차원의 홍보 등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해 보임.
도시재생뉴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은 느껴지나 광역 및 시행 지자체의 사회적경제 참여와 연계 적극성이 없고,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정보공유 및 연계 노력이 부족함. -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 주체 간 상호 이해노력 부족. - 도시재생 및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 간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화 필요 - 지역 주민 조직과 사업화를 위한 지원 체계와 주민 의견 반영 노력 등을 보이고 있어 꾸준히 확대 투자할 필요가 있음. - 도시재생 지역 S/W를 사회적경제 주체로 발굴·육성의 양적 성장만큼이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계획과 지원이 중요한데 한계가 느껴짐. - 사업 체감도가 낮으나 높아지고 있음
생활 SO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 조직 대상 인턴 연계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 중인 지역도 있고, 연계활동이 미미한 지역도 있음. - 실질 수요와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것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주체와의 소통과 협업을 위한 지방정부 노력이 필요함.

정책	주요 의견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 사업(BI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 주체 및 다양한 참여기관들이 함께하고 있어 개별 기업의 스케일업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와 생태계 관점에서의 스케일업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음. - 지역의 필요한 사업을 규모있게 시도해 볼 수 있고, 지방정부가 30%의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여 관심을 유도하는 효과를 얻고 있음. - 중앙정부의 적극성에 비하여 지방정부의 적극성이 부족함. 특히 사회적경제 부서와 의제 관련 부서의 협력 상호 협조가 미미함. - 일자리 창출이라는 취약계층 개인의 관점이 아닌 기업 관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매우 좋음. - 사업 추진 상황 홍보 및 다양한 주체와의 공유가 필요하며, 수혜기업의 확대 등 전반적인 사업 확대가 필요함.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 사업(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IR&D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어 BIR&D 사업에서의 긍정적 효과가 연결되어 있음(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 BIR&D 참고) - 타 부서의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한 인식 재고의 기회가 되고 있음. - 사업성격상 폐쇄성이 있을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만, 이로 인해 사업효과에 제한적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확대에 제한점이 있음. - 준비 기간은 물론이고 사업수행 기간이 짧아 사업성으로 이어지는데 한계는 있으나 긍정적인 메시지를 공유하고 협업의 틀을 키우는 효과가 있음.
디자인 주도 사회적경제 기업 혁신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체감도가 낮으나 높아지고 있음 -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으나, 홍보와 추진상황 공유가 부족함. - 시행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선 장기적 관점 필요
사회적경제 기업 해외진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진출 가능성 지도 등을 제작하여 자매결연 국가(도시) 활용 방안 및 국가(도시) 트렌드 등을 고려한 진입의 사회적가치(소셜미션)가 있는 것이나, 가능한 품목 등을 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인 지원과 KOTRA 연계 강화 필요. - 지역 차원 홍보나 추진 현황에 대한 공유가 부족함.
부처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소셜미션의 예비사회적기업 모델 발굴과 부처의 위탁사업의 사회적경제화 등 긍정적 효과 등을 고려할 때 확장할 필요가 있음. - 부처는 확장성을 보이나 지방정부는 협력과 임팩트 효과를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고, 지정 기업이 지역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특화사업이 부족함. - 중앙에서 지역으로 정책이 추진되는 각 주체의 주체성과 지역특화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 개선이 필요함. - 부처형과 지역형 중복 심사 등 행정적 낭비 요소가 있음. - 중앙부처의 특성에 맞게 부처에서 특별관리할 필요가 있음. 특히 환경(재활용), 여성 등 그 분야의 구체성과 차별성이 명확한 부처의 경우는 더욱 그러함.

정책	주요 의견
<p>소셜벤처 육성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부, 중기부 사업의 통합화 필요 - 지역 사회적경제 역할의 폭을 넓히고 초기 예비사업 단계에서 유용함이 있어 청년·시니어 등 주체를 발굴하고 다양화하는데 긍정적임 - 그러나 지역 거점 역할 및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실질적인 선정권 등 시스템 개선이 필요함. - 사후 지원·관리 및 지역 착근을 위한 창조혁신센터 등 지역 주관 기관과의 협력과 연계를 통한 인프라구축이 필요함. - 지역 주민 참여를 넓히고 확대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홍보와 주관기관의 적극성 부족이 느껴짐 - 전반적으로 확대가 필요함.
<p>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직으로 대부분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 새 직종·직군 개발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등 4대보험 가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단계가 평가에 적용되지 않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를 다양하게 확대하거나 사회적경제 주체를 참여시키는데 한계가 있음. - 4대 보험 가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 개선 등 질적 개선 필요 - 선도사업이고 초기 계획 단계에서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생각됨. - 사회적경제 기업과 연계하여 인력확보 등 경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지방계약법의 자격요건(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요청사례가 확대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 즉 사회적경제 기업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며, 일자리가 필요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가 공공구매 관련된 지역맞춤형 참여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공공구매 관련 정부차원의 협조와 위탁사무의 가점 부여 등 적극적인 노력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p>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수행 기관이 복지기관을 중심으로 폐쇄성이 있음. 이로 인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사업참여 기회가 낮고 체감도도 낮음 - 기존 시혜 관점에서의 복지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 하여 주민 자율적 해결 방안 제시가 되고 있지 못함. - 지역 차원의 홍보와 추진상황 공유가 부족함.
<p>소상공인 협동조합 지원 (협동아카데미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운영 체감도는 높으나 효율적 운영 필요

5. 사회적 가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 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 김현철 익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 신형석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사회적 가치 모니터링 분야]

1.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2018)
2.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 가치 지표

1.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1.1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개요

- 법적근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8조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매년도 경영노력과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공공성 및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경영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대국민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함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평가절차
 - 전년도 실적보고서 제출 (기재부&주무기관) → 계량실적 확인 (회계법인 or 감사) → 평가단 구성 → (필요시 관련 자료 제출) → 경영실적 평가 (필요시 현장방문 or 인터뷰) →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확정

- 공기업·준정부기관 유형

유형		공공기관 유형 구분 기준
공기업	공기업 I (10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계획과 건설, 관리 등을 주요업무로 하는 대규모 기관
	공기업 II (25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 중 특정 분야의 산업에 대한 진흥을 주요업무로 하는 기관, 중소형 SOC기관, 자회사 등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13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직원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권리를 위탁받은 기관 중에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강소형기관은 제외)
	위탁집행형 (37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직원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기관 중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강소형기관은 제외)
	강소형 (43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정원이 300인 미만인 기관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자산규모 (위탁관리하는 기금자산 포함)가 1조 원 미만이고 정원이 300인 미만인 기관 (2017년말 기준)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평가등급

등급	수준 정의
탁월(S)	모든 경영영역에서 체계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효과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우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
우수(A)	대부분의 경영영역에서 체계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효과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
양호(B)	대부분의 경영영역에서 양호한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양호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
보통(C)	대부분의 경영영역에서 일반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일반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준
미흡(D)	일부 경영영역에서 일반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성과는 다소 부족한 수준
이취급(E)	대부분의 경영영역에서 경영시스템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경영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개선 지향적 체계로의 변화 시도가 필요한 수준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평가 지표 구조 (2017 vs. 2018)

평가 기준	지표명	세부평가 항목	합계	
경영 관리	경영관리합계		50	
	1. 경영전략 및 사회공헌	경영전략합계		18
		(1) 경영기획 및 사회적 책임	① 경영전략 수립, 국정과제 이해, 윤리경영, 내부 견제시스템 운용, 이해관계자 의사소통	5
			② 일자리창출, 사회공헌활동, 균등한 기회와 공정경쟁	5
			③ 국가정보보안 정책, 정보보안관리체계	1
			④ 산업재해 안전관리, 재난관리체계구축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	1
			⑤ 국가정보보안 정책, 정보보안관리체계	1
	(2) 기관경영혁신	미래 대비 및 중장기 경영혁신을 위한 노력	3	
	(3) 국민평가	고객만족도 지수, 국민체감도 조사	2	
	(4) 경영정보공시	정보공개, 데이터 개방, 정보공유	1	
	(5) 경영정보공시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	1	
	(6) 정부권장정책	청년미취업자 고용실적, 시간제 근무 실적, 장애인 의무고용,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중소기업제품 등 우선구매(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생산품 및 서비스, 중증 장애인 생산품, 녹색제품),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구매,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실적, 재정조기집행 이행실적	6	
		2. 업무효율	5	
		3. 조직 및 인적 자원관리	4	
		4. 재무예산관리	10	
5.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3		
가정 항목	(1) 보수 및 복리후생	고졸자,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등에 대한 보수 복리후생제도의 합리적 개선	6	
	(2) 종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노사관계 선진화, 노사협력, 단체협약 개선	4	
주요 사업	주요사업 합계		50	
가정 항목	일자리 창출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공공기관의 좋은 일자리 창출실적, 민간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 노력과 실적/일자리 창출 좋은 일자리 창출 노력과 성과의 혁신성	10	
	전체 합계		100	

평가 기준	지표명	세부평가 항목	합계	
경영 관리	경영관리합계		55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경영전략합계		6
		(1) 경영기획	①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비전과 핵심가치 설정, 경영목표 설정과 경영전략 수립(효율성과 사회적 가치 균형, 핵심 업무와의 연계성, 국정과제 반영 여부)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2
			(1) 일자리창출	7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4		
	(3) 안전 및 환경	3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① 비정규직 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실적	5	
		② 청년 미취업자 고용실적,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	1	
		③ 장애인 의무고용,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②공정한 과정을 통한 채용, ③청년 고졸자 및 지역인재 채용, ④여성관리자 확대, 여성인력양성 및 경력 단절여성 고용, ⑤고졸자, 무기계약직, 불합리한 차별 해소	4	
		①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실적, 녹색제품 구매	3	
		② 산업재해 안전관리,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③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리체계 구축 운영, ④업무 특성에 적합한 환경보전의 개념정의, 예방, 훼손 방지	3	
	(5) 윤리경영	3		
3. 업무효율	5			
4. 조직-인사-재무관리	9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5			
(3) 삶의 질 제고	1			
5.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종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6. 협력과 참여	5			
(1) 국민참여	이해관계자 및 대국민 소통채널 구축 및 운영	1		
(2) 열린혁신	혁신과제 발굴 노력	1		
(3) 국민소통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공시, 고객만족지수 국민체감 지수, 사회적 가치 기여도 지수	3		
주요 사업	주요사업 합계		45	
주요 사업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였는가?		45	
전체 합계			100	

◦ 자료원 :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 포용국가 시대의 조직 운영 원리’ 양동수 외 5인, 2019

◦ 2017년 경영평가 기준의 '경영 기획 및 사회적 책임', '정부 권장 정책', '일자리 창출 가점 항목'이 2018년 경영평가 기준의 '2. 사회적 가치 구현'의 5대 지표로 변경

◦ 사회적 가치 구현의 5대 지표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의 주요 지표로 충분한지에 대한 검토 필요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사회적 가치 세부지표 평가 내용

유형		공공기관 유형 구분 기준
일자리 창출	계량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 청년 미취업자, 시간선택제 실적
	비계량	일자리 창출 (민간부문 포함)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과 성과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계량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과 보호 등 사회통합 노력과 성과
	비계량	사회 형평적 인력 활용과 균등한 기회보장을 위한 노력과 성과
안전 및 환경	계량	안전한 근로환경 및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관의 실적
	비계량	재난·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계량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사회적경제 기업과의 협력·상생을 위한 실적
	비계량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과의 협력·상생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
윤리경영	비계량	경영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경제적·법적 책임은 물론 사회적 통념으로 기대되는 윤리적 책임을 준수하고자 하는 기관의 노력과 성과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사회적 가치 평가 지표별 가중치

세부 지표	공기업	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	강소형
사회적 가치 구현	22	20	20
- 일자리 창출	7	6	6
-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4	3	3
- 안전 및 환경	3	3	3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	5	5
- 윤리경영	3	3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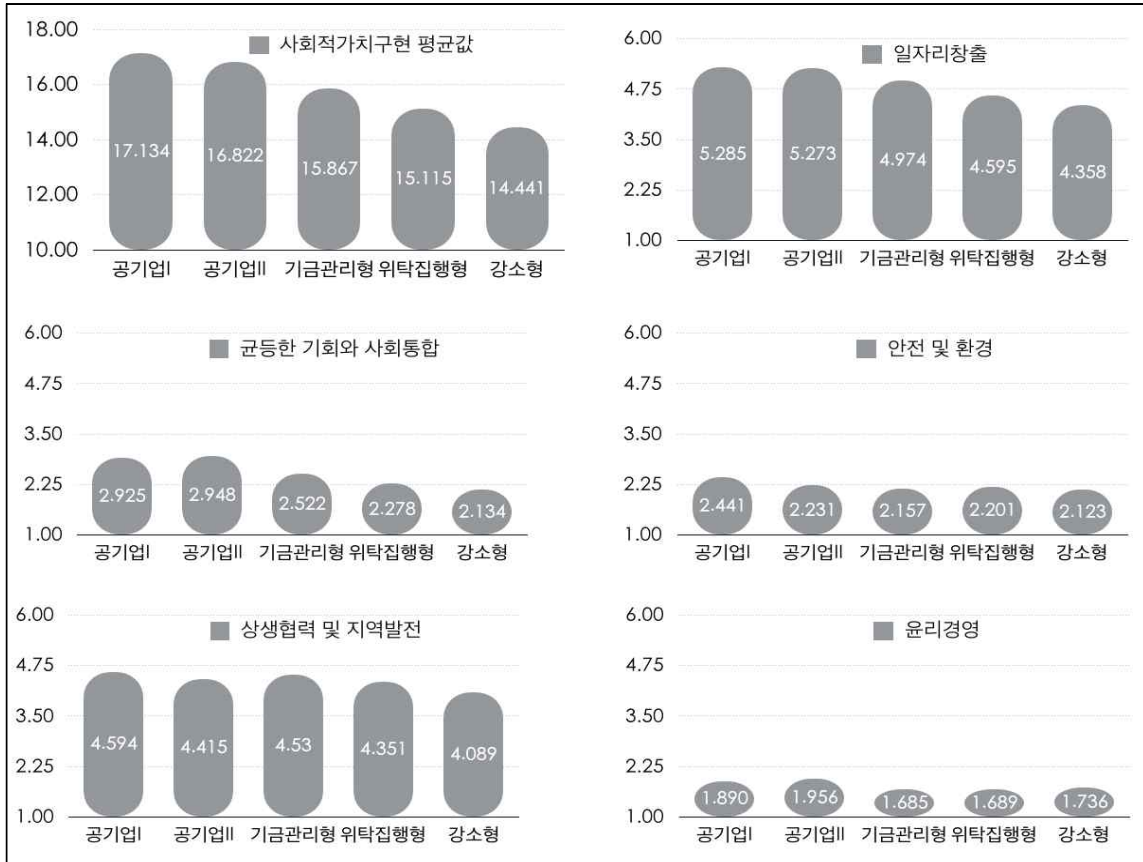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평가 결과

등급	공기업	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	강소형
우수(A)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회보장정보원,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양호(B)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전KDN(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도로교통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우체국금융개발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문화예술회관진흥재단, 한국문화예술회관진흥재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사립복지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수산업어촌진흥원, 한국수산물안전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보통(C)	강원랜드(주), 울산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주),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해양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립생태원, 국제방송교류재단, 독립기념관,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연론진흥재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미흡(D)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주), 한전KPS(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환경공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가상산업기술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재정정보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아주미흡(E)	대한석탄공사		

1.2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구현 평가

1.2.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유형별 사회적 가치 구현 평가

유형	평균	비계량	계량
공기업I	17.134	9.940	7.194
공기업II	16.822	9.600	7.222
기금관리형	15.867	8.246	7.621
위탁집행형	15.115	7.936	7.427
강소형	14.441	7.249	7.192



○ 사회적 가치 구현에 대한 평균값은 공기업I > 공기업II > 기금관리형 > 위탁집행형 > 강소형 순임

◦ 공기업I의 경우 공기업II에 비해 비계량 평가치가 높게 나타남

1.2.2 공기업I 사회적 가치 구현 평가

○ 사회적 가치 구현 실적이 높은 공기업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도로공사 > 인천국제공항공사 순임

◦ 일자리 창출 성과 관련, 한국철도공사 > 한국도로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인천국제공항공사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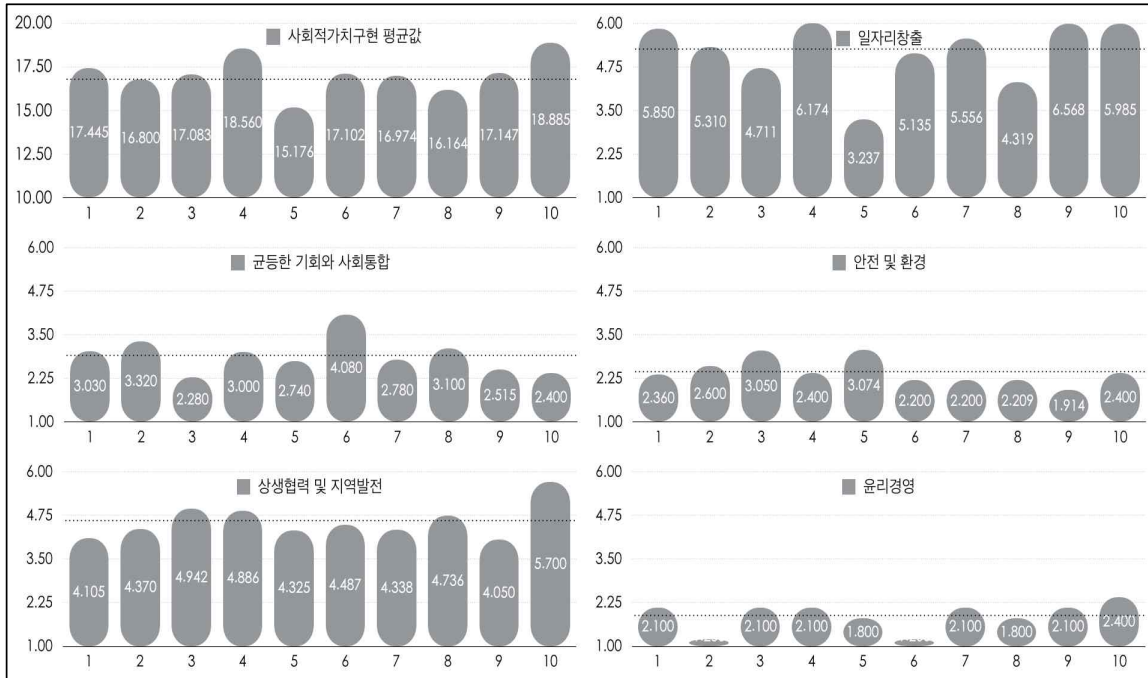
◦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성과 관련,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가스공사 > 한국지역난방공사 순임

◦ 안전 및 환경 성과 관련, 한국석유공사 > 한국공항공사 순임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성과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공항공사 > 한국도로공사 > 한국지역난방공사 순임

◦ 윤리경영 성과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가장 높으며,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성과가 가장 낮음

(범례) 공기업 I									
1: 인천국제공항공사	2: 한국가스공사	3: 한국공항공사	4: 한국도로공사	5: 한국석유공사	6: 한국수자원공사	7: 한국전력공사	8: 한국지역난방공사	9: 한국철도공사	10: 한국토지주택공사



1.2.3 공기업II 사회적 가치 구현 평가

○ 사회적 가치 구현 실적이 높은 공기업으로는 한국중부발전(주) > 한국남부발전(주) > 인천항만공사 > 한국남동발전(주) > 한국동서발전(주) 순임

◦ 일자리 창출 성과 관련, 한국동서발전(주) > 한국중부발전(주) > 한국남부발전(주) > 한국조폐공사 > 한국감정원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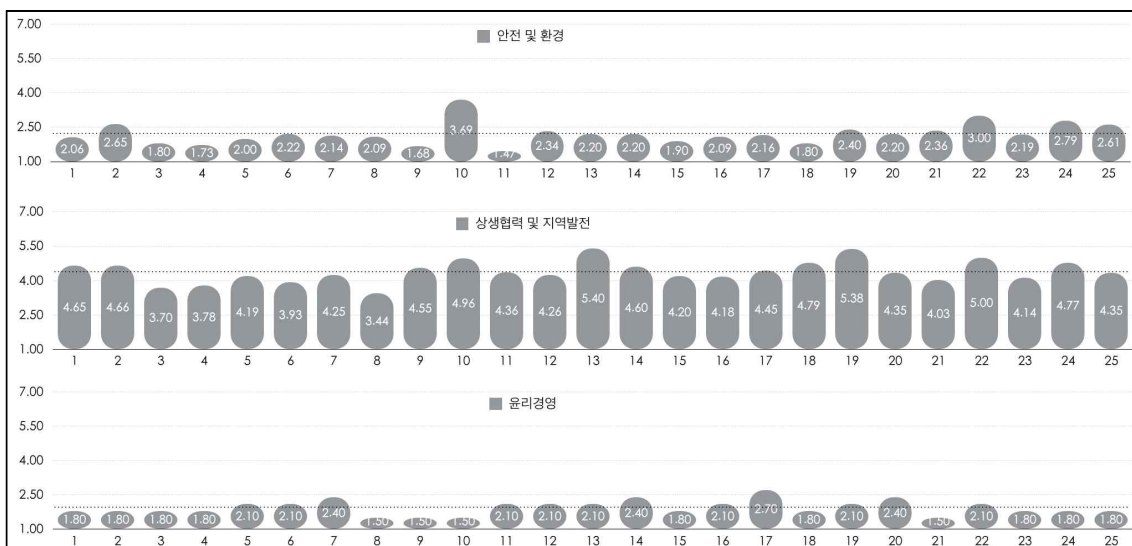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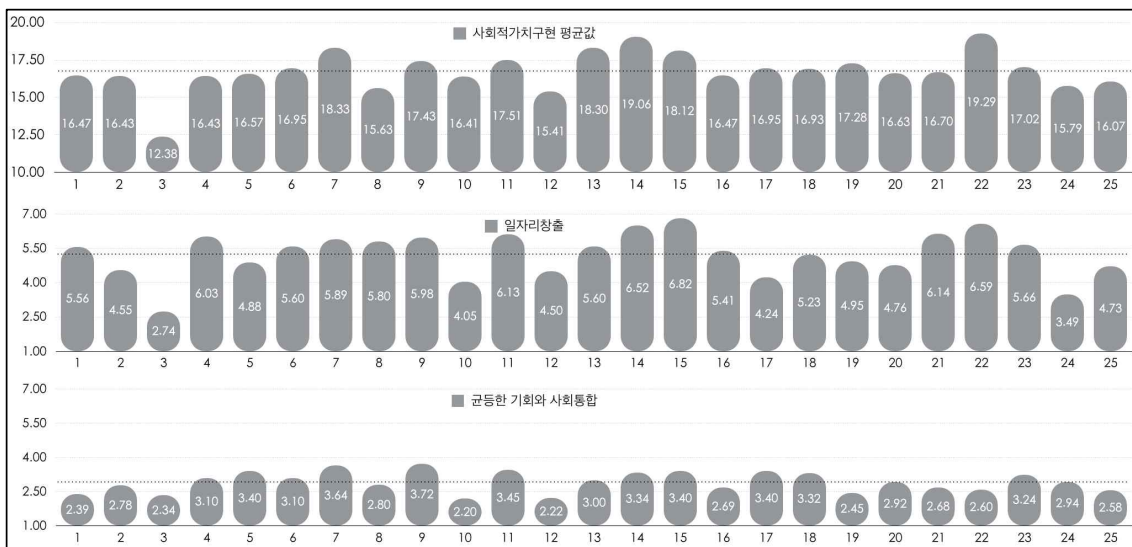
◦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성과 관련, 주택도시보증공사 > 인천항만공사 > 한국감정원 순임

◦ 안전 및 환경 성과 관련, (주)한국가스기술공사 > 한국중부발전(주) > 한전KPS(주) > 그랜드코이라레저(주) 순임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성과 관련, 한국남동발전(주) > 한국수력원자력(주) > 한국중부발전(주) > (주)한국가스기술공사 순임

◦ 윤리경영 성과 관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인천항만공사 & 한국남부발전(주) & 한국전력기술(주) 순임

(범례) 공기업 II 1: 강원랜드(주) 2: 그랜드코리어저(주) 3: 대한석탄공사 4: 부산항만공사 5: 여수광양항만공사 6: 울산항만공사 7: 인천항만공사 8: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9: 주택도시보증공사 10: (주)한국가스기술공사 11: 한국감정원 12: 한국광물자원공사 13: 한국남동발전(주) 14: 한국남부발전(주) 15: 한국동서발전(주) 16: 한국마사회 17: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8: 한국서부발전(주) 19: 한국수력원자력(주) 20: 한국전력기술(주) 21: 한국조폐공사 22: 한국중부발전(주) 23: 한전KDN(주) 24: 한전KPS(주) 25: 해양환경공단																								
---	--	--	--	--	--	--	--	--	--	--	--	--	--	--	--	--	--	--	--	--	--	--	--	--



1.2.4 기금관리형 사회적 가치 구현 평가

○ 사회적 가치 구현 실적이 높은 준정부기관으로는 예금보험공사임

◦ 일자리 창출 성과 관련, 기술보증기금 > 중소기업진흥공단 > 한국자산관리공사 > 한국무역보험공사 > 신용보증기금 순임

◦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성과 관련, 한국무역보험공사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국민연금공단 순임

◦ 안전 및 환경 성과 관련, 근로복지공단 > 예금보험공사 순임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성과 관련, 중소기업진흥공단 > 공무원연금공단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한국자산관리공단 순임

◦ 윤리경영 성과 관련,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가장 높으며, 공무원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 가장 낮음

(범례) 기금관리형	
1: 공무원연금공단	2: 국민연금공단
3: 국민체육진흥공단	4: 근로복지공단
5: 기술보증기금	6: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7: 신용보증기금	8: 예금보험공사
9: 중소기업진흥공단	10: 한국무역보험공사
11: 한국원자력환경공단	12: 한국자산관리공사
13: 한국주택금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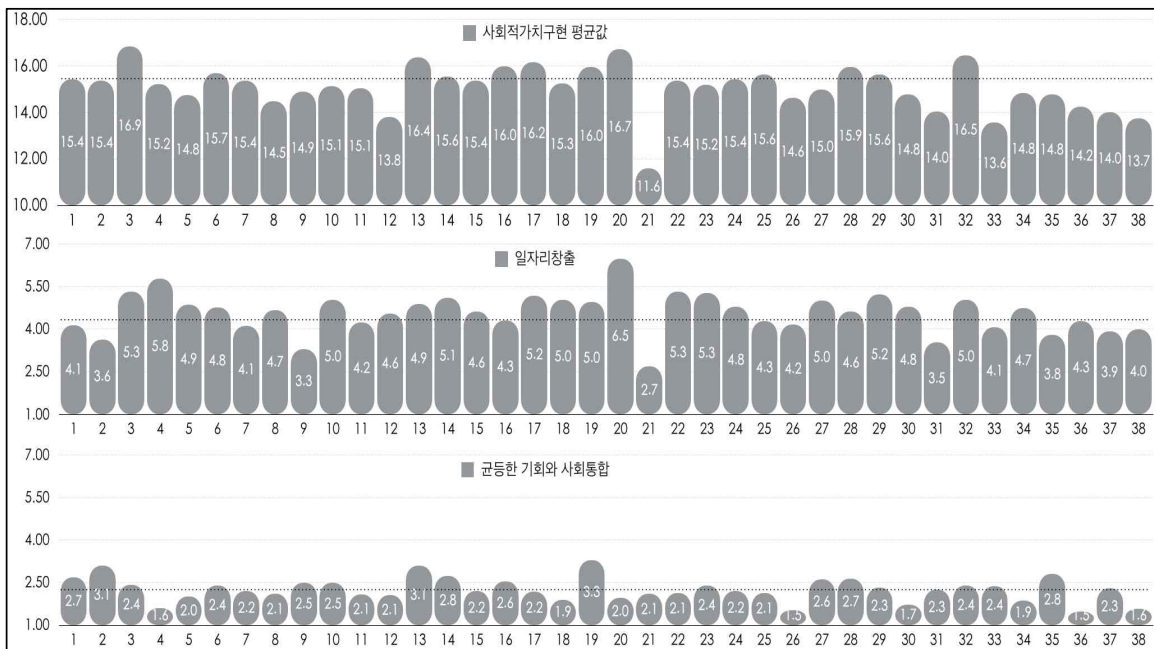
1.2.5 위탁집행형 사회적 가치 구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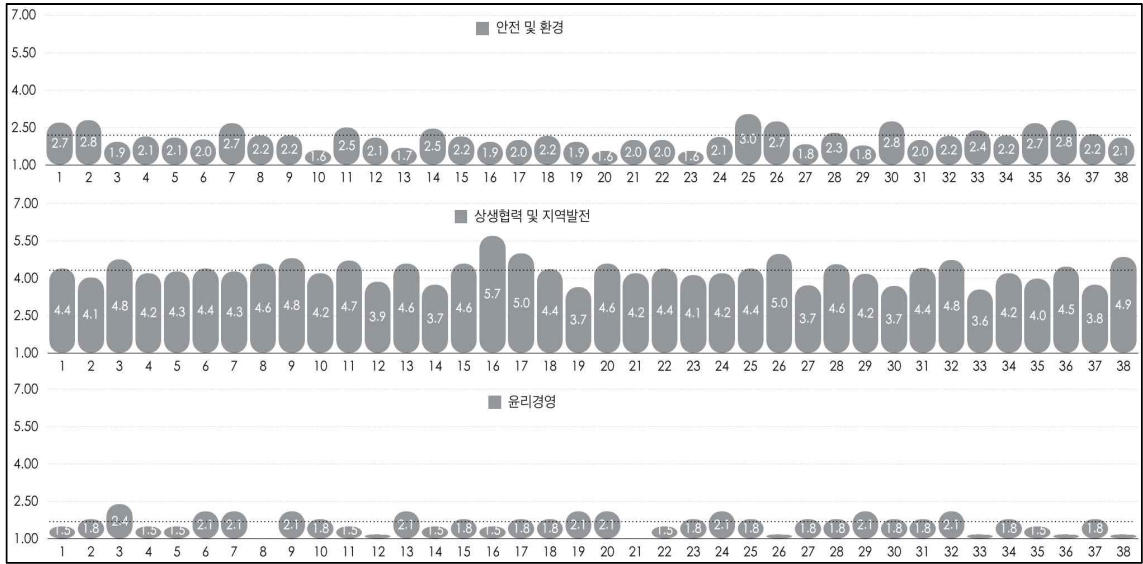
○ 사회적 가치 구현 실적이 높은 준정부기관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 한국산

업기술진흥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한국관광공사 순임

- 일자리 창출 성과 관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순임
-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성과 관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국립공원공단 & 한국관광공사 순임
- 안전 및 환경 성과 관련, 한국소비자원 > 국립공원공단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한국정보화진흥원 순임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성과 관련, 한국국토정보공사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순임
- 윤리경영 성과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장 높으며,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가장 낮음

(범례) 위탁집행형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국립공원공단
3: 국민건강보험공단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 도로교통공단	6: 사회보장정보원
7: 선박안전기술공단	8: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9: 우체국물류지원단	10: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1: 축산물품질평가원	12: 한국가스안전공사
13: 한국관광공사	14: 한국교통안전공단
15: 한국국제협력단	16: 한국국토정보공사
17: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18: 한국농어촌공사
1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1: 한국산업단지공단	2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3: 한국산업인력공단	24: 한국석유관리원
25: 한국소비자원	26: 한국승강기안전공단
27: 한국시설안전공단	28: 한국에너지공단
29: 한국연구재단	3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1: 한국인터넷진흥원	3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3: 한국장학재단	34: 한국전기안전공사
35: 한국전력거래소	36: 한국정보화진흥원
37: 한국철도시설공단	38: 한국환경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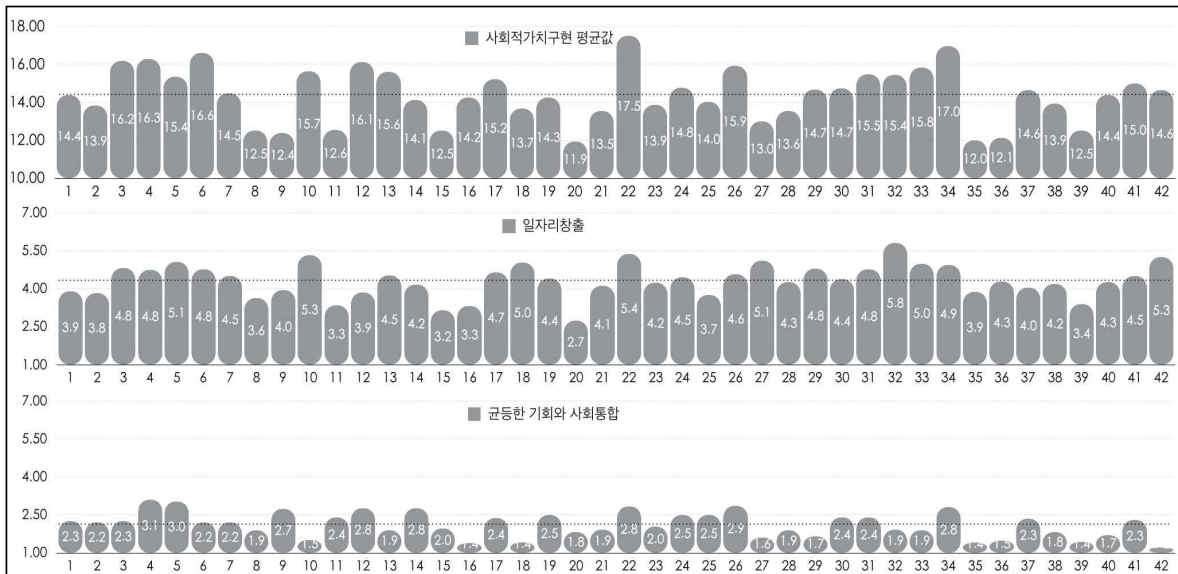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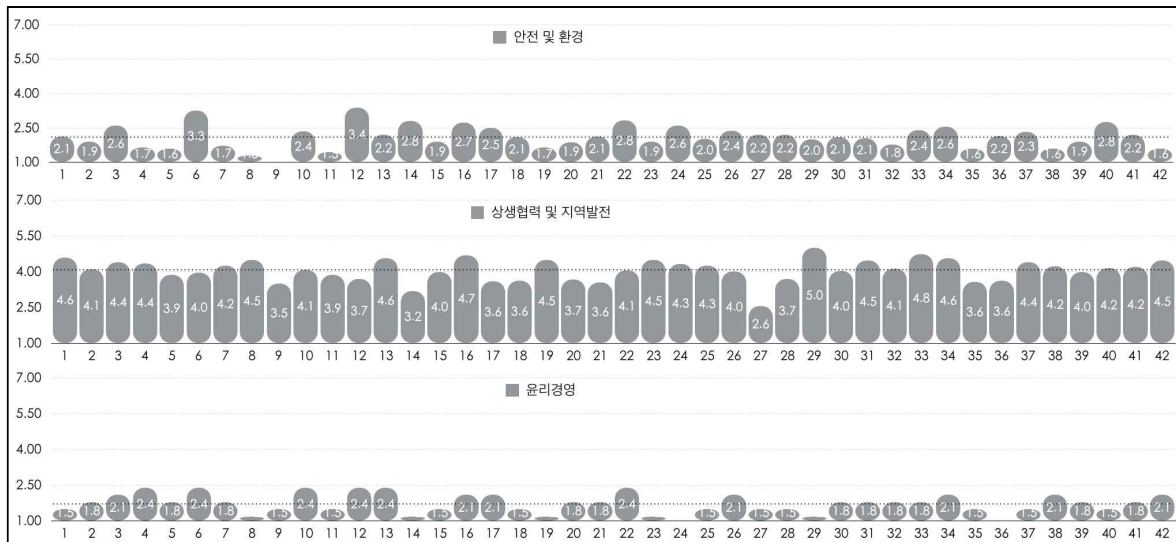


1.2.6 강소형 사회적 가치 구현 평가

(범례) 강소형

1: 국립생태원 2: 국제방송교류재단 3: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4: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5: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6: 농업기술실용화재단 7: 독립기념관 8: 시청자미디어재단 9: 아시아문화원 10: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11: 영화진흥위원회 12: 우체국금융개발원 13: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4: 한국고용정보원 15: 한국과학창의재단 16: 한국광해관리공단 17: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8: 한국기상산업기술원 1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 한국디자인진흥원 2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2: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3: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5: 한국신림복지진흥원 2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7: 한국세라믹기술원 28: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9: 한국수자원관리공단 30: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31: 한국언론진흥재단 32: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33: 한국우편사업진흥원 34: 한국임업진흥원 35: 한국재정정보원 36: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37: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38: 한국콘텐츠진흥원 39: 한국특허전략개발원 40: 한국해양수산연구원 4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2: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회적 가치 구현 실적이 높은 준정부기관으로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한국임업진흥원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우체국금융개발원 순임

◦ 일자리 창출 성과 관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순임

◦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성과 관련,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순임

◦ 안전 및 환경 성과 관련, 우체국금융개발원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순임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성과 관련, 한국수자원관리공단 >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순임

◦ 윤리경영 성과 관련,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우체국금융개발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가장 높음

1.3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체크리스트 분석

1.3.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평가등급별 세부지표 체크리스트 분석

○ 체크리스트 등급을 세 등급 (● 우수·양호 ▲ 보통 × 미흡)으로 분류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구현 성과를 평가

◦ 평균보다 클 경우 우수·양호, 평균 정도를 보통, 평균 미만을 미흡으로 평가

diagonostic Index

최종 평가등급	공기업	사회적 가치 구현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 와 사회통합	안전 및 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우수 (A)	인천국제공항공사	◎	◎	◎	▲	×	◎
	인천항만공사	◎	◎	◎	▲	▲	◎
	한국남부발전(주)	◎	◎	◎	▲	◎	◎
	한국수자원공사	◎	▲	◎	×	▲	×
	한국중부발전(주)	◎	◎	▲	◎	◎	◎
	한국토지주택공사	◎	◎	×	▲	◎	◎
미흡 (D)	그랜드코리아레저(주)	×	×	▲	◎	◎	▲
	한국마사회	×	◎	×	×	×	▲
	한국전력기술(주)	▲	×	▲	▲	▲	◎
	한전KPS(주)	×	×	▲	◎	◎	▲
아주미흡 (E)	대한석탄공사	×	×	×	×	×	▲

○ 공기업의 경우 사회적 가치 구현 성과가 최종 평가등급 판단에 진단적인 지표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세부적인 지표를 분석할 경우, '일자리 창출'과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가 진단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diagonostic Index

최종 평가등급	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	사회적 가치 구현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 와 사회통합	안전 및 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우수 (A)	국민건강보험공단	◎	◎	▲	×	◎	◎
	기술보증기금	◎	◎	▲	×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	×	×	▲	×
	사회보장정보원	◎	◎	▲	×	▲	◎
	신용보증기금	◎	◎	▲	◎	×	▲
	한국무역보험공사	◎	◎	◎	▲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	◎	◎
	한국에너지공단	◎	◎	◎	◎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	▲	◎	◎
미흡 (D)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	▲	◎	×
	우체국물류지원단	×	◎	▲	▲	◎	×
	축산물품질평가원	×	×	▲	◎	◎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	▲	◎	◎	×
	한국장학재단	×	×	▲	◎	×	×
	한국환경공단	×	×	×	▲	×	×

○ 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의 경우 사회적 가치 구현 성과가 최종 평가등급 판단에 진단적인 지표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세부적인 지표를 분석할 경우, ‘일자리 창출’ 지표가 진단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최종 평가등급	강소형	사회적 가치 구현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 및 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우수 (A)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	◎	×	◎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	▲	◎	▲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	◎	◎	▲	◎
	한국우편사업진흥원	◎	◎	×	◎	◎	▲
	한국임업진흥원	◎	◎	◎	◎	◎	◎
미흡 (D)	아시아문화원	×	×	◎	×	×	×
	영화진흥위원회	×	×	◎	×	×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	×	▲	×	×
	한국세라믹기술원	×	◎	×	▲	×	×
	한국재정정보원	×	×	×	×	×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	×	×	◎	◎

○ 강소형의 경우 사회적 가치 구현 성과가 최종 평가 등급 판단에 진단적인 지표로 작용한다고 판단할 수 없음

1.3.2 사회적 가치 구현 우수기관과 최종 평가등급 간의 체크리스트 분석

○ 사회적 가치 구현 우수기관의 최종 평가등급을 보면, 대부분 A등급과 B등급을 받음

사회가치구현 우수기업의 최종 평가등급

사회가치구현	기업명	최종평가등급	사회가치구현	기업명	최종평가등급
공기업	인천국제공항공사	A	위탁집행형	국민건강보험공단	A
	한국가스공사	B		한국관광공사	C
	한국공항공사	B		한국국토정보공사	B
	한국도로공사	B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B
	한국수자원공사	A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B
	한국전력공사	B		한국산업기술진흥원	A
	한국철도공사	B		한국에너지공단	A
	한국토지주택공사	A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
	인천항만공사	A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A
	주택도시보증공사	B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B
	한국감정원	B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B	
	한국남동발전(주)	B	농업기술실용화재단	A	
	한국남부발전(주)	A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B	
	한국동서발전(주)	B	우체국금융개발원	B	
	한국수력원자력(주)	B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B	
	한국중부발전	A	한국교육학술정보원	B	
	국민연금공단	B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A	
	기술보증기금	A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B	
	한국무역보험공사	A	한국언론진흥재단	C	
	한국자산관리공사	B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B	
			한국우편사업진흥원	A	
			한국임업진흥원	A	
			한국환경산업기술원	B	

◦ 위탁집행형과 강소형의 경우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경우에만 C등

급을 받음

○ 사회적 가치 구현 미흡기관의 최종 평가등급을 보면, 대부분 C 이하 등급을 받음

◦ 기금관리형의 경우 모두 B 등급을 받아 진단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위탁 집행형의 경우 도로교통공단, 강소형의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B등급을 받음

◦ 기금관리형의 공무원연금공단의 경우 사회적 가치 구현 평가가 매우 미흡하나 최종평가는 '우수'에 해당되는 B등급을 받음

1.4 공공기관의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내용 분석

○ 계량지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상생을 위한 실적을 평가한 것으로 중소기업생산품 우선구매, 기술개발생산품 우선구매, 사회적기업·협동조합생산품 우선구매,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우선구매, 여성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등의 지표가 있음

1.4.1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우수 사례

○ 한국토지주택공사

◦ 통영 폐조선소 재생사업: 조선경기 침체로 활력을 잃은 통영 지역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통영시와 공동으로 총 사업비 5,400억 원에 달하는 경제 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회복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노력. 이를 통해 지역경제 재편 예상, 1만여 명 일자리 창출 기대

◦ 진주 옥봉 새뜰마을 사업: 사업을 진행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역주민 의사를 반영하고, 지역의 사회적 협동조합을 활용하여 주거환경개선을 추진. 아이디어 구상단계부터 참여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의 니즈를 반영한 지역상생 사회공헌사업 시행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

◦ 건설업계와의 동반성장: 설계금액의 100%로 기초금액을 산정하고 소규모 공사의 노무비, 기계 경비 등을 할증하여 적정 공사비를 지급함으로써 업계의 동반성장 과 건설근로자 소득향상을 도모

-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공동기술개발, 신기술 구매지원 및 기술보호 등 동반성장 확산에 많은 노력

- LH희망상가: 사회적 경제기업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간을 제공하고, 주거복지 플랫폼인 'LH친구' 론칭으로 사회적 경제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였으며, 공사 및 용역 관련 기준을 개정하는 등 사회적 경제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

○ 한국국토정보공사

- 이전 지역 탐색 활동: 이전지역인 전북에 대한 환경 분석을 바탕으로 상생발전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드론사업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민간협업, 축제를 추진하였으며, 혁신도시 클러스터 R&D 센터 신축 및 전북 산학협력 연구과제 공모, 전북 소재 중소기업 및 공간정보 협력기업 자금지원 및 이자 감면을 위한 상생희망펀드를 조성하는 등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

- 지역문제 해결 위한 협력: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주시 스마트시티 구축, 전북 스마트팜 공동연구, 군산시 상생협력 MoU체결 등을 추진한 결과, 전주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제공, 농촌사고 데이터 및 공간분석, 지역상품 구매 및 금융지원 등의 실적

- 사회적 약자기업 진입 문턱 낮추기: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기준을 상향 조정(3천만원→5천만원) 하고, 지체상금율(1/2수준)을 하향하였으며,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무비 관련 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을 적기에 지급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

- 민간기업/중소기업 성장 지원: 민간기업에서 사업화가 가능한 공사 특히 기술을 이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해외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도전기업, 성장기업, 성숙기업 등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판로지원. 동반성장 희망펀드 300억원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의 자금부족 및 판로부재에 따른 고충 해소를 위해 기술개발 자금과 판로를 동시에 해결하는 민관공동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중소기업과 2.7억원 협약을 체결하는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

- 사회적경제 지원: 지역 마을기업 및 사회적 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며 3개 기관 공공구매 클러스터 구축으로 구매자와 공급자가 맞춤형 구매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사회적 경제기업의 자금 확보 및 판로 구축을 지원.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의 물품구매 장려로 전년 대비 구매율이 35.5% 증가하고, 자영업 운영 컨설팅 제공과 영업활동 보장으로 창업자립 기반을 마련 할 수 있도록 본사 1층에 '카페120'을 설치, 인테리어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미래 사회적 경제기업인 육성을 위해서도 노력

1.4.2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미흡 사례

○ 한국디자인진흥원

- 명확한 추진전략 수립, 체계적 관리, 중장기적 계획 수립이 필요: 불공정거래 관행개선 및 디자인의 가치를 인정받는 공정한 디자인산업 거래환경을 조성 노력했지만 협력사 등과의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과제를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분야별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노력이 요구됨
- 사회적 경제 조직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구매 확대 방안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것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지역 니즈 반영한 프로그램 재설계 필요: 찾아가는 소방기술 안전교육 및 사회 공헌 활동을 수행한 점은 주요 성과이나 기관의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간주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취약점으로 판단되며, 과제발굴의 단계에서 부터 지역사회의 니즈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프로그램을 설계할 필요
- 기관 보유 자원 활용 및 유관 기관 연계 노력 부족: 본연의 가치(기관의 고유업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정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나, 기관의 고유업무 외에 기관보유 자원을 활용하거나 다른 유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기여활동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
- 활동 위주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임팩트 고려: 지역사회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추진된 내용의 성과가 지나치게 활동(activity)을 중심으로만 제시된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기관의 활동이 가져 온 지역사회의 변화와 영향(impact)이라는 관점에서 성과를 보다 정량화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해당 활동의 성과가 지나치게 활동(activity)을 중심으로만 제시된 점 개선 필요
- 체계성, 지속가능성, 확산성 부족: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이 다양하나 통일성이나 체계성이 부족하고, 지속가능성이나 확산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음

○ 한국재정정보원

- 기관 고유업무 관련 사업 필요: 기관의 고유업무 외에 기관보유 자원을 활용하

거나 다른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기여활동이 있었던 점은 긍정적으로 파악되나 본연의 가치(기관의 고유업무)와 관련한 사업들은 보다 강화될 필요

◦ 활동 위주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임팩트 고려: 지역사회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추진된 내용의 성과가 지나치게 활동(activity)을 중심으로만 제시된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기관의 활동이 가져 온 사회의 변화와 영향(impact)이라는 관점에서 성과를 보다 정량화하여 제시할 필요

◦ 단순계획 넘어서 종합계획 수립: 단순한 사회적 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국한되는 내용이 아닌 지역사회 기여라는 관점에서의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필요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조직의 역량과 이해관계자의 니즈를 반영하고, 기실행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역사회 참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 전략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음

2.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가치 지표

-SVI, 신용보증기금의 사회적가치 평가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2.1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가치 개요

○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이후 투자, 융자, 보증 등 적극적인 자금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일반금융기관의 공급은 평가시스템 부재 등을 이유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안정적인 자금공급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원활한 자금마련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평가시스템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

○ 사회적가치 측정 지표 관련 동향

◦ 사회적가치의 측정은 성과 측정의 목적과 활용방법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통일되거나 일반적인 방법은 존재하지 않음

◦ 실무적으로 사회성과 투자수익률(SROI), 사회영향투자보고서 및 투자기준(IRIS), 글로벌 사회성과투자 평가시스템(GIIRS), 균형성과지표(BSC)를 이용한 성과측정 도구 등이 연구되고 있음

◦ 지표라는 것은 1)가능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지표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2) 현실적으로 측정 가능해야 하고, 3) 운영 가능한 수준으로 구성되어야 함

◦ 또한, 특정 지표의 결과가 큰 영향을 발휘하지 않도록 하고, 특정 사회적기업 유형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구성하는 것이 중요함

◦ 본고에서는 대표적인 사회적 가치 측정 지표인 ‘사회적가치지표’와 ‘신용보증기금 평가시스템’을 분석해보고, 해당 지표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의 경우에 적용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함

2.2 사회적 가치 지표 (SVI, Social Value Index)

2.2.1 사회적 가치 지표의 정의와 내용

○ 사회적 가치 지표(SVI, Social Value Index)¹⁾는 각종 지원사업 선정과정에서 개별 기업의 사회가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지표로서, 사회적경제 조직이 창출하는 현재의 사회가치 수준을 파악하고 및 사회적 기여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여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 필요함

○ 사회적기업의 정의¹⁾를 요약하여, 공통요소를 추출하여 ‘혁신,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의 핵심 키워드들로 구성되었다. 현장 활용도 및 실행력 강화를 위해 최소한의 간소화된 지표로(14개 항목) 구성하여, 3가지 관점별로 유연하게 활용이 가능토록 구성된 것이 특징임

①관점 1. 사회적 성과(social value) : 총 9개 항목
 대내적으로는 사회적 미션의 관리, 근로자 고용의 질 증진, 기업 내부 운영의 민주성 제고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사업 활동을 통해서 이윤을 사회적으로 활용하는지,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지 등이 포함

②관점 2. 경제적 가치(economic value) : 총 4개 항목
 대내적으로는 노동생산성 등 얼마나 조직의 경제적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지 등이 포함되며, 대외적으로는 매출액, 영업 이익 등 얼마나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지 등이 포함

③관점 3. 혁신 성과(innovation) : 총 1개 항목
 기업운영과정의 혁신, 제품 자체나 운영방식 등 사업의 전영역에서 걸쳐서 발생하는 앞선 사회적 성과, 즉 혁신성을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 및 결과를 의미

2.2.2 2019년 보완된 사회적 가치 지표 특징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진흥원)이 올 초 발표한 ‘2019년 사회적 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에 등장하는 지표가 이전 지표와의 다른 점은 조직 미션 점수가 3점 줄고 사업 활동 점수가 3점 늘었다는 점으로 정부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을 선정하는데 쓰일 매뉴얼이라는 점을 신경 써서 보완

◦ 지표는 사회적기업이 지향하는 가치기준을 속성으로 했는데, 계량 지표는 평가 등급을 5단계(S-100%, A-80%, B-60%, C-40%, D-20%)로 구분하고, 계량 지표 중 ‘유(있음)/무(없음)’ 방식은 100%(유)와 20%(무) 2단계로 구분해 산정

◦ 비계량 지표는 이를 합산한 종합 점수는 탁월(90점 이상), 우수(80점 이상 90점

1) 사회적기업은 혁신(innovation)적인 수단이나 방식을 통해 사회적 가치(social value)와 경제적 가치(economic value)를 동시에 창출하는 조직(Dacin et al.(2010)).

미만), 보통(70점 이상 80점 미만), 미흡(70점 미만) 4단계 등급으로 산출

관점	범주	영역	측정지표	배점	측정방법 / 기준
사회적 성과 (60)	조직 미션 (10)	사회적 미션	1. 사회적 가치 추구 여부	5	계량 / 유무확인
			2. 사회적 성과 관리체계 구축	5	계량 / 5등급
	사업 활동 (30)	주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3.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10	비계량 / 5등급
			4.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력 수준	5	계량 / 5등급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5.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5	계량 / 5등급
	조직 운영 (20)	사회목적 재투자	6. 이윤의 사회적 환원 노력도	10	비계량 / 5등급
			7. 참여적 의사결정 비율	5	계량 / 5등급
		운영의 민주성	8. 근로자 임금수준	10	계량 / 5등급
			근로자 지향성	9. 근로자 역량강화 노력	5
경제적 성과 (30)	재정 성과 (30)	고용창출 및 재정성과	10. 고용성과	10	계량 / 5등급
			11. 매출성과	10	계량 / 5등급
		노동성과	12. 영업성과	5	계량 / 5등급
			13. 노동생산성	5	계량 / 5등급
혁신 성과 (10)	기업 혁신 (10)	혁신성	14. 기업 운영 및 제품의 혁신성	10	비계량 / 5등급
계			14개 지표	100	-

○ 14개 지표 중 사회적 성과에 해당하는 9개 지표에 대한 세부 내용

① 사회적 가치 추구 여부(계량/5점): 기업이 정관이나 비전 선언문 등에 명시적으로 사회적 가치 추구 여부를 선언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측정

② 사회적 성과 관리체계 구축(계량/5점): 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관리하는 담당인력이 있는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지, 작성한 성과보고서를 평가해줄 평가 위원회가 있는지, 평가 결과를 직원들과 공유하는지 등을 측정

③ 사업 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비계량/10점): 취약계층 고용 등 기업이 지향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를 사업 활동을 통해 실제로 지향하고 있는지를 측정

④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 수준(계량/5점):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과 어떤 협력 활동을 얼마나 하는지 확인

⑤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계량/5점):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 등 지역사회의 기관과 어떤 협력 활동을 얼마나 하는지 확인

⑥ 사회적 환원 노력도(비계량/10점): 지역사회 재투자 내용, 봉사활동, 재능기부 등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을 했는지 금전적, 비금전적으로 구분해 확인

⑦ 참여적 의사결정 비율(계량/5점):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서 근로자가 참여하는 비율이 얼마나 높은지를 측정

⑧근로자 임금 수준(계량/10점): 총 유급근로자의 평균 시급을 확인

⑨근로자 역량강화 노력(계량/5점): 근로자가 자기개발을 통해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지 보는 지표로, 교육 내용, 수혜자수, 교육 시간, 1인당 교육 훈련 시간 및 합계 금액 등을 측정

2.3 신용보증기금 평가시스템 : 유관 사회적 가치 지표

2.3.1 신용보증기금 평가시스템 개요

○ 현재에도 신용보증기금, IBK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소상공인진흥공단, 제주도 개발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LG전자·화학, SK Sunny, 서울시, 부산 사회적경제 지원기금 등에 유관 사회적가치지표가 적극 활용되고 있음

○ 그 중 신용보증기금이 개발한 사회적가치 평가시스템은 사회적가치 지표(SVI)를 효율적으로 보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음

○ SVI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현재 평가시스템은 SVI와 거의 유사하나, 의사결정과 대표자의 역량을 특화함

○ 무엇보다, 기존 Top-Down 방식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에서, 중개기관의 참여를 통해 사회적금융 생태계를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을 고민했으며,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한 지속 과제로 여기고 있음

○ 신용보증기금 평가시스템이 인지한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에 관한 문제점과 보완책은 다음과 같음

- 사회적경제기업에 재무제표를 통해 신용등급을 책정할 경우 B등급과 CCC등급에 70% 이상 포진하게 됨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 부합성과 금융지원 타당성을 통합한 새로운 평가등급을 도입하기로 결정

-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의 부합성 70%, 금융지원을 위한 타당성 30%를 부여하였으며, 협동조합의 경우 사업체로서 조직을 갖추고 실질적인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곳이 저어서 금융지원 타당성을 40%로 책정

- 평가 시스템에 따른 지원 이후의 성과측정에 대한 요구도 꾸준히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부분은 현재 개발 중

- 등급에 따른 금리 우대율 값을 현재는 산출하기 어렵지만, 1~2년간 DB가 누적되면 이를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집단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향후 도입할 예정

○ 평가시스템은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재 성격으로 오픈된 홈페이지(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내 개설)를 사용하며, 향후 누적된 데이터가 사회적금융 활성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동지원 체계 마련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3.2 신용보증기금 평가시스템 관련 추가 논의점

○ 평가시스템 구축은 의미가 있으나, 향후 다양한 활용 및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시스템을 완성시키기 위한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음

① 평가등급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중개기관에 가중치를 위임한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된다. 평가등급 산출을 위한 밴드를 제공하는 등 보완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정성평가에 대한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으므로 현장실사를 강제함으로써 객관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② 공공입찰에 신용평가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평가등급이 첨부되거나 반드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③ 해당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의사가 있으나, 시스템 이용에 따른 비용 및 인력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

④ 기존 중개기관들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자금중개의 경험과 노하우, 기준이 있는 만큼 중개기관별로 시스템을 커스터마이징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

⑤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가치지표 (SVI: Social Value Index)를 보완하는 지표인 만큼, 추가적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을 위한 회계기준과 시스템 마련,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감사시스템과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됨

2.4 사회적 가치 지표 (SVI)의 특징과 현실적 한계에 대한 추가 논의

○ SVI의 특징은 ‘범용성’과 ‘사회적기업 특성 반영’으로 요약될 수 있는 바, 각각의 특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우리 사회적 경제 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2.4.1 범용성

○ SVI는 그 활용 목적 및 사업특성에 따라 관점별로 유연하게 적용 가능하도록

구성했다는 것이 특징임

○ 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별도로 평가하는 경우, 경제적 가치를 제외한 ‘사회적 가치, 혁신 성과’ 부분만을 측정하여 활용 가능함

○ 고용노동부는 작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1, 3, 9, 14번 지표만 활용했으며,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는 사회적성과 관점의 9개 지표만 활용함

◦ 예를 들어 클라우드펀딩 대회 참여기업 선정 시에는 사회적 가치(80%)와 혁신 가치(20%) 두 가지 관점의 지표를 활용하고, 각종 우수 사회적기업군 선정 시에는 사회적 가치(60%), 경제적 가치(30%), 혁신가치(10%) 세 가지 관점의 지표 활용

○ 그러나 개별 사업평가 일부로 활용하기 위한 사회적가치지표는 정교하게 설계하기 어렵고, 쉽게 합의할 수 있는 설계안이 도출되기가 쉽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기업 등록을 받을 경우 사회적가치와 관련한 애매모호함이 가장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사회적가치지표 일부 지표만을 떼어내서 활용하는 현재의 방식보다는 사회적가치지표를 정교화 한 뒤, 모듈 전체를 활용하는 안이 적절할 것으로 여겨지며 사업별로 중요도에 따라 비중을 달리해 평가하는 방법도 고려될 필요가 있음

○ 또한, 범용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각 지표가 동등한 객관성을 확보되어야 하는데, 현재 지표의 몇몇 항목은 이와는 거리가 있음

◦ 예를 들어, 지표5(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를 측정하는 MOU, 보도자료, 활동사진 등의 증빙은 큰 노력이 없이도 늘릴 수 있으며, 지표6(사회적 환원 노력도)를 측정하는 기준 중 ‘조직 내부운동을 위한 수익의 활용(4점)’, ‘조직 외부활동을 위한 수익의 활용(4점)’은 재무상태가 건전하거나 규모가 있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더 많이 시행할 수 있음

◦ 또한 ‘기타 조직의 역량 활용(2점)’의 경우 지표5와 마찬가지로 문서 작성 역량에 영향을 크게 받음

◦ 지표7(참여적 의사결정 비율)의 경우는 회의록으로 증빙하는데, 회의록의 경우 사후 수정 또는 사후 작성의 문제가 있으며, 협동조합은 정관대로 운영했다면 참여적 의사결정 비율에서 S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법인격의 특성이 측정에 반영되어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2.4.2 사회적기업 특성 반영

○ 사회적기업 특성 반영은 사회적기업 특성상 푹 떨어지는 수치로 계산하기 어

려운 요소를 비계량 지표로 계산한다는 것으로 전문 위원들이 평가해 점수를 확정함

○ 하지만, 사회적 가치지표 자체가 기존의 인증기업에 비해 1인 기업(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기업), 협동조합, 운영되지 못하는 기업 등에 차별적인 지표일 수 있음

○ 물론, 원칙적으로는 이와 같은 모든 사회적기업의 특성을 감안한 지표를 만들 경우 지표의 간결성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잃거나 실제 일선의 적용에 있어 활용이 불가능한 수준의 혼란이 있을 수 있기에, 하나의 지표를 유지하되, 가점조정, 소수의 항목변경, 배점조정 등의 일부 조정을 통해서 비교 가능한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 부분이 지원사업에 활용될 경우 개별 특성 그룹별로 지원사업을 할당(예를 들면, 3년 이하, 7년 이하, 7년 이상 등)하는 방식으로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2.4.3 기업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 가치 지표 보완에 대한 제언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기업의 경우 사회적가치 구현에 있어 다른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기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여겨질 수 있음

○ 다만, 1인 기업의 경우 일자리와 관련한 사회적 가치 발현에 활용될 역량을 다른 기업 운영활동에 활용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일정 정도의 고려가 필요함

○ SVI 3번 지표인 주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에 가점을 포함해 이러한 사회적가치를 일정정도 가점 형식으로 확인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임

◦ 이 부분은 현재 구체화된 정성평가 세부내용이 일자리 창출 중심의 평가에 집중되고 있어 보다 다원적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측정할 수 없다는 문제와도 연결됨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SVI 지표들이 사회적기업에 최적화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에 적용하기 위해 수정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음

○ 이를 감안해 범주를 줄여 크게 재조직화고, 각각의 지표를 측정하는 세부 체크리스트를 20개-30개 수준으로 정교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협동조합 등 개별 사회적경제조직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나의 틀 내에서 일정 범위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음

◦ 협동조합의 경우 SVI의 8번, 9번인 근로자 지향성을 조합원 지향성으로 일부 변경시켜 사회적가치지표를 운영할 수 있을 것임

○ SVI 지표를 사회적기업 외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타 사회적경제조직을 포괄하는 지표로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측정지표 등급 기준에 차등을 둘 필요가 있음

○ 전반적으로, SVI지표가 지나치게 일반화 된 지표라는 비판도 존재

○ 일반적으로 사회적기업을 크게 12개의 대분류와 38개 소분류로 나누고 있으며, 또한 같은 분류의 기업이라 하더라도 회사 규모, 성장단계 등에 따라 고려해야 될 부분이 정말 다양해지는데, 이러한 기업의 상황을 현재의 14가지 지표로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함

○ 현 SVI에서는 사회적성과-사업활동에 해당하는 3~6번 지표가 해당하는데, 기업별 소셜 미션에 따른 사업성과를 측정하는 항목으로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이 등록 시 정관상에서 제시한 소셜 미션에 따른 사업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신설이 필요성이 제기됨

○ 뿐만 아니라, 기업 상황이 녹록치 않은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지 않고, 기업 상황을 정확히 반영 할 수도 없는 사회적 가치지표(SVI) 측정 사업이 기업에게는 그저 행정적인 짐만 주는 것이라는 비판도 시사하는 바가 큼

○ 참여하는 기업이 받는 혜택에 비해 작성 및 증빙이 필요한 서류와 내용은 많고, 측정하는 지표는 현실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니 기업가들 입장에서는 참여할 유인이 다소 부족한 것임

○ 이를 보완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등록 사회적기업들이나 이를 실제로 취합하는 주체의 행정적 부담을 덜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수집 및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일정기간(1년 혹은 2년) 동안 사회적기업 관련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공통적·반복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는 지표를 되도록 한 번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 역시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음

2.5 결론 : 보다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회적 가치 평가를 위하여

○ 사회적 가치지표(SVI) 측정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 성과를 정량화된 정보로 파악하고 모형화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며, 다양한 지원사업 선정 시 사회적 가치 측정 결과의 직접적인 활용 또는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원 사업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도와 필요성이 커지

고 있음

○ 물론 기본적인 DB의 부재와 기존 평가의 부족함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논의들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것이 현실임

○ 특히 사회적기업 등록제 개편과 맞물려 지원사업 역시 변화하게 된 현 시점에,

- 효율적으로 정보를 취합·관리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 여기에 사회적가치지표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 사회적가치측정치표의 세부 내용은 어떻게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 정부지원사업에 사회적가치 측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을 해야 하는가?
- 행정적으로 효율적으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하는가?

○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기를 기대 받는 사회적경제기업과 다양한 영역에서의 사회적 가치 측정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만큼, 좋은 일과 선의가 수치와 증빙이란 형태로 구현될 필요성도 커짐

○ 여러 현실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작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음

○ 최소한의 합의를 통한 기준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이 ‘좋은 일’이 주관성에서 벗어나 객관성을 얻고 설득력을 갖게끔 만드는 과정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회적 가치 지표 개발과 운영은 필수적임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담긴 가치 개념을 기준으로,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 7대 원칙 등 관련법령과 각종 학계 자료를 참고하는 동시에, 기업 혁신 점수를 더 높여야한다는 소셜 벤처 업계의 의견 역시 현실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미래 지향적인 지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보다 근본적으로 “사업 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이 무엇인지를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가치기본법은 통과 되지 않았으나, 현실은 사회가치 기본법안의 13개 조항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는 동시에, UN에서 제시한 17개 SDGs에 맞추어 움직이고 있음

○ 이러한 현실에서, 사회적 가치 평가 지표에 대한 논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맞는 활동들인지를 체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체크리스트를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며,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이 스스로의 사회적 가치를 명확화하고, 또 이를 기반으로 좀 더 객관적으로 사회적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록양식 역시 개발될 필요가 있음

6. 사회적경제기본법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 김대훈 아이쿱생협연합회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관련 현황 및 과제

1. 제20대 국회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법률안 발의 현황

1)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의안번호 2001614 / 제안일자 : 2016-08-17)

- 발의 의원 : 윤호중 의원 등 27명

주요 내용
<p>가. 이 법은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국가공동체발전에 대한 사회적경제의 기여를 인정하고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에 따른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사회적경제 조직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시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효과적인 정책추진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p> <p>나.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으로 ①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목적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가치 추구 ②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 ③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운영구조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촉진 ④ 발생한 이익의 재투자 및 조직에 대한 기여를 중심으로 한 배당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우선적인 사용 ⑤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의 촉진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함(안 제2조).</p> <p>다. “사회적경제”를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등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이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정의하고, “사회적가치”를 사회적경제활동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적·환경적·문화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 공익적 성과로서 정의함(안 제3조제1호 및 제2호).</p> <p>라. “사회적경제기업”을 제3조2호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조직으로 정의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을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중간지원조직, 사회적경제연대조직에 해당하는 기업? 법인? 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형태의 조직 또는 사업범위를 수행하는 자로 대통령령에 따라 정한 기업·법인·단체로 정의함(안 제3조제3호 및 제6호).</p> <p>마. “사회적금융”을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회적경제조직과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에 투자·융자·보증 등을 통해 자금의 지속가능한 선순</p>

- 환을 추구하는 금융활동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7호).
-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조직을 확보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은 공공서비스의 계획수립에서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정의함(안 제4조제1항 및 제6항).
- 사. 사회적경제 개발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르도록 하고, 이 법 발효 후 관련 개별법의 제·개정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함(안 제7조).
- 아. 정부는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개발과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공동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문별 발전계획안과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도 지역별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과 시·도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 추진성과를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과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과 시·도 지역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9조, 제10조, 제12조).
-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기반 확충과 시·도지역의 사회적경제 발전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책, 예산, 조달, 금융, 세제, 기금 등의 지역발전 시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정함(안 제13조).
- 카. 국가의 사회적경제 발전과 관련한 주요정책 및 기본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조화로운 정책 추진을 총괄 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5조).
- 타.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민·관협치에 의한 공동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과 민간위원 중에서 추천된 민간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전체위원 중 민간위원의 수를 2분의 1 이상으로 하며 위원회 소속으로 상임위원,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사무처 등을 설치하고 기획재정부가 위원회의 총괄부서로서 정책조정기능과 예산확보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안 제16조, 제17조).
- 파. 시·도지사는 관할지역의 특성과 자원에 맞는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기타 중요시책을 심의·조정하고 지역차원의 정책수립을 위하여 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지역위원회 구성의 원칙과 운영은 중앙의 위원회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고 그 밖에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기로 함(안 제18조).
- 하. 사회적경제조직은 지역·업종·부문·분야·전국 단위 협의체·연합체 등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 거. 정부는 부처간 사회적경제 정책지원사업을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으로 한국사회적경제개발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사업수행에서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을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을 규정함(안 제23조).
- 너.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사회적경제 발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권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특화 중간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시·도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자체차원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상호 협력하여 상생 효과를 내도록 함(안 제24조, 제25조).
- 더. 정부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을 중앙과 지방에 별도로 조성하도록 하고 기금과 운영분리원칙에 따라 기금조성 및 운영감독은 기획재정부가 총괄하고, 운영은 사회적금융기관등을 지정하여 수행하도록 함(안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 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발전에 필요한 민간차원의 사회적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공제기금, 상호금융, 공동체기금 등 사회적경제조직이 조성·운영하는 민간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도록 함(안 제32조).
- 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총 구매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도록 함(안 제33조).
- 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우선구매, 사회적성과 평가지표 개발, 시설비등의 지원, 조세감면 및 재정지원, 교육·훈련 등 지원, 민간참여 촉진 및 민간자원 연계등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근거를 제시하여 개별법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 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조합조직간의 협력을 포함하여 사회적경제조직간의 공동사업·사업협력, 협의체 구축 및 조직통합, 공유자산 형성과 공동판매망 구축 등 사회적경제조직간의 협력체계를 촉진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과 세제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 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실업문제 해결과 사회혁신역량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창업활동 촉진과 사회적경제에의 참여를 증진시키기로 함(안 제41조).

2)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의안번호 2002616 / 제안일자 2016-10-11)

- 발의 의원 : 유승민 의원 등 15명

주요 내용

- 가. 이 법은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통합생태계와 통합적인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경영의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으로써 양극화 해소, 건강한 공동체의 조성 및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구성원 상호간 협력과 연대, 적극적인 자기혁신과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복지의 증진,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의 발전, 기타 공익에 대한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사회적경제”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 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3호).
- 라. 국가는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경제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4조).
- 마. 사회적경제의 발전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르도록 함(안 제5조).
- 바.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 사.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사회적경제의 발전과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 아. 시·도지사는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
- 자.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 차. 시·도지사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사회적경제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2조).
- 카. 사회적경제조직은 전국·지역단위, 업종·분야단위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타.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적경제원을 두도록 함(안 제15조).
- 파.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역중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권역별 통합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 하. 정부는 사회적경제 금융기반 조성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7조).
- 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안 제21조).

- 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 발전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도록 함(안 제24조).
- 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 간 사업연합 및 협의체 구축을 촉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및 제28조).

3)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의안번호 2019005 / 제안일자 2019-03-06)

- 발의 의원 : 강병원 의원 등 10인

주요 내용
<p>가. 이 법은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 방안 수립을 통해 양극화와 빈부격차 등 우리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통합적·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p> <p>나.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으로 ①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 이익과 사회적가치 추구 ② 자율적이고 독립적이며 투명한 운영 ③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운영구조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촉진 ④ 발생한 이익의 사용과 배분에 있어 구성원 전체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목적 우선 실현 ⑤ 지역공동체 개발과 지역순환경제 발전을 위해 상호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함(안 제2조).</p> <p>다. “사회적경제”를 양극화 해소, 지역경제 선순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통합과 공동의 이익 추구를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정의하고, “사회적가치”를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의 고용기회 증진, 지역경제의 활성화,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윤리적 생산과 유통, 근로·생활환경의 안전,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민주적 의사결정과 국민참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1호 및 제2호).</p> <p>라.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조직 중 제3조제3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조직을 의미하며,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조직 중 대통령령과 관계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등록을 필한 기업·법인·단체로 정의함(안 제3조제3호 및 제4호).</p> <p>마. “사회적금융”을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회적경제조직과 사회적경제 관련사업에 투자·융자·보증 등을 통해 자금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추구하는 금융활동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7호)</p> <p>바.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신설하여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전략 및 전망 수립을 담당토록 하며, 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회적경제</p>

- 발전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11조 및 제13조).
- 사.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관련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적경제원”을 설립하여 사회적경제 현황에 대한 조사연구, 관련 데이터 수집·분석 및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개발과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 등 범국가적 사회적경제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며, 해당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해 사회적경제조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함(안 제19조제1항 및 제4항 및 제5항).
-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의 금융기반 조성을 위해 사회적가치를 고려한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가치 측정·평가 도구 개발과 공시제도 등의 도입을 지원하며,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민간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투자 및 금융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금융제도를 정비하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안 제22조제1항 및 제2항).
-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민간 사회적금융기관 등에 출자할 수 있고, 사회적경제조직 및 민간 사회적금융기관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조합 등을 결성·설정·설립할 수 있음(안 제24조제1항 및 제2항).
-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물품이나 용역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사회적경제조직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25조).
- 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의 활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법률에 따라 재정, 금융,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26조제1항 및 제2항).
- 타. 국가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을 사회적경제의 날로 지정하며, 사회적경제의 날로부터 1주간을 사회적경제 주간으로 지정함(안 제31조).
- 파. 사회적경제조직은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정관, 규약 등 사회적경제조직 운영과 관련된 규정, 총회 및 이사회 등 주요 의사결정 기구의 회의록 또는 의사록 및 사업결산 보고서를 공시하여야 함(안 제33조).

4)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내용 비교2)

구 분	강병원의원안 (2019.3.6. 발의)	윤호중의원안 (2016.8.17. 발의)	유승민의원안 (2016.10.11. 발의)
목 적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통합적·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민·관 협치를 기반으로 한 효과적인 정책추진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양극화 해소, 건강한 공동체의 조성 및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
사회적 경제 정의	양극화 해소, 지역경제 선순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통합과 공동의 이익 추구를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	사회통합등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이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	구성원 상호간의 협력과 연대, 적극적인 자기혁신과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
사회적 가치 정의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의 고용기회 증진,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가치	사회적경제활동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적·환경적·문화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 공익적 성과로서, 인권의 신장, 근로·생활환경 유지와 국민안전 확보, 평등한 고용기회의 확대 등을 포함하는 가치	-
사회적경제 기업의 범위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농어업법인단체·소비자생활협동조합·농협·수협·산림조합·업연초생산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중소기업협동조합 등 13개 조직		
	우수문화사업자	예비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사회복지법인·광역/지역자활센터
기본계획 수립	기획재정부장관은 시·도 지역별 발전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상향식 수립방식)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문별 발전계획안과 시·도 지역별 발전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상향식 수립방식)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중앙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이와 연계된 지역계획을 수립 (하향식 수립방식)
사회적경제 위원회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		

구 분	강병원의원안 (2019.3.6. 발의)	윤호중의원안 (2016.8.17. 발의)	유승민의원안 (2016.10.11. 발의)
중앙정부 기금 설치	-	사회적경제 발전 기금 설치 -재원: 정부·지자체 출연금 등 -용도: 사회적 경제조직 설립·운영 및 금융 지원, 사 회적 경제 자본시장 조성 등	
사회적경제 원 (개발원)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관련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 하여 한국사회적경제원(개발원)을 설립 경제원은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을 포괄 승계	고용노동부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의 공동출연 을 받아 설립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중앙자활센터를 통합하여 경제원 설립
중간 지원 기관	기획재정부장관은 권역별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특 화 중간지원기관을 지정하고, 시·도지사는 시·도지원 센터를 설치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민간사회적금융기 관을 지정·운영 가능 민간사회적경제 지원 중개 기관 지정·운영 가능, 권역별 지원센터와 시도지 원센터는 공동지정 가능		기획재정부장관은 권역별 통합지원센터 설치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공공기관 우선 구매 촉진,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 및 유·무상 대부· 사용·수익 가능 공공기관 우선구매 범위 를 제시하고 있지 않음	공공기관 우선구매시 5% 범위에서 사회적기업 및 사 회적협동조합 의 제품을 구 매하도록 함	공공기관 우선구매시 5% 범위 내에서 기재부장관이 정하는 비율로 사회적기 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함

2) 기획재정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2019.7, “사회적경제기본법안 검토보고 (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19005호)”

2. 제20대 국회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심의 현황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2016-11-03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	2016-11-08	상정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2차 경제재정소위	2016-11-10	상정/축조심사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3차 경제재정소위	2016-11-15	상정/축조심사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4차 경제재정소위	2016-11-17	상정/축조심사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5차 경제재정소위	2016-11-22	상정/축조심사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6차 경제재정소위	2016-11-24	상정/축조심사
제34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	2016-12-21	상정
제34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경제재정소위	2016-12-22	상정
제34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	2017-01-17	상정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	2017-02-21	상정
제35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	2017-03-23	상정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	2017-11-14	상정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2차 경제재정소위	2017-11-16	상정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3차 경제재정소위	2017-11-21	상정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4차 경제재정소위	2017-11-23	상정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5차 경제재정소위	2017-11-28	상정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6차 경제재정소위	2017-11-30	상정
제35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	2017-12-12	상정
제355회 국회(임시회) 제2차 경제재정소위	2017-12-14	상정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	2018-02-01	상정/축조심사
제36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	2018-08-24	상정/축조심사
제363회 국회(임시회) 제2차 경제재정소위	2018-08-29	상정/축조심사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	2018-11-22	상정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2차 경제재정소위	2018-11-27	상정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3차 경제재정소위	2018-11-29	상정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	2019-03-27	상정/축조심사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	2019-11-12	상정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2차 경제재정소위	2019-11-14	상정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3차 경제재정소위	2019-11-19	상정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4차 경제재정소위	2019-11-21	상정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5차 경제재정소위	2019-11-26	상정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6차 경제재정소위	2019-11-28	상정

3.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관련 주요 쟁점

1)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법률안 검토보고서³⁾

구분	검토의견 요지
법 제정의 필요성	<p>■ 찬성 의견</p> <p>첫째,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각국이 직면한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포용적 성장’의 개념이 주목받고 있는데, 두 법안은 ‘사회적 경제’를 통해 포용적 성장을 실현하고 우리사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것임.</p> <p>둘째, 사회적 경제에 대한 기본법 제정을 통해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을 통합적·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p> <p>셋째,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에 따라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p> <p>넷째, 사회적 경제가 표방하는 협동 및 연대의 정신에 기반한 기업문화 활성화 등을 통해 균형 있는 성장과 적절한 소득 분배를 도모함으로써 헌법 제119조제2항의 경제민주화 정신을 실현할 수 있음.</p> <p>■ 반대 의견</p> <p>첫째, 우리나라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사회적 경제기본법을 제정한 다른 나라의 경우 사회적 경제조직이 자생적으로 조직되어 성장해 온 반면,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조직은 자율성·자립성이 낮으며 사회적 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및 공감대도 부족한 측면이 있음)</p> <p>둘째,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정부 지원은 자유시장경제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다른 기업에 대한 역차별 우려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p> <p>셋째, 두 법안이 추구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사회적 가치’ 등의 정의가 모호하고 지나치게 포괄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별도의 법률로 제정할 필요성이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p>
사회적경제 조직의 범위	<p>첫째, 유승민의원안은 모든 사회적 경제조직을 망라하여 포함하고 있는 반면, 윤호중의원안은 농·수협의 일부 조직(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 수협의 중앙회 출자회사와 은행업무) 및 복지시설을 제외하고 있음.</p> <p>둘째, 두 법안은 사회적 경제조직의 범위에 신탁과 새마을금고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p> <p>셋째, 두 법안은 사회적 경제조직의 범위에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p>

3) 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안과 유승민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p>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3에 따라 재정지원 등을 받는 법인·조합·회사·농어업법인·단체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 중 농업회사법인은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농림부 의견)</p> <p>넷째,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경우 현재 산림 관련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없으므로 해당 규정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산림청 의견)</p>
<p>사회적경제 발전기금의 설치</p>	<p>■ 찬성 의견</p> <p>두 법안은 사회적 경제조직의 설립·운영·금융 지원 등을 위해 정부·지자체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사회적 경제발전기금을 설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윤호중의원안은 이와 별도로 지역기금 및 민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아직 자생력이 부족한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조직의 현실을 감안하면 기금 설치를 통해 사회적 경제조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기금 설치를 반대하는 견해가 있으므로 이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p> <p>■ 반대 의견</p> <p>첫째, 사회적 경제발전기금은 정부 출연금 이외에는 사실상 안정적인 자체 재원이 없으므로 「국가재정법」 제14조제2항의 기금 신설요건을 충족하지 못함.</p> <p>둘째, 윤호중의원안의 지역기금의 경우 재원부담이 중앙정부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기금 설치 여부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서 필요 시 조례를 통해서도 설치가 가능함. 또한 민간기금의 조성 역시 민간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고, 기업에 대한 준조세로 작용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p>
<p>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의무</p>	<p>■ 찬성 의견</p> <p>두 법안은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총 구매액의 5% 범위에서 우선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이는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은 일반 사회적 경제조직에 비해 공익증진사업 수행 등 추가적인 사회적 책임이 부과되므로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하여 지원하려는 취지로 보임. 그러나 다음과 같은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이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p> <p>■ 반대의견</p> <p>첫째,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할 경우 조달행정의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p>

	<p>둘째, 공공조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 등 타 경제조직을 역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p> <p>셋째, 발주기관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일정 비율 우선구매를 강제하는 것은 발주기관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음.</p>
<p>사회적경제(개발)원의 설립</p>	<p>유효중의원안은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기관으로 기획재정부가 고용노동부 및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의 공동출연을 받아 「한국사회적경제개발원」을 설립하고, 고용노동부 및 안전행정부와 협력하여 개발원의 운영·감독을 총괄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현재 고용노동부 산하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개발원으로 통합하도록 함.</p> <p>유승민의원안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사회적경제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중앙자활센터를 경제원으로 통합하도록 함.</p> <p>범부처 차원의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개발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적 경제(개발)원을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나,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p> <p>첫째, 동법의 제정 취지 및 통합적인 정책추진체계 구축 필요성을 감안하여 사회적 경제원의 소속을 기획재정부로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p> <p>둘째, 고용노동부는 기존의 사회적기업진흥원을 해산하고 별도의 사회적 경제원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 행정 비효율 발생 우려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음.</p> <p>셋째, 유승민의원안은 중앙자활센터도 사회적 경제원으로 통합하도록 하고 있는데, 중앙자활센터는 광역·지역자활센터를 총괄하고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복지 전달체계의 총괄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통합 시 이러한 기능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p>
<p>사회적경제발전계획의 수립</p>	<p>유효중의원안은 정부가 부문별 발전계획과 시·도 지역별 기본계획을 기초로 5년 단위의 사회적 경제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상향식 계획수립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반면, 유승민의원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단위의 사회적 경제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은 이에 따라 수립하도록 하여 하향식 계획수립방식을 채택하고 있음.</p> <p>동법은 여러 법률과 기관으로 산재되어 있는 사회적 경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일관성 있는 정책의 수립·운영을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정부가 제시하고 이에 따라 하위계획을 수립하는 하향식 계획수립방식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보임.</p>

<p>사회저경제(발전)위원회의 설립</p>	<p>두 법안은 사회적 경제 관련 국가정책 등을 심의·조정하고 정책추진을 총괄 조정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적 경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회 구성 및 사무기구 설치 등에 있어 차이가 있음.</p> <p>두 법안에 따른 사회적 경제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p> <p>첫째, 두 법안은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는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p> <p>둘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윤호중 의원안은 민간위원장 1명을, 유승민의원안은 민·관 공동위원장 2명을 규정하고 있는데, 민·관 공동위원장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p>
<p>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지정</p>	<p>두 법안은 모두 중앙정부 차원의 권역별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윤호중의원안은 이와 별개로 지자체 차원의 지역별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p> <p>사회적 경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중심의 사회적 경제 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권역별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를 지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대부분의 사회적 경제조직이 소규모인 점을 고려하면 윤호중의원안과 같이 지자체 차원의 별도 중간지원조직을 신설하여 개별 조직의 실정에 맞는 지원을 실시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됨.</p> <p>따라서 권역별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및 지역별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문제는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실태 파악이 선행된 이후 그 결과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설치 규모를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p>
<p>정치활동 제한 조항 신설 필요성</p>	<p>유사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사회적 경제조직의 정치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p> <p>사회적 경제조직은 구성원의 권익 향상 및 지역사회 공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 경제활동 주체로서 정치와 무관한 조직이므로, 동법 제정에 따라 본연의 목적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p>

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사회적경제기본법 수정의견 주요 내용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수정의견 주요 내용

2019. 3. 기획재정위원회

□ 정부의견 38개 조문을 조문 삭제 및 통·폐합을 통해 32개 조문으로 정리

<주요 수정내용>

1. 한국사회적경제원의 기능을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 조사연구 기능으로 한정하고, 현행 부처별 집행권한 유지 (수정의견 제17조)
 - ▶ 한국사회적경제원의 신설보다는 현행 집행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김성식위원, '18.2.1. 소위)
2. 중간지원조직의 통·폐합
 - ▶ 권역별지원센터 등 불필요한 요소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김성식위원, '18.8.24. 소위)
 - 중앙정부의 '권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시·도별 '통합지원센터'로 명칭 변경 (수정의견 제18조제1항)
 - 다만, 중앙정부의 시·도별 통합지원센터와 지자체의 시·도지원센터는 공동지정이 가능하도록 함 (수정의견 제19조제2항)
 - 특화 중간지원기관 삭제 (정부의견 제18조제3항)
 - 사회적금융 관련 민간 사회적경제지원 중개기관 삭제 (정부의견 제21조제2항)
3. '사회적가치' 정의 삭제 (정부의견 제3조제2호)
 - 유승민의원안 및 해외 입법사례에 따라 '사회적가치'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사회적경제'의 정의 안에서 간략히 정의
4.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축소 (수정의견 제8조제1항)
 - ▶ 계획 수립 등 업무 부담 가중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기됨(최교일위원, '18.2.1. 소위)
5. 사회적경제조직의 공직선거 관여 금지 조항 신설 (수정의견 제6조)

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사회적경제기본법 강병원 의원안 개요

「사회적경제기본법안」(강병원의원안) 관련

2019. 3. 기획재정위원회

- 강병원의원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19.3.7.)되었으나, 전체회의 상정 이후 소위 논의 가능
 - 「국회법」 제59조¹⁾에 따른 제정안의 숙려기간 20일이 지나지 아니하여, 3월 임시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되지 아니함
- 강병원의원안(7장 35조)은 정부의견(7장 38조)과 기본체계와 구성이 거의 동일
- 다만, 강병원의원안은 사회적경제기업에 '우수문화사업자'를 추가
 - '우수문화사업자'는 문화부가 지정하는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문화상품 제작자 및 문화기술 개발자를 의미²⁾

정부의견	강병원의원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정부의견과 같음)
1. ~ 2. (생략)	1. ~ 2. (정부의견과 같음)
3. "사회적경제 기업"이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조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3. (정부의견과 같음)
<신설>	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문화사업자

- 1) 「국회법」 제59조(의안의 상정시기) 위원회는 의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의안을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 및 폐지법률안: 20일
-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5조의 2(우수문화프로젝트의 지정 등)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창작성 및 성공 가능성이 높은 문화상품 제작 프로젝트를 우수문화프로젝트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문화상품 제작자 및 문화기술 개발자를 우수문화사업자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③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의 기준·절차, 지원,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의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관련 의견

1) 제19대 대통령 선거 정책제안⁴⁾

정책과제 2. 내실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 사회적경제의 정의, 범위 규정 및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기여 인정
- 부처 간 칸막이 해소 및 통합적 사회적경제 정책의 구상과 실현
- 사회적경제에 대한 국가, 지자체의 육성정책, 지원정책의 근거 마련
- 사회적경제 조직 간 자율적인 연대와 협력의 활성화

■ 제안배경

○ 사회 통합 · 불평등 해소 · 공정한 시장 · 분배 정의에 대한 사회적 욕구 증대

- 고용 없는 저성장과 경제적 양극화 심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다양한 사회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 특히 대자본의 과도한 사적이익 추구하고 국가의 조절기능 약화는 국가와 시장과 시민사회간의 삼각균형이 무너지고 경제민주화가 후퇴하면서 공정한 시장경제의 실현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에 중대한 장애가 되고 있음.

- 2014년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국가 중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지수는 상위 4위, 사회갈등지수는 2위로 높아지고, 사회자본지수는 최하위권으로 떨어지는 등 우리사회의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은 더욱 요원해지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어렵게 하는 평가와 징후들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사회통합 · 불평등 해소 · 사회경제 약자 보호의 대안으로써 사회적경제 부상

- 국제적으로도 유럽과 북미 등 선진 국가들의 경험과 사례에서 보이듯이 국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사회적 경제 발전모델이 주목받는 가운데 지난 20여 년 간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창출해 보이고 있음.

- 현재 OECD 국가의 전체 평균 고용율 대비 사회적경제부문의 고용율은 4%대, 유럽연합 27개국 평균 7%대이며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이탈리아 등 주요 국가는 10%대에 육박하는 등 바야흐로 사회적경제는 사회혁신과 공동체 발전을 위한 중요한 견인차로 개발되고 있는 것이 시대적인 흐름이기도 함.

4) 2017년 4월 24일(월) 오전에 진행된 사회적경제 협약식에서 발표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정의당 정책위원장 등 참여하여 정책협약 체결)

- 우리나라 역시 신용협동조합이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들이 발전해왔고 최근에는 정부의 고용정책과 맞물리면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개발과 협동조합 모델의 확산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음.

- 한국 노동연구원의 ‘사회적기업의 임금실태와 저임금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황덕순 외 2015.12)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서 취약계층 및 저임금 집단의 임금이 높고, 내부 임금 격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즉, 분배에 있어 약자 보호라는 가치를 실현하고 있음.

○ 사회적경제를 국가의 주요 의제로 채택해 사회통합과 경제 민주화 실현

- 사회적경제 기업들 대다수가 소기업이며, 경제적 약자들의 협동기업이라는 점에서 사회적경제는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동질성과 동기를 갖고 있음.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를 포함한 사회적경제 기업들간의 상호 협력과 상호 거래를 활성화 해 대자본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고 공정한 시장경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음.

<주요 사회적경제 조직 현황>

(단위: 개소)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기본법coop	생협 (의료생협 제외)	농협
1,713 (2017.2)	1,760 (2016.12)	1,337 (2015. 12)	10,913 (2017.2)	185 (2016.12)	1,131 (2017.2)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연연초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합계
911 (2015.12)	1,372 (2014.12)	142 (2017.2)	15 (2017.2)	928 (2017.2)	20,407

※ 출처 : 사회적기업진흥원, 중앙자활센터,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연연초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한살림, 아이쿱, 행복중심, 두레, 대학생협

■ 정책방향

- 그간의 사회적경제가 기여한 성과로부터 그 위상을 법률로 부여
- 위상에 따른 국가적 의제로 채택함을 법률로 선언
- 사회적경제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 마련
-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금융제도의 마련을 위한 근거 마련
- 사회적경제 각 영역에서 활동하는 주체들의 협력을 촉진하는 근거를 마련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
- 사회적경제의 확산과 인식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의 근거를 마련

2) [사회적경제기본법제정을위한시민행동]⁵⁾의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대한 의견

■ 기본법의 목적

○ (기본법의 목적) 사회적경제기본법은 그간 사회적경제조직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공동체 구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면서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에 따른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사회적경제의 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기본법의 의의

○ (기본법의 의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이 가지는 의의는

- 첫째, 사회적경제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소, 완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음을 사회적으로 인식, 공인하면서 앞으로 더욱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확대, 발전시켜가자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둘째,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의 주도 하에 사회적경제를 육성시켜온 과거의 방식,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민간의 자조와 협동, 연대를 기초로 하면서 민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는 한편 우리 사회가 직면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의 토대를 튼튼히 구축하는 것이다.

- 셋째, 소관부처와 사회적경제조직의 법적 형태 등에 따라 분절화되어 있는 사회적경제 정책 환경을 보다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정책환경으로 변화시켜 보다 효과적인 정책환경으로 정비하고 실제적으로 이를 실행, 뒷받침하기 위한 민-관 협력구조를 구축하는 한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마다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법률적 근거와 지원정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5)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고자 2017년 11월 22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및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등이 결성한 기구로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지지하는 모든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과 시민사회단체 및 유관조직이 참여함(총 49개 단체 참여)

■ 기본법의 성격

○ (기본법의 성격)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위에서 설명한 목적과 의의를 가지며 우선 사회적경제의 공인과 활성화를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후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개별 입법 및 세부 분야별 정책개발을 통해 보완, 발전시켜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기본법의 주요 내용

○ (기본법의 주요 내용) 세부적으로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담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정의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의 열거와 등록제를 통한 보완) 법률에 의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정의, 열거된 사회적경제조직 외에도 사회적목적 실현하고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조직들이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정책대상으로 폭넓게 포괄될 수 있도록 등록제를 통해 보완하도록 한다.

(국가 등의 책무 및 민-관협력의 강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서 정한 책무를 충실히 실행, 이행하되 그 중에서도 사회적경제 민간조직과의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하여야 하며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생력과 협동정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사회적경제조직 역시 사회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며 특히 운영의 공개와 투명성의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사회적경제 조직간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각종 법률에서 정한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준수해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정부는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서의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민-관의 협력구조를 바탕으로, 각 부문별 계획과 지역별 기본계획 및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 시행되는 기본계획 등과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기본계획의 실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실행여부를 점검,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 소속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 운영) 사회적경제 발전과 관련한 국가정책과 기본계획, 그리고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민·관 공동협력과 교류를 촉진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간에 조화로운 정책추진을 총괄 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위원회는 40

인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1/2 이상 참여하도록 하며 위원장은 민-관이 공동으로 맡도록 한다. 위원회는 주요한 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대통령에 보고하도록 한다. 사회적경제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과 실행력의 확보를 위해 위원회 산하에는 사무처를 설치하며 기획재정부가 총괄부처의 역할을 맡도록 한다.

(한국사회적경제개발원의 설립) 기획재정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기관으로 고용노동부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의 공동출연을 받아 한국사회적경제개발원을 설립한다. 이 개발원의 운영 역시 민-관 협력의 기반 위에서 하여야 하며 민간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중간지원기관의 설치, 운영) 한국사회적경제개발원과 함께 정부와 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중간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정부와 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중간지원기관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사회적경제조직 및 사회적경제연합조직과 협력하여야 하며 이 중간지원기관을 사회적경제조직 및 사회적경제연합조직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연합조직)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활발하고 자율적인 연대와 협력을 위해 전국·지역 단위 또는 업종·부문 단위 협의회나 연합회 등 사회적경제조직간 연합조직을 법인 또는 단체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적경제연합조직은 회원의 협력과 연대를 위한 상부상조사업, 공동사업, 조사연구사업, 교육훈련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회원들을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사회적경제연합조직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들 연합조직과 전국·지역 또는 업종·부문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사회적경제금융의 정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재정 및 금융자금 공급의 적정화와 금융체계의 정비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이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여신 및 출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제도의 개선, 사회적경제조직의 특징을 반영한 신용보증제도의 개선,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민간의 여신, 출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과 연계된 금융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국가는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법인 또는 단체의 출연금, 복권기금, 휴면예금 등을 활용하여 설치·운용하도록 한다. 기금의 조성 및 운영은 분리하되 기금 조성 및 관리감독은 기획재정부가 담당하고 기금 운영은 민간 사회적금융기관 전달체계를 통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적경제기

금의 운영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직접 사업으로 운용하기보다는 지역기금과 민간기금의 역량을 확대, 강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 역할로 한다. 또한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경제조직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기금)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사회적경제발전기금(지역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으며 지역기금은 사회적경제조직에 민간 사회적금융 조직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민간기금) 사회적경제조직과 사회적경제금융기관은 민간 차원의 사회적경제발전기금(민간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금에 출연하거나 기부하는 기업, 법인,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편의와 세제상의 감면을 지원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 및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매촉진과 판로확대를 위한 우선구매, 조세감면, 예산의 지원 또는 용자, 국공유재산 및 시설의 임대 또는 양여,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시민교육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지원, 육성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사회적경제조직이 아닌 조직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조직변경을 하거나 사회적경제조직의 규모화를 위해 사회적경제조직 또는 비 사회적경제조직을 인수 또는 합병하는 경우 조세감면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과 연대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체계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연합, 공동사업의 추진, 공동연구개발, 공유자산의 축적과 클러스터의 조성, 공동 판로유통망의 구축 등에 필요한 세제, 재정, 금융, 행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지역, 업종, 부문, 전국 단위 연대조직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들과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들간에도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

5. 현황점검 및 향후 과제

1) 국회 상황

- 현 20대 국회에 총 3개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발의되어 있음.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소관 소위원회(재정경제소위) 심사를 통해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였음.
- 법안의 주요 쟁점 등에 대한 검토보고 및 심사를 통해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조정, 조율을 진행하였음. (2019년 3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명의로 작성된 자료를 참조)

2) 민간 대응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2017년 5월에 치러진 19대 대선을 앞두고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을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각 대선 후보에게 제안하였음.
-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정의당이 연대회의의 제안을 수용하여 대선공약으로 채택하였고 2017년 4월 24일(월)에 개최된 사회적경제 정책협약식에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정의당 정책위원장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협약을 체결하였음.
- 2017년 5월 9일 대통령 선거를 통해 당선된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2017년 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 2018년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등 발표)
- 그러나 야당(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인하여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여전히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봉착하여 2018년 11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을 결성하고 국회 등에 법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추진

3) 입법 추진 상황

- 2018~2019년 사이에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를 통해 사회적경제기본법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정부-국회 간 의견조율, 조정은 대부분 완료된 상황으로 파악됨. (이에 대해서는 2019년 3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명의로 작성된 자료를 참조)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인해 여전히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정부, 여당 역시 특단의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20대 국회에서의 처리는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민간 역시 국회에서 법안의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을 타개할 효과적인 수단, 방법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음.

4) 대응방향과 과제

(1) 방향

- 현재 제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선거법, 공수처법 제정 문제로 정치적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는 상황, 정치권 전체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국면으로 진입해 들어가는 상황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20대 국회에서의 제정 가능성은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될 일말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이유는 없으므로 모니터링 활동은 지속할 필요가 있음.
- 국회에 제출된 세 개의 사회적경제기본법 및 정부와 민간의 의견을 종합하여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취지와 목표를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충실히 반영하는 일과 함께 현 20대 국회의 잔여 임기 기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시기와 21대 국회 출범 이후를 전망하면서 구체적인 입법 전략을 강구해야 함.

(2) 과제

- (계속) 20대 국회에서의 논의과정 모니터링 및 사회적경제기본법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 및 의견 반영
- 21대 국회 총선 시기 및 21대 국회 개원 후 대응전략 구상 (특히 반대 입장이 예상되는 야당 및 의원 설득전략 및 지역구 등 현장압력 형성)

3. 총평

1. 정책모니터링 결과

1. 요약

- 결과를 종합하면,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창업이 활성화되었음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민간과 공공이 새로운 시도에 나섰고, 정부정책 간 연계성이 강화되면서 현장에서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다만, 사회적 경제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근거 법령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으며, 연대에 기반을 둔 사회적 금융의 조성, 사회적 경제 인재의 체계적 양성 등의 과제에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여전하다는 점도 확인하였음
- 이에 분야별 정책 모니터링의 내용과 제언은 다음과 같음

2. 정책제언

1. 통합지원체계 분야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경제 정책은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민간의 참여를 보장하는 구조가 미흡했다. 또, 17개 부처에서 시행하는 사회적 경제 정책이 통합적으로 지방정부에 전달되지 못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초래됐고, 정책 간 연계성이 저조하며, 민·관의 협업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연대회의는 사회적 경제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민간의 참여가 구조적으로 보장 될 수 있도록 (가칭) 사회적경제민관위원회 설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 사회적 금융 분야

사회적 금융 도매기금이 출범하고, 신용보증기금 지원으로 대출 규모가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등 새로운 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다만, 제도 금융권에서 사회적 경제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사회적 경제 전문 금융기관의 자금 중개 및 공급 기능이 약화했다. 이에 대한 지자체에의 역할 또한 축소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을 통해 사회적 금융 활성화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회적 경제의 연대에 기반을 둔 자조 기금을 더 많이 조성해 금융 사각지대를 줄이는 한편 긴급자금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금융과 제도금융의 경직성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3. 인재양성 분야

지난 2년여 간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사회적 경제 인재양성 정책을 활발히 내놓은 것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사회적 경제로 청년의 유입은 늘어나고, 대중의 교육기회는 빠르게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사회적 경제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시도들이 조금이나마 있었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가 우리 사회에서 폭넓게 인식되고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토대 구축과 인재양성 종합지원체계 구축은 천천히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됐다. 연대회의는 교육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실행에 나서길 기대하며, 노동부는 효과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재부는 인재양성 분야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4. 지역 기반 연계 분야

지역 기반 연계 분야 정책 모니터링 결과 17개 부처별로 다양한 정책이 수립 시행되고 있으며, 사회적 경제 조례 제정 여부, 사회적 경제 담당 부서의 존재 여부, 지자체 내 부서 간 사회적 경제 정책에 대한 소통 등이 정책 효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의 적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경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관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한 형편이다.

5. 사회적 가치 분야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사회적 경제 기업에 적합한 평가시스템과 측정 지표를 개발했으며,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사회적 가치 평가 지표 5개를 추가했다. 그 결과 공공기관과 사회적 경제 분야의 협력 사례도 출현하는 등 사회적 경제 생태계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현실적으로 사회적 가치 측정은 쉬운 일이 아님이 분명하다. 그렇더라도 미래지향적인 사회적 가치 측정 방식의 개발과 운영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는 만큼 이에 대한 꾸준한 투자가 필요하다.

6. 사회적 경제 기본법 추진 경과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의 근거가 되는 기본적 법률로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는 법이다. 현재 유승민, 윤호중, 강병원 의원 등의 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나 여야의 대립으로 20대 국회에서 제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연대회의는 법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추진 경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갈 예정이다. 만일 이번 국회에서 무산되면 차기인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및 국회개원에 발맞추어 재입법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4. 부 록

1. 통합지원체계 설문 & 인재양성정책 설문

2019년도에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껏 달려오신 여러분께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현장의 역량을 강화하고, 탈락하는 사람 없이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우리 전략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을 모니터 하고자 합니다.

답변하신 자료는 통계분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그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설문 결과는 각 분야별로 종합되어 후속 좌담회나 위원회별 분석 작업을 거쳐 『2019 사회적경제 정책 모니터 보고서』로 제출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간 : 2019년 11월 4일~ 11월 10일

담당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회

이메일 : ksen121121@gmail.com

문의 : 02)6715-9445 / 010-8770-4759 (안인숙)

※ 조사응답자에 대한 기본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로 표시해 주십시오)

지역	시/도	시/군/구
소속	<input type="checkbox"/> ① 사회적경제 조직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1차 조직)	
	<input type="checkbox"/> ② 사회적경제 조직의 연합회 및 네트워크 (2차 또는 3차 조직)	
	<input type="checkbox"/> ③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권역별지원기관, 광역/기초 지원센터)	
	<input type="checkbox"/> ④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기관 및 유관 지원조직 등	
연령	<input type="checkbox"/> ① 30세 이하	<input type="checkbox"/> ② 31~40세
	<input type="checkbox"/> ③ 41~50세 이하	<input type="checkbox"/> ④ 51세 이상
	<input type="checkbox"/> ① 1년~3년	
	<input type="checkbox"/> ② 3년~5년	
업무경력	<input type="checkbox"/> ③ 5년~7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④ 7년 이상

1. 통합지원체계 부처별, 유형별로 나누어 시행 중인 사회적경제정책의 통합적 추진과정에 대해 사회적경제 관련자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17년 발표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서 통합지원체계 부문의 2개 과제는 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3법 제정 ②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 및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설치였습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통합지원체계란 ‘부처별, 유형별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분산되어 수행되는 정

책에 대해 통합적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각 기관의 활동을 상호 연계하거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연계망'으로 정의하고, 통합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부처별로 지원제도가 분산되어 있음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비용 유발, 정책연계성 저조, 민·관 협업 부족 등이 발생하는 것에 두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국의 지역협의회를 통해 ①사회적경제 관련 조례 제정 현황 ②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 기본계획 및 정책 수립현황 ③사회적경제 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조구축 여부 ④사회적경제 당사자 협의회 구성 현황을 추가 조사하여, 정부의 정책의 파급 정도도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1) 귀하는 문재인정부의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정책 수립 과정에 어떤 경로로든 참여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① 있다	② 없다
------	------

2) 문재인정부는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정책 수립과정에 민간의 의견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아니다	② 다소 아니다	③ 아니다	④ 보통	⑤ 그렇다	⑥다소 그렇다	⑦매우 그렇다
----------	----------	-------	------	-------	---------	---------

3)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귀하는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아니다	② 다소 아니다	③ 아니다	④ 보통	⑤ 그렇다	⑥다소 그렇다	⑦매우 그렇다
----------	----------	-------	------	-------	---------	---------

4) 문재인정부의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정책은 부처별, 유형별로 나뉘어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통합에 얼마나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아니다	② 다소 아니다	③ 아니다	④ 보통	⑤ 그렇다	⑥다소 그렇다	⑦매우 그렇다
----------	----------	-------	------	-------	---------	---------

2. 인재양성

2018년 5월에 발표된 사회적경제인재양성 종합계획에 대한 체감도와 만족도를 평가합니다.

정 책 과 제 명	① 적다 ⑦ 크다							실적	주관부처	
1. 인재 유입 활성화 (6개 과제)										
1-1. 청년 사회적경제인 양성										
		1	2	3	4	5	6	7		
① 청년 사회적가치창출활동 지원	체감도 만족도 중요도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2.6만명 지원	행안부
② 청년 사회적경제기업 취업 확대	체감도 만족도 중요도								· 사회적경제기업 취업지원 진행 중	행안부
③ 청년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확대	체감도 만족도 중요도								· 창업팀 지원(815팀), 성장지원센터 조성 중(원주·울산·광주·서울)	노동부 중기부
1-2. 신중년 사회적경제 진출 확대										
		1	2	3	4	5	6	7		
④ 신중년 사회적경제 교육 및 취업지원 확대	체감도 만족도 중요도								· 신중년 취업 지원(96명 수료, 22명 취업)	노동부
⑤ 신중년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지원	체감도 만족도 중요도								· 시니어 특화 창업입문 교육 중	노동부 과기부
⑥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체감도								· 프로보노(265명), 전문위원 위촉(46명)	노동부

	만족도												
	중요도												

2. 사회적책임 의식과 경영마인드를 겸비한 리더 육성 (9개 과제)

2-1. 대학 내 전문교육과정 확대

		1	2	3	4	5	6	7		
① 사회적경제 학부 개설 지원	체감도 만족도 중요도								·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 진행 등	노동부 교육부
② 사회적경제 석·박사 학위과정 확대	체감도 만족도 중요도								· 사회적경제리더과정 운영(이화여대 등 4개 대학)	노동부
③ 외국 대학과 교류 지원 및 해외연수 프로그램 확대	체감도 만족도 중요도								· 사회적기업국제컨퍼런스 참석(3월) 사회적경제 국제포럼 개최(7.2)	노동부 교육부

2-2. 대학생들을 예비 사회적경제 리더로 육성

		1	2	3	4	5	6	7		
④ 희망사다리 장학생 대상 사회적경제 교육 제공	체감도 만족도 중요도								· 1학기 장학생 지원 및 교육(5월, 991명)	교육부
⑤ 사회적경제기업 탐방 프로그램 제공	체감도 만족도 중요도								· 우수중소기업 등 3,986명 방문	노동부
⑥ KOICA 등 해외봉사단 사회적경제 교육 및 컨설팅 제공	체감도 만족도 중요도								· 귀국인재 사회적경제 컨설팅(5.29. 6명)	외교부
⑦ 대학생협 활성화 지원	체감도 만족도 중요도								· 한국대학생협 연합회 협약체결·교육진행	기재부 교육부

2-3. 사회적경제 유망분야 리더 육성

		1	2	3	4	5	6	7		
⑧ 권역별 사회적경제 리더 포럼 운영	체감도 만족도 중요도								· 사회적경제정책포럼 개최(7.2) 등	노동부
⑨ 도시재생 등 사회적경제 진출 유망분야 전문리더 육성 지원	체감도 만족도 중요도								· 도시재생 등 분야별 맞춤형 교육 진행(48명 수강)	노동부

3. 사회적경제 종사자 역량 및 전문성 강화 (5개 과제)

3-1. 교육의 접근성 제고

		1	2	3	4	5	6	7		
① 사회적경제기업 중간관리자 대상 회계·마케팅 분야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체감도 만족도 중요도								· 중간관리자 맞춤형 교육진행 중	노동부
② 훈련비용 지원 등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 대상 맞춤형 교육·훈련 제공	체감도 만족도 중요도								· 종사자 1,377명, 56백만원 지원	노동부

3-2. 대상별 맞춤형 교육훈련 제공

		1	2	3	4	5	6	7		
③ 사회적경제 전용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K-MOOC 강좌 개설	체감도 만족도 중요도								· K-MOOC 강좌 개설 진행 중 (인천대, 사회적경제 기업가 경영전략)	노동부 교육부
④ 지역 중심 사회적경제 전문교육 확대	체감도 만족도 중요도								· 신규공동훈련센터 공모 및 설명회	노동부
⑤ 사회적경제기업 훈련 프로그램 개발비 및 인건비 지원	체감도 만족도 중요도								· 서울·경기 중심 사회적경제기업 훈련수요 조사 진행, 개설 준비	노동부

4. 플뿌리 사회적경제 토대 구축 (6개 과제)

4-1. 초·중·고 학령기 교육접근성 확대

		1	2	3	4	5	6	7		
① 사회적경제 과목개설, 교원 역량 강화 등	체감도								· 초·중·고 사회적경제 보수 학습자료 보급(3종, 2월)	교육부 노동부 기재부
	만족도									
	중요도									
② 차기 교육과정 개편 시 사회적경제 내용 반영	체감도								· 차기 교육 과정개편시 적용('21년 ~	교육부
	만족도									
	중요도									

4-2. 지역주민의 교육 접근성 강화

		1	2	3	4	5	6	7		
③ 지역교육센터 등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상시학습 지원	체감도								· 평생학습도시 신규선정(세종시 등 7개소)	행안부 노동부 기재부
	만족도									
	중요도									
④ 지역주민의 다양한 사회적경제 활동 지원	체감도								· 관광두레 PD 20명 선발, 태양광 발전 협동조합 44개소, 2.8MW 지원	국토부 산업부 문체부
	만족도									
	중요도									

4-3. 국민의 이해도 및 인식 제고

		1	2	3	4	5	6	7		
⑤ 사회적경제 통합행사 개최	체감도								· 사회적경제 통합 박람회 개최(7.5-7.7, 대전)	기재부 노동부 행안부
	만족도									
	중요도									
⑥ 민관협업을 통한 사회적경제 인식 확대	체감도								· 시민단체 등 각종 네트워크 지원	노동부
	만족도									
	중요도									

5. 종합지원체계 구축 (6개 과제)

5-1. 인재양성 통합 추진체계 구축		1	2	3	4	5	6	7		
① 지역·현장 중심 사회적경제 교육 제공	체감도								· 시민단체 등 각종 네트워크 지원	노동부
	만족도									
	중요도									
②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개발 등 중앙 뒷받침 시스템 구축	체감도								· 연구개발센터, 인재개발원 조성 [지연되고 있음]	노동부
	만족도									
	중요도									
5-2. 콘텐츠 및 강사양성 등 인프라 구축		1	2	3	4	5	6	7		
③ 사회적경제 교육 콘텐츠 개발	체감도								· 표준교재 개발 진행 중	노동부
	만족도									
	중요도									
④ 신재생에너지 등 분야별 사회적경제 전문 강사 양성	체감도								· 강사양성 교육 진행, 풀 구성 진행 중	노동부
	만족도									
	중요도									
5-3. 공무원 및 지원조직 역량 강화		1	2	3	4	5	6	7		
⑤ 기능별 특화과정 개설 등 지원조직 역량 강화	체감도								· 지원기관 교육 등 역량강화 지원	노동부
	만족도									
	중요도									
⑥ 공무원 교육과정 내 사회적경제 교육 반영	체감도								· 공무원 대상 사회적경제 교육 진행 중	노동부 인사처
	만족도									
	중요도									

[별첨1] 정책 모니터 계획

1. 정책 모니터의 목표

- 연대회의는 정책기획위원회를 통하여, 각 부문의 정책 협의, 정부정책 모니터링, 사회적 여론 형성 분야로 정책 관련활동을 수행 중에 있음.
- 정책 모니터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현장의 정책 역량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함.

2. 정책 모니터 계획

-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성과 과정을 살피어 보고서로 제출하고자 함.

3. 정책 모니터 절차

분 야	내 용
자료수집 (data collection)	통합지원체계 정책모니터링에 필요한 자료수집
자료분석 (data analysis)	
보고서 (reporting)	정책형성(input) - 정책집행(process) - 정책성과(output) 과정 간 정책 효과성, 효율성, 적정성, 형평성, 대응성, 적절성 등을 평가하여 보고서 제출
대응 (action)	11월 28일 연대회의 활동가 대회 토론회 발표 및 사회화(신문기고, 취재협조)

※ 분야 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개 아래의 방법을 사용함.

4. 정책 모니터 내용

5. 정책 모니터 범위

분 야	내 용	담 당
통합 지원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부처 협의조정 체계 ○ 민관 거버넌스 구축·작동·독려 시스템 ○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방향과 지원체계 	강민수 안인숙
사회적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자금 공급 평가 ○ 민간 금융 공급 평가 ○ 사회가치연대기금 / 신탁 / 임팩트 투자 	사회적금융위원회 위원장 문보경

구분	평가기준	평가지표
	정책목표의 타당성	평가대상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 형성	정책내용의 충실성 ○ 인재양성 정책목표달성방안역한체감효과 Best & W-정책수립절차 ○ 사회적경제정책 수립	정책수립(세부사업 등)의 공익성 이행현황 박봉희
실행	시행과정의 효율성 ○ 서비스비축원칙 ○ 서비스비축원칙	- 일정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여부 - 11개 분야 평가 - 효율적 집행 여부 정책기획위원회 최영미 신선미
지역 기반 연계	시행과정의 적절성 ○ 지역연계 ○ 지역연계	- 행정여건과 상황변화의 포착 및 적절한 대응 - 영항을 미치는 정책 지원 - 이해당사자에게 제대로 알리고 있는지 여부 지역위원회
정책 성과	분야 목표의 달성도 ○ 사회적경제정책에 대한 지역체감도 ○ 사회적경제기업 및 중간지원조직 대상 가담 ○ 사회적경제기업 및 중간지원조직 대상 가담 정책효과성	정책목표달성 여부 위원장 하재찬 여부
사회적가치	○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평가 ○ 사회적경제의 사회적가치 평가 체계 수립	정책기획위원회 김현철 신형석 조현경
사회적경제기본법	○ 법제정 관련한 국회와 행정의 활동 평가	정책기획위원회 김호영 김대훈

[별첨2] 정부정책 추진현황 자료

1. 통합지원체계

2. 인재양성 종합계획 주요과제 추진실적 (고용부)

□ 인재유입 활성화

< 주요내용 >

□ (청년) 청년의 사회적경제 유입을 단계별·포괄적으로 지원

- 청년 사회적경제인 양성을 위한 창업팀 지원 확대,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조성, 사회적경제기업 취업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

□ (신중년) 전문성을 갖춘 신중년의 사회적경제 유입 확대

- 신중년 사회적경제 진출을 위해 취·창업을 지원하고,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재능기부뱅크, 프로보노 허브센터 등 인프라 확충

-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확대*(675→815팀), 초기 창업팀 지원을 위한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4개소 추가 조성 진행 중

* '19년 사회적기업가 육성 창업팀의 경우 재도전(100팀)을 비롯, 공정여행, 융합기술, 도시재생, 농어촌·산림 등 특화분야 신설·확대 운영

** ('17년) 서울·부산·전주 → ('18년) 경기·대전·대구 → ('19년) 강원·울산·광주·서울

-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소셜벤처 발굴

- 청년의 지역 문제 참여를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확대('19.7월 기준 2.6만명 지원)

- (신중년) 민간의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하여 신중년 취업지원(96명), 폴리텍 직업훈련과정에 사회적경제 교과과정 운영(28개 캠퍼스, 2시간)

- 시니어 특화 창업입문과정 운영(20명) 및 고경력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4건), 퇴직인력 사회공헌 활성화*

* 경영전략·마케팅·인사노무 등 11개 분야 265명 개인 프로보노 풀 구축('18.12월), 프로보노 활동가, 전문위원 대상 네트워킹 데이 개최('19.7.3, 100여명 참석)

□ 사회적경제 핵심 리더 육성

< 주요내용 >

- (전문교육) 사회적 책임의식과 전문적 경영역량을 갖춘 리더 양성
 -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지정, 사회적경제 리더과정 확대, 국제교류 협력을 통한 사회적경제 리더의 국제적 역량 제고
- (대학생) 잠재력을 갖춘 대학생들을 사회적경제 예비리더로 육성
 - 대학생 대상 사회적경제 교육, 중소기업 탐방을 통한 일체형 프로그램 운영, 대학 생협 활성화 환경 조성
- (분야별 리더) 사회적기업 유망분야별 전문리더 육성
 - 도시재생, 신재생에너지 등 분야별 전문 리더 육성 및 포럼 운영

- (전문교육) 사회적경제 리더과정을 ‘선도형’과 ‘신규확산형’으로 구분하여 선정·운영하고, 국제교류를 확대
 - * <선도형> 이화여대(59명), 성공회대(55명) <신규확산형> 강릉원주대(44명), 전주대(46명)
 - 사회적경제 국제교류 확대를 통한 리더의 글로벌 역량 제고, 사회적기업가 해외 연수프로그램 운영 중(런던 6월, 8명 9개 기관 방문)
- (대학생) 희망사다리 장학금 수혜 대학생과 KOICA 등 장기해외봉사단 귀국인재 대상 사회적 경제 교육 실시, 사회적경제기업 탐방 지원*
 - * 사회적기업 등 3,986명 중소기업 탐방, 대구지역 대학생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입주 기업 방문 및 간담회(30여명, 5.11)
- (리더육성) 분야별 전문리더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도시재생, 사회서비스 등 7개 과정), 국내·외 사회적경제 포럼 개최*
 - * (국내) 사회적경제 소셜임팩트 포럼(1.25, 이화여대), 사회적경제 정책포럼(7.1), 등 록제 추진 정책 포럼 등 개최(상반기 2회)
 - * (국외) 아시아 사회적경제 활성화 연대방안 논의, 아세안+3 사회적기업 국제 컨퍼런스 참석 및 발제(3.6~3.8, 태국 방콕) → 사회적경제 국제포럼 개최 (7.2)

□ 사회적경제 종사자 역량 및 전문성 강화

< 주요내용 >

□ (교육접근성) 온라인 플랫폼과 권역별 기관을 활용하여 지역의 교육접근성 확대

- 사회적경제 전용온라인 교육 플랫폼 운영(가칭 SE-배움터), K-MOOC 탑재강좌 확대
- 지역 내 중간지원기관 등 활용하여 교육을 확대하고 훈련비 지원 강화

□ (맞춤형교육) 사회적경제 관련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 지원

- 중간관리자, 실무자, 관리자 등 종사자별 맞춤형 교육훈련 제공
- 훈련비용 지원,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일학습병행 확대

○ (교육접근성) K-MOOC(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탑재 사회적경제 신규강좌 선정·운영*, 교육훈련비용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가의 경영전략(인천대) 선정, 3~4분기 운영 예정

- 사회적경제 기업이 직원을 대상으로 수행한 자체 훈련 및 위탁교육에 훈련비 지급(사회적경제기업 1,377명, 56백만원 지원)

○ (맞춤형교육) 중간지원기관 종사자 역량 강화 워크숍, 지역별 훈련 수요조사* 실시, 사회적경제기업의 일학습병행 훈련 지원 등 추진

* ① 도시재생 비즈니스 모델 ② 커뮤니티 케어 ③ 사회적금융 ④공공구매(조달) 순

- 사회적경제기업이 종사자 경력개발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자체 교육 훈련을 실시한 경우 사업개발비 지원(5개 기관, 25,249천원)

* 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사업개발비 활성화를 위한 교육 진행(서울, 전주, 부산, 115명)

- 일학습 병행 선정기업 에 대해 프로그램 개발 및 훈련비용 지원(18개 기업, 67명 학습근로자)

□ 풀뿌리 사회적경제 토대 구축

< 주요내용 >

□ (학령기) 초·중·고 학생들의 사회적경제 교육기반 확대

- 교과목에 사회적경제 내용을 반영하고, 교원 역량 강화 지원
- 체험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학교 협동조합을 활성화

□ (지역주민) 지역 내 사회적경제 교육을 강화하고 학습공동체 활성화

- 사회적경제 친화도시 지정, 지역경제교육센터를 활용한 지역주민의 사회적경제 상시 학습 지원

□ (대국민) 행사개최, 민관협업 등으로 대국민 인식제고

- 일반국민 대상 사회적경제 인식개선을 위한 사회적가치 창출대회, 시민단체, 종교계와의 연계 등 민간과의 협력 강화

- (학령기) 초·중·고 사회적경제 교수 학습자료(3종) 보급, 사회적경제 연구학교*(서울강남초교 등 7개교) 및 사회적경제 캠프 운영(155명)

* 사회적경제 관련 학습 및 학교 협동조합, 공정 무역 등을 실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 (지역주민)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19년 7개)을 통해 주민 대상 교육, 지역주민을 사회적경제 주체로 육성(도시재생·에너지(태양광)·관광두레PD 등)

- (대국민)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대전, 7.5~7.7), 사회적가치 창출 확산* 및 민간협업(시민사회 전국네트워크, 종교네트워크 등)을 통한 인식 확대

* LG전자, 한국남동발전,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서 지원사업 심사시 SVI 적용

- (전국네트워크) 정책 워크숍(2분기), 사회적기업 정책포럼(4.1) 및 사회적경제활성화 네트워크 지역포럼 개최(5개 권역, 2분기)

- (종교네트워크) 3대 종교(가톨릭·기독교·불교) 공동행사 개최(6.20, 조계사), 협약기관 근로자 대상 교육 등 종교 내 사회적경제 저변 확대

□ 종합지원체계 구축

< 주요내용 >

□ (통합체계) 지역-중앙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지역현장중심의 사회적경제 교육제공, 사회적경제관련 연구.개발 등 인재양성 통합 추진체계 구축

□ (인프라) 내실있는 콘텐츠와 전문성을 갖춘 강사를 발굴·육성

- 양질의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전문강사 양성 지원, 이를 위한 연구개발센터와 인재개발원 조성 추진

□ (지원조직) 공무원과 지원조직의 역량을 강화

- 공직자 사회적경제 이해도 제고를 위해 공직자 교육과정 內 사회적가치·사회적경제 교육과정 신설·확대

- (통합체계) 중앙 뒷받침을 위한 사회적기업진흥원 부설 연구개발센터 설치('19), 인재개발원 조성('20)은 예산 미확보 등으로 지연

- (인프라) 사회적경제 표준교재 개발(6월, 자문회의) 및 강사양성 추진

- 사회적경제·사회적가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사례중심의 현장교육이 가능한 전문강사를 발굴·육성 진행*

* 강사양성 교육 진행(비소사이어티, 102명 신청 25명 수강 중)

- (역량강화) 지원조직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및 지원조직간 협업 지원, 공직자 대상 사회적경제 교육 진행

* 창업지원기관 역량 강화(2월, 170여명) 및 창업 멘토 대상(1월 75명, 3월 147명 참여) 워크숍

- 공무원 대상 사회적가치·사회적경제 교육 확대방안 수립(1월), 및 교육진행*, 해외 사회적경제 정책 사례 연구 참여

* <교육> 국가공무원(5급 216명, 7급 167명), 지자체 공무원(115명)

<해외정책연수> 런던 정경대(LSE) 사회적경제 정책사례 연구 (5월, 각 부처 20여명)

3.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2018.2.8.)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

2018. 2. 8

관계부처 합동

I. 사회적경제의 개념 및 지원체계

- 사회적경제는 구성원간 협력·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용역의 생

산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경제적 활동을 의미

- 경제활동이라는 측면에서는 시장경제와 유사하나, 연대와 협력, 민주적 운영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점에서 차이
 - 일자리 부족, 양극화 확대, 복지수요 증대 등 정부가 모두 감당하지 못하는 사회문제를 민간 스스로 해결
-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는 주요한 법·제도적 체계 등을 갖추는 도입기를 지나 고용·매출 등 양적으로 성장하는 단계에 진입
- 개별 부처별로 취약계층 고용확대, 자활지원 등 목적으로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을 정의하여 다양한 지원을 실시중
 - 정부·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정책자금·보증을 제공하고 법인세 등 세제 혜택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혜택을 부여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적경제기업 유형·현황>

구 분 (시 행)	사회적기업 (2007년)	협동조합* (2012년)	자활기업 (2012년)	마을기업 (2010년)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목 적	취약계층 고용 창출, 서비스 제공	조합원 권익 향상, 지역 사회 공헌	수급권자 등의 자활 지원	지역환경 개선 지역공동체 활성화
근거법률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기초생활보장법	행안부 지침
개수(16末)	1,713개	10,640개	1,149개	1,446개

* 농협, 수협, 신협, 생협 등 특별법에 의한 8개 개별협동조합도 사회적경제기업 범주에 포함

- 사회적경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참고)을 마련·발표
-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 접근성 확대’를 목적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금번 사회적금융 활성화방안을 마련

참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목표 및 발전전략
-----------	---------------------

- ◇ 사회적경제가 포용성장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 전환 및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Two-Track 발전전략 마련
 - ① (인프라 구축) 사회적경제 성장단계별 특성에 맞는 시스템 구축
 - ② (진출분야 확대) 사회적경제 파급효과가 큰 분야 집중 육성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협력성장 및 포용성장 견인

목표

사회적경제의
역량 제고

일자리 창출 등
성장동력 확보

공동체 복원 등
사회통합

추진 전략

성장 인프라 구축

진출분야 확대

정책 과제

통합 지원체계 및
정책방향 확립

* 기본법 제정 및 컨트롤타워 구축

금융접근성 제고

* 공적금융 확대 및 투자환경 개선

판로확대 지원

* 공공조달 확대 및 판로개척

인력양성 체계 강화

* 전문인력 양성시스템 구축 등

사회서비스 분야 진출

주거환경 분야 진출

문화예술 분야 진출

프랜차이즈 분야 진출

소셜벤처 분야 진출

지역기반 연계 분야 진출

추진 체계

민관협업 및 지역주도의 추진체계 구축
공공부문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

II. 사회적금융의 개념·현황 및 평가

1 사회적금융 개념

□ 사회적금융(Social Finance)은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실현을 재무적 이익(Financial Return)과 함께 추구하는 금융

○ 협의로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투자·융자·보증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활동을 의미

*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및 사회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사회적경제활동(공공성이 큰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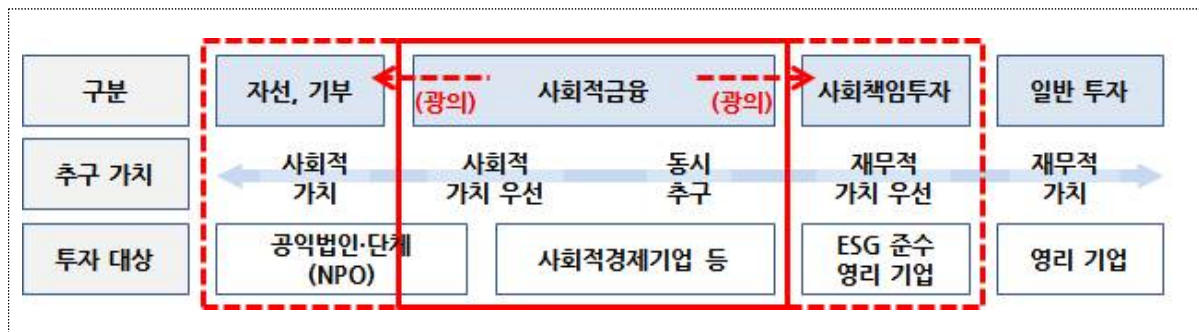
- 임팩트투자(Impact Investing)는 상업성에 기반을 두고 투자 방식으로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비교적 발전된 형태를 의미

○ 광의로는 추후 회수를 전제로 하는 투자·융자·보증뿐 아니라 보조금(Grant)과 자선행위(Philanthropy)도 포함하거나

- 사회적 가치를 넓게 적용하여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우수 기업에 투자하는 사회책임투자(SRI)까지 포괄

➔ 금번 방안은 사회문제의 효율적·효과적 해결을 위해 사회적경제 기업 등에 투자·융자·보증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에 중점

<사회적금융 개념>



2 사회적금융 현황 (공급측면)

□ 우리나라의 현재 사회적금융은 정부·공공재원을 중심으로 기존 중소기업·서민 정책금융 지원체계 내에서 수행중(☞참고)

- 미소금융*과 중소기업정책자금 중 일부를 사회적기업에 대출 ('16년중 각각 9.5억원, 106억원)
 - * 미소금융은 민간사업수행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대출 실행
-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사업을 실시중이며, 서울시의 경우 별도 기금("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하여 저리융자 ('16년중 207억원)
- 신보와 지역신보에서 사회적기업·협동조합에 대해 일반기업에 비해 보증비율을 높인 특례보증 제공 ('16년중 각각 46억원·94억원)
- 투자방식으로는 모태펀드內 사회적기업 펀드를 별도조성하여 민간자금과 매칭을 통해 사회적기업에 투자 ('16년중 15.5억원)

□ 민간재원을 활용한 자발적인 사회적금융은 다양한 시도가 있지만 절대적인 규모는 크지 않음

- 특정 대기업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적기업 및 전문 인력 육성*과 함께 사회적금융 관련 사업을 실시
 - * '13년 KAIST 사회적기업가 MBA 과정 신설 등
- 일부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은 공공자금外 민간부문에서 재원을 조달하여 상업적 원리에 기반한 임팩트투자를 수행*
 - * 자금지원뿐 아니라 재무·회계, 경영, 마케팅 등에 대한 컨설팅을 병행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의 성공가능성을 제고
- 사회적경제단체가 공제형태의 자조기금을 조성하여 회원사인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존재

참고

사회적금융 관련 공공부문 사업현황

구분	사업명	내용	사업구조
대부	서민금융진흥원 ('0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기업에 임대차보증금, 시설·운영자금 등을 대출 (대상)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한도) 1억 / (금리) 2~4.5%(사업수행기관별 상이) (상환) 원리금 분할상환(사업수행기관별 상이) (규모) '16년 9.5억원 ('08~16년간 204억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사회적기업 포함)에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 / (대상)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한도) 45억원(수도권 이외 기업은 50억원) (금리) 정책자금기준금리에 연동(약 3%대) (절차) 중진공 접수 및 대상 결정 → 중진공(직접) 또는 금융기관(대리) 신용·담보부 대출 (규모) '16년 106억원 ('10~16년간 304억원)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융자 프로그램 운영 (대상)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한도) 2억 / (금리) 2% / (기간) 최대 5년 (사후관리) 반기마다 재무·사회지표 모니터링 (규모) '16년 207억원 (총기금규모 703억원) <p>※ 기금 재원으로 사회적기업 융자 외 소셜하우징 융자, 중간지원 기관 협력사업 융자, 사회적 프로젝트 융자 프로그램도 운영</p>	
신용보증	정책성 특례보증 ('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신용보증 공급 (대상) (예비)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한도) 1억원 이내 / (상환) 5년 이상 (보증비율) 100% / (보증요율) 연 0.5% (규모) '16년 46억원 ('12~16년간 211억원) 	
	사회적기업전용 특례보증 ('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기업에 특화된 특별보증 운용 (대상/한도) 사회적기업(4억원), 협동조합(5천만원) (보증비율) 영리 기업·조합 90%, 비영리 기업·조합 100% / (보증요율) 연 0.5% 이내 (상환) 5년 이내(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규모) '16년 94억원 ('12~16년간 309억원) 	
투자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자본시장을 활용하여 사회적기업에 투자 (규모) 제1호 조합(42억원, '11년~, 투자종료), 제2호 조합(40억원, '12년~, 투자종료), 제3호 조합(60억원, '13년~, 투자종료), 제4호 조합(40억원, '15년~) (대상)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청년 등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참가자 등 (규모) '16년 15.5억원 	

3 | 현행 사회적금융에 대한 평가

□ 우리나라의 사회적금융은 ①태동단계로서 ②절대적인 자금 공급량이 부족할뿐만 아니라 ③관련 생태계도 미형성된 상황

① 사회적금융시장이 구축된 英·美에 비해 우리나라는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태동단계(“조화되지 않은 혁신”☞참고)에 해당

② 성장기에 들어선 사회적경제의 발전정도*(자금수요)에 비해 금융공급이 부족한 사회적금융의 과소공급 상태가 지속**

* 사회적기업 평균 매출액(억원) : ('13) 11.7 → ('14) 12.0 → ('15) 13.4 → ('16) 15.8

** 사회적기업 자금조달('15, 고용부): 정부보조금(51.4%), 특수관계인 차입(43.6%)

- 공공부문 주도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증대되는 사회적경제의 자금수요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

- 사회적경제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만기(인내자본 희망), 지원수단(융자·보증에 편중) 등에서 수급간 미스매치도 발생

③ 사회적금융중개기관 등 생태계 구축이 미흡하고, 사회적 성과 평가 등 관련 시장 인프라도 미비(→거래·정보비용이 큼)

- 사회적금융을 복지제도로 혼동하거나 기대수익이 낮은 반면 위험은 높다는 인식 등으로 민간의 자율적 참여가 저조

※ (참고) 사회적금융시장의 발전단계

조화되지 않은 혁신 (우리나라)	시장 구축 (英·美)	시장가치의 포착 (英·美의 5~10년후)	시장 성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요구와 정책 인센티브에 반응하여 산발적인 기업활동이 발생 ◦ 언뜻 보면 성숙된 시장에서 각각의 혁신가들이 새로운 사업모델을 추구 ◦ 시장의 상단을 제외하면 시장경쟁이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의 중심이 발전하기 시작 ◦ 거래비용을 낮추고 더 많은 활동을 지원하는 시장 인프라가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시장참가자가 사회투자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성장이 일어남 ◦ 시장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이전 인프라에 투자한 고정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음 ◦ 조직들이 보다 전문화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이 정상상태에 도달, 성장이 둔화 ◦ 일부에서는 활동의 축소가 일어나기도 함

* 출처: Monitor Institute(2009), "Investing for Social & Environmental Impact"

III. 사회적금융 해외 사례

- ◆ 영국·미국·일본 등에서는 정부재정 및 공공재원(휴면예금)을 바탕으로 사회적금융 생태계를 구축(☞참고)
- ◆ 협동조합의 전통이 강한 유럽에서는 민간 중심의 사회적금융 지원체계가 자생적으로 발달

1. 정부재정·공공재원(휴면예금) 중심의 지원체계

가. 영국의 Big Society Capital (“BSC”)

- 지속가능한 사회투자시장을 형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12년 사회투자도매은행(Social Investment Wholesaler)인 BSC를 설립
 - 휴면예금 4억 £와 4대 대형은행의 2억 £출자로 재원(6억 £)을 조성하고, 정부 관여를 최소화*하여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
 - * 최대주주인 Big Society Trust의 이사회(이사 8인으로 구성, 영국 내각부 이사 1인 포함)는 BSC 규정(보수·인사규정) 개정과 이사 선임권만 행사
 - BSC는 민간자금과 매칭투자를 전제로 사회적금융중개기관(SIFIs)을 통해 간접지원 → 생태계 구축 및 시장조성 기능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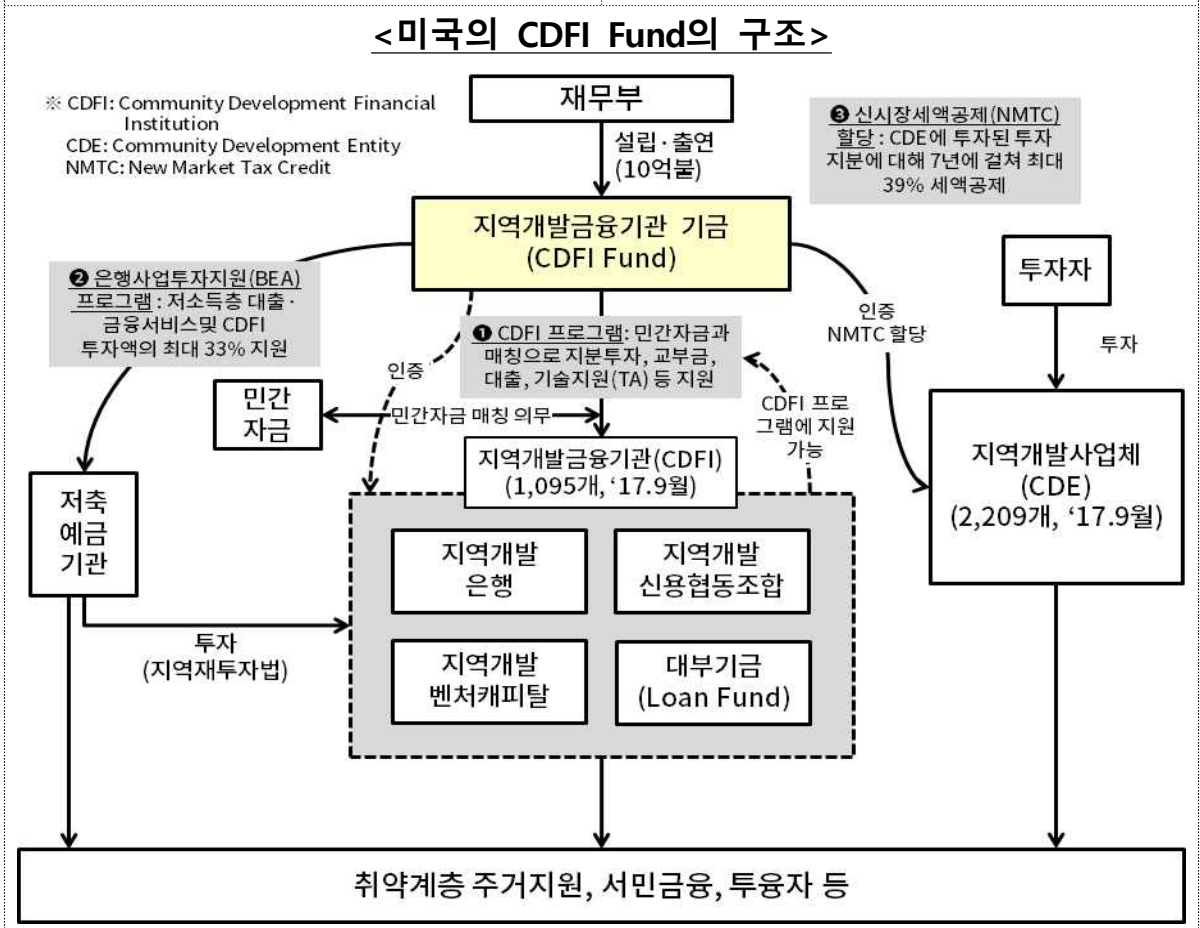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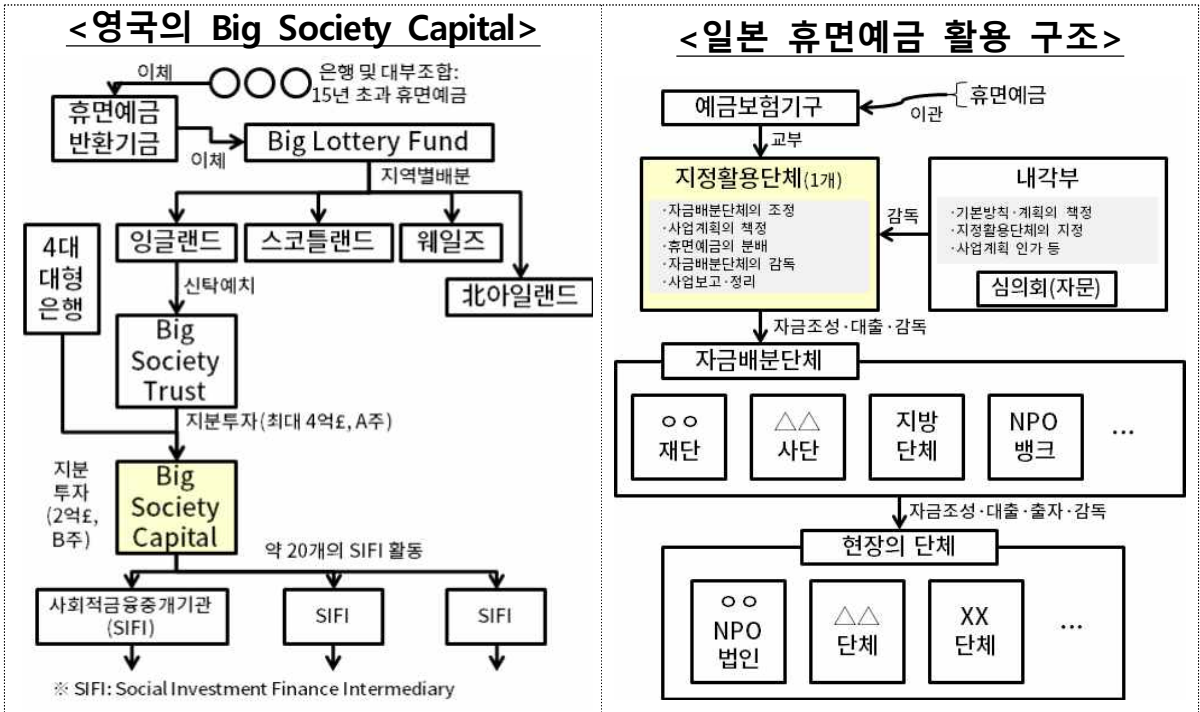
나. 미국의 지역개발금융기관 기금 (CDFI Fund)

- 재정으로 기금(CDFI Fund)을 조성, 기금에서 인증받은 지역개발금융기관(CDFI)을 통해 저소득지역 개발*을 간접 지원(‘95~)
 - * ① CDFI 프로그램: CDFI를 통해 교부금, 대출, 지분투자 등 집행, ② BEA(Bank Enterprise Award): 은행의 CDFI 투자액 일부를 보전, ③ 세제지원(NMTC) 등
 - CDFI는 민간자금 매칭방안 등을 마련하여 CDFI 프로그램에 응모 → 기금은 엄격한 경쟁을 통해 지원대상 CDFI를 선정

다. 일본의 휴면예금을 활용한 공익사업 지원체계

- 일본은 최근 휴면예금을 활용하여 비영리재단을 통해 사회공익 활동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중(‘16년 법제정 → ‘19년 지원 착수)

참고 영국·일본·미국의 사회적금융 지원 체계



2. 민간 기반의 자금지원

가. 협동조합금융 방식

- 협동조합이 발달한 캐나다·스페인 등에서는 **신용협동조합**(협동조합은행), **협동조합 연대기금** 등의 금융지원체계가 발달
 - ① (加) 데잘랭그룹*은 **연대경제금고**(Caisse d'économie solidaire, '71)를 설립하여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에 사회적금융을 제공
 - * 1900년 신용협동조합인 인민금고에서 출발, 금고간 연합·합병, 보험·신탁 등 사업 다각화(40's~) 및 금융그룹화(90s~)를 거쳐 성장한 총자산 2,584억\$의 신탁금융그룹
 - ② (西) 몬드라곤 협동조합그룹의 **라보랄쿠차**(협동조합이 조합원인 신탁, '59)는 그룹내 조합간 자금 재분배 및 사업 총괄조정 기능을 담당

나. 사회적은행 방식

- 네덜란드·이탈리아 등에서는 **예금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여 사회적기업 등에 투융자하는 사회적은행**이 활동
 - ① (蘭) **트리오도스은행**(Triodos Bank)는 은행업 인가를 받아('80), 저리로 조달한 예금으로 **사회적기업, 환경기업** 등에 신용을 제공
 - * 총자산 91억€, 예수금 80억€, 대출 57억€, 세전이익 0.4억€('16末 기준)
 - ② (伊) **방카에티카**(Banca Popolare Ethica, 신탁, '99)는 엄격한 윤리성을 갖춘 비영리조직과 **사회적경제**를 대상으로 신용을 제공

다. 기타

- 소액 다수의 투자자(기부자)와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 프로젝트 등을 중개하는 **크라우드펀딩 방식**의 지원체계가 존재*
 - * 미 KIVA, 영 SSE(Social Stock Exchange) 등이 이에 해당
- 비영리단체·사회적기업에 **경영 지원 및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을 촉진하는 **벤처자선가***도 활동중
 - * 전통적인 기부·후원 등 비영리금융 수단부터 대출·투자·메짜닌, 구조화 금융까지 다양한 금융수단 제공 → 영국의 Impetus-PEF, 일본의 일본벤처자선기금(JVPF) 등

IV. 사회적금융 활성화 추진방안

1 기본 방향

- ① **지속가능한 사회적금융시장** 조성을 위한 촉매제로서 자금의 도매 공급기관인 **사회가치기금(가칭, Social Benefit Fund) 설립을 지원**
 - ‘자금공급→매출액↑→자금회수→자금공급↑’ 등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 **자금공급과 인프라 구축에 중추적 역할** 수행
 - 민간이 중심이 되어 사회문제를 해결한다는 사회적경제의 기본 취지를 감안, **민간주도로 설립·운영되도록** 하고 정부는 **간접 지원**
- ② 투자자-사회적경제기업간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금융과 사회문제에 전문성이 있는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을 **육성**
 - * 1) 투자자와 사회적경제기업간 사이에서 거래·정보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금융 중개를 주된 업무로 하는 기관으로, 2) 투자대상 발굴, 3) 관련 금융상품 개발 등 수행
 - 사회가치기금은 객관·투명한 절차에 따라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중개기관을 통해 자금을 간접 지원
 - 기존 중개기관의 역량강화와 신규 중개기관의 출현을 위해 **체계적인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육성방안 마련·추진**
- ③ 엄격한 선관주의의무 준수가 필요한 **민간투자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과 인센티브 부여 추진**
 - **사회·재무적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사회적금융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평가체계 마련
 - 여타 투자기회에 비해 낮은 기대수익률*을 보전할 수 있도록 **세제 등 인센티브 부여**

* 투자자는 사회적경제가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자신의 투자수익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사회적금융의 기대수익률이 낮다고 인식

④ 사회적금융시장 조성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임을 감안, 우선 정부·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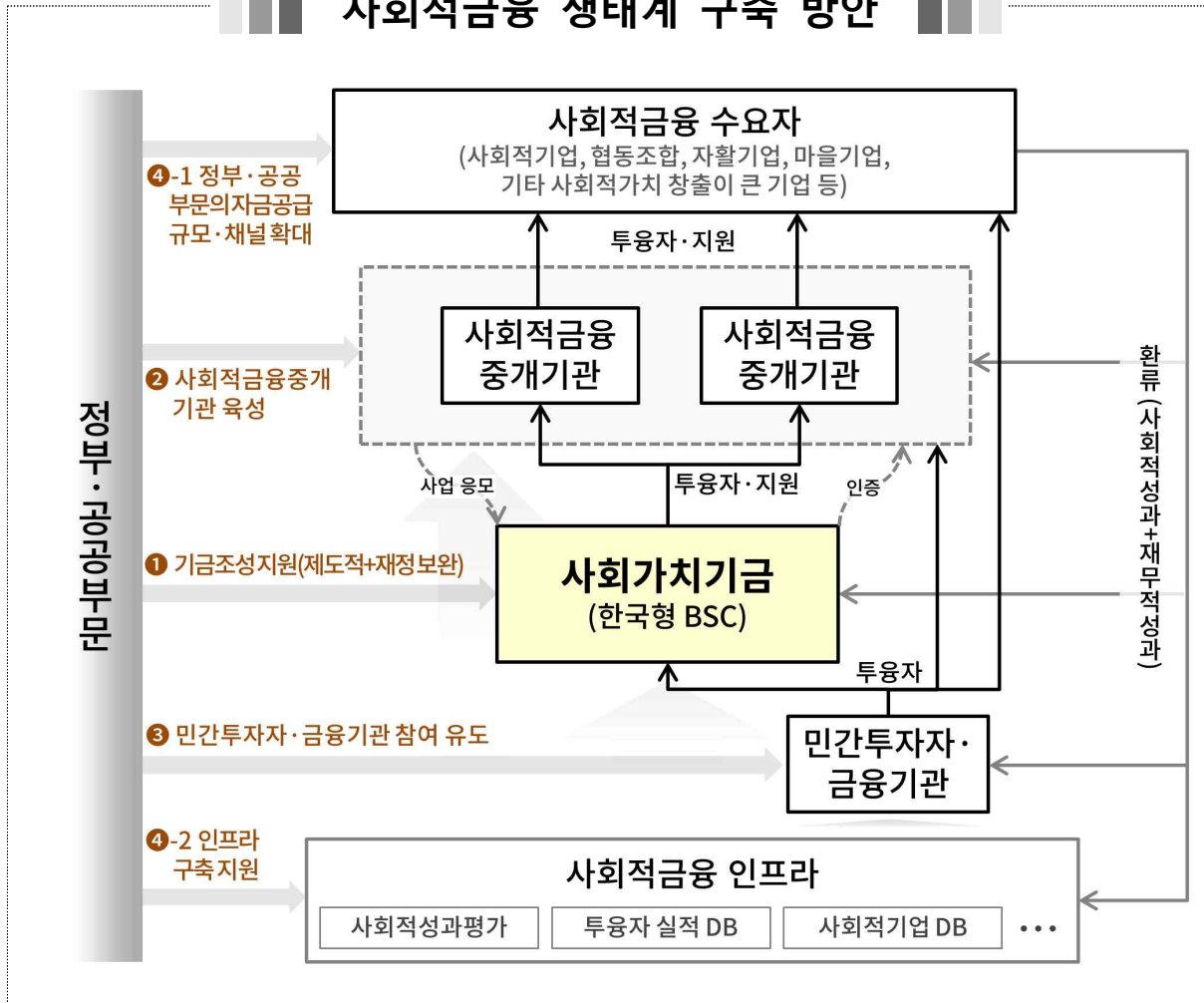
○ 정부·공공부문의 사회적금융 지원채널과 규모를 확충하고 신흥·새마을금고의 자발적 참여를 지원

- 투자·대출·보증 등 다양한 지원수단을 확보하여 성장단계에 맞게 자금을 지원하되, 추후부실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

○ 정부·공공부문의 자금공급 과정에서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투융자실적 DB 등 인프라 구축 병행 추진

수 사회적경제 성장·발달을 위해 인력·판로·보조금 등 여타 지원 방안과 사회적금융 방안의 유기적 연계강화 추진

사회적금융 생태계 구축 방안



2 사회적금융시장 조성 지원

◆ 사회적금융시장의 3대 플레이어로서 ① 사회적가치기금의 조성,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육성 및 민간투자자·금융기관 참여 확대 추진

가. 사회적가치기금(가칭, Social Benefit Fund, “한국형 BSC”) 설립 지원

□ 민간 자율적으로 사회적금융 민간기금* 설립 추진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사회적가치기금의 법적 설립근거 명시

-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출자 및 기부 등으로 주요 재원 확보
- 기금 운영주체는 출자·대출·출연·보증 등 다양한 사업을 탄

- 정부로부터 독립성, 투명성, 책임성,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주체의 기금운용 원칙과 소유·지배구조 마련
- 사회가치기금은 사회적금융중개기관 등을 통해 자금을 간접 지원하는 등 도매기금(wholesaler)으로서 역할을 수행
 -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은 사회적경제기업에 주로 투·융자하되,
 - 일정한도내에서 사회적가치 창출이 큰 일반 중소기업, 낙후지역 개발사업 등도 투·융자대상에 포함
-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의 규모·자금수요,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5년간 3천억 규모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조성
 - 성급한 규모 확대보다는 공급·회수 등 성공사례 창출에 주력
-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가치기금이 자율적으로 설립·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및 재정 보완을 지원
 - 정부·지자체에서 사회가치기금에 출연을 추진*하고 미소금융 재원에서도 출자·출연이 가능하도록 서민금융법 개정** 추진
 -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정부·지자체의 사회가치기금 출연·출자 근거 마련
 - ** ① 법률의 목적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명시, ②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민간기금에 출연·출자)을 업무로 규정
 - 사회가치기금의 독립성 확보차원에서 정부·지자체에서의 출연·출자는 민간재원 이내의 범위에서만 허용
 - 정부·지자체 등에서 시행중인 사회적 금융 관련 기존 사업들을 점진적으로 사회가치기금에 이양 추진
 - 기금설립·운영에 필요한 제도마련, 민간재원 확보 및 다양한 지원수단 활용 등을 위한 인센티브 강구 등
- 민간의 자율적인 논의와 자금모집 등을 통해 기금설립을

추진해 나가되, 정부도 기재부를 중심으로 설립 지원

- 민간주도 「사회가치기금(Social Benefit Fund) 추진단」 설립
 - 사회적경제 연합단체 추천자, 사회적경제 금융기관*, 사회적금융 전문가, 투자의사가 있는 기관 대표자, 법률가 등으로 구성
 - * 예)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 정부(기재부 등)는 추진단 요청시 논의에 참석
 - 추진단은 사회가치기금 설립을 위한 세부사항 검토, 정부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 자금 모집 등의 활동 전개
- 국제 임팩트투자 민간협의체(GSG*) 가입 지원을 통해 미국·영국 등의 사회적금융 선진사례를 도입·자문하는 창구로 활용
 - * **Global Social Impact Investment Steering Group** : '13. G8 정상회의시 영국 주도로 설립한 **임팩트투자 활성화 민간협의체**(16개국 가입중), 우리나라에서는 GSG 가입을 위한 민간의 **임팩트투자자문위원회**가 출범(18.2월)할 예정

□ 올해안에 사회가치기금 설립·운영 개시를 목표로 추진

- 2월초 사회가치기금 추진단 출범과 운영을 적극 지원

나.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인증(Certification)제도 도입

- 사회가치기금은 금융중개기관의 사회적금융 지원경험·실적* 등을 감안하여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
 - * 인증제도 도입 초기에는 사회적금융협의회에서 구축한 중개기관 DB를 활용하고, 이후에는 매년 중개기관 현황을 조사하여 업데이트
- 인증대상은 사회적금융을 주로 수행하는 중개기관뿐 아니라 사회적금융을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일반 금융기관*도 포함
 - * 사회적금융에 전문성 또는 의지가 있는 신기술사, 벤처캐피탈(VC), 신협 등
- 인증요건은 법적형태, 소유구조, 사회적금융 경험·전문성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설정

- **사회가치기금**은 인증받은 **사회적금융기관**에게 다양한 사회적 금융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 사회적금융기관은 **사회가치기금**이 공모하는 사업에 응모하거나, 스스로 사업을 제안하여 민간기금에 대해 자금지원* 요청도 가능
 - * (예시) 사회적금융 관련 투융자를 위해 발행한 채권에 대한 **사회가치기금**의 보증,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투자 유치시 이에 상응한 기금의 출자지원 등
 - **사회가치기금**은 **중개기관의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미인증 중개기관** 등을 대상으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도 운영
 - * 중개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금융교육·컨설팅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재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회가치기금**이 중개기관을 지원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이후, 동법에 반영되어 있는 사회적금융 기관 및 사회적경제지원 중개기관 지정제도와 운영상 연계 강화

다. 민간자금 · 금융기관의 사회적금융 참여 유도

- 민간기반의 사회적금융 사례분석 등 연구용역을 거쳐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수성·다양성 등을 고려한 세제지원 등 지원방안 마련
- 은행 등 금융기관의 지역금융 강화를 위해 도입예정인 지역재투자 제도 도입과정에서 사회적금융 관련 실적을 반영하는 방안 검토

3 | 사회적금융 공급확대

◆ 사회적금융에 대한 투자경험을 축적하고 성공사례의 발굴·확산을 위해 정부·공공재원의 공급확대 및 제도개선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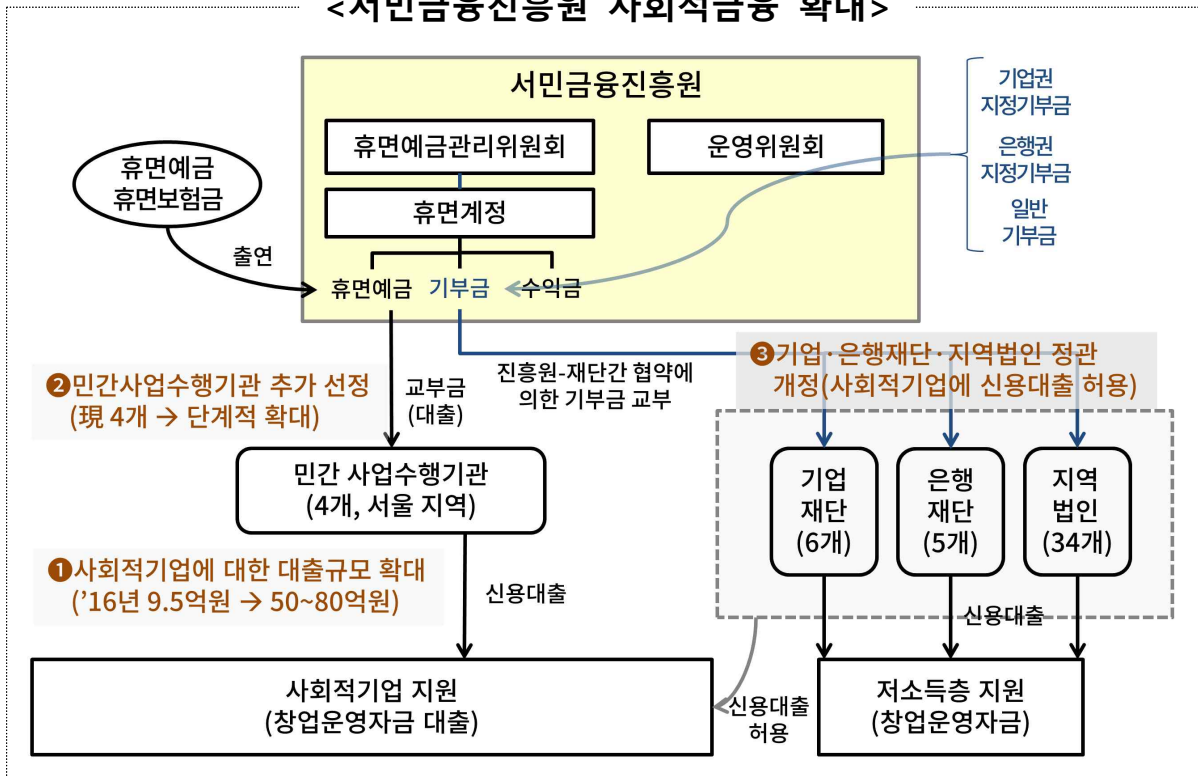
가. 대출 확대

- ① **서민금융진흥원** 대출 확대(단계적으로 연 50~80억원까지 확대)
 - 휴면예금 재원을 활용한 **서민금융진흥원**의 (예비)사회적기업 대출한도를 연간 50~80억원 규모까지 확대('16년 9.5억원 지원)
 - 사업역량 및 지역적 배분 등을 감안하여 민간사업수행기관을

추가 선정(現 서울 4개→서울 外 지역포함 단계적 확대)

- 별도 기부금으로 운영중인 진흥원의 기업·은행재단, 지역법인이 사회적기업에의 대출이 가능하도록 정관개정 협의 추진
- 기업·은행재단, 지역법인이 서민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 대출시에도 기존 서민금융과 유사한 수준의 인센티브 부여

<서민금융진흥원 사회적금융 확대>



2]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공급 확대('18년 400억원)

○ 사회적경제 관련 중소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금리(2.0~3.35%)·장기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사업

- 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범위기준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지원 확대('17년 200억원 → '18년중 350억원)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 창업, 성장, 긴급경영안정 및 재도약 등 기업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금 지원

- 시설자금(10년, 45억원 이내), 운전자금(5년, 5억원 이내) 융자지원
- 사회적경제 관련 소상공인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
 - '18년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 중 사회적경제조직 전용자금으로 50억원 신규편성(자금수요에 따라 필요시 최대 100억원까지 확대)
 - 사회적경제조직의 특성을 반영한 전용 대출 평가모형을 개발* ('18년 상반기)하고, 직접대출 방식으로 지원('18년 하반기)
 - * '18년은 시범사업 성격으로 소상공인 협동조합에 대해 적용
 -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수요를 고려하여 자금 구성 및 지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조건(안) >

구 분	시설자금	운전자금
대출한도	2억원	1억원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분기별 변동금리)	
대출기간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상환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나. 보증 확대

1) 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 확대('17년 66억원 → '18년 400억원)

- 신용보증기금에 사회적경제 지원계정을 신설하고 재정 등 지원을 통해 향후 5년내 최대 5,000억원까지 보증 공급 추진
- 별도 지원계정 신설前에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을 확대 운영('18년중 400억원 신규 보증공급)
- 현재 운영중인 사회적기업·협동조합에 대한 보증사업의 기업당 보증한도, 운전자금 한도사정 특례* 등을 확대
- * 매출액 등 재무지표가 부족하더라도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구분		현행	개선
기업당 보증한도		1억원	3억원
한도사정 특례	사회적기업	5천만원	1억원
	협동조합	3천만원	5천만원

- 마을기업·자활기업에 대한 보증 신상품*을 도입·운영

* (보증한도) 1억원, (한도사정특례) 3천만원 이하

- 취약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재무상황을 고려하여 우대된 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등 맞춤형 평가체계를 운영

* 매출액 대비 차입금 비중 항목, 신용등급·현금흐름 등 신용도취약 항목 적용 배제 등

②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 확대('17년 97억원 → '18년 150억원)

○ 현행 사회적기업·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마을기업·자활기업까지 특례보증 대상을 확대

○ 보증한도는 조합·기업당 최대 4억원 이내로, 보증비율은 100% 전액보증으로 운영하고 보증요율은 연 0.5%로 우대

○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각 지역신보의 특례보증 실적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평가함*으로써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관리

* 평가결과는 중앙회의 재보증료 차등화 등에 반영

다. 투자 확대

① 성장사다리펀드 內 '사회투자펀드' 조성('18년 300억원)

○ 성장사다리펀드 출자 및 민간·공공자금 매칭을 통해 우선 300억원 규모로 1차 조성('18년 상반기)

* '17.11.28 사회투자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공고 → '사회적기업 투자 분야' 펀드는 위탁운용사 선정 완료('17.12.20), '임팩트 투자 분야'는 위탁운용사 접수중

- 투자 집행 상황을 보아가며 향후 5년간 최대 1,000억원까지

단계적 확충 추진

- 펀드 결성금액의 일정비율(60~70%)을 인증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 목적을 지닌 기업에 투자
 - 인증을 받거나 외부 민간전문기관의 '사회적성과 평가'를 거쳐 사회적성과가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을 투자대상으로 선정
 - 일반 펀드 대비, 기준수익률은 낮추고 성과수익률은 높여* 운용사의 적극적인 투자 및 사회적가치 제고 활동 유도
 - * 운용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성과보수 지급 기준수익률을 차등 적용 (예 : 성장사다리펀드 2% 내외, 민간 4% 내외)
- 사회적기업의 성숙도·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투자 방식과 대출 방식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
 - 성장사다리 또는 희망출자자 출자금의 일정 비율(예: 50%, 30%) 이내에서 손실을 우선 부담하도록 하여 민간출자자 부담을 경감
- 인내자본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펀드 존속기한을 장기(10년 내외)로 설정

②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추가 조성('18년 75억+α)

- * '11년부터 '15년까지 4차에 걸쳐 사회적기업에 투자하는 모태펀드 182억원 조성
- '18년 예산 75억원과 민간출자금(α)*으로 펀드를 조성·운용하고, '19년 이후에는 예산에 추가 반영을 검토
 - * 민간출자금은 총 출자금(예산 75억+α)의 30% 이상 모집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뿐 아니라 마을기업·자활기업 등으로 투자대상을 확대
- 출자금 총액의 60% 이상을 투자대상에 투자하고, 나머지도

- 가급적 사회적 기여가 가능한 일반 중소기업 등에 투자
- 펀드 재원별로 기준수익률을 차등화하여 민간출자 활성화 및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
(기준수익률 : 모태펀드 출자 0%, 민간 7%)

③ 소셜벤처*에 투자하는 **임팩트펀드** 조성·운용('18년 1,000억원)

- * 재무적 성과와 사회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혁신성·성장성을 보유한 기업
- 총 1,000억원 내외로 펀드를 조성하고, 벤처캐피탈(VC) 등이 펀드를 운용
 - 모태펀드에서 펀드에 80%를 출자(800억원 내외)하고, VC 등 운용사가 나머지 20%를 민간 투자자로부터 모집
- 운용사 선정 시, 운용사가 투자기업의 사회적 성과(공공성)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제시토록 할 예정
- 성과창출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투자금 회수에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펀드 존속기한을 장기로 설정
- 모태펀드에서 손실을 우선 부담하고 및 민간투자자에 대해 콜옵션을 부여*하여 민간의 투자 참여확대를 유도
- * 이익발생시 민간투자자에게 모태펀드지분 매입권(콜옵션)을 부여

※ (참고) **사회투자펀드·사회적기업 모태펀드·임팩트 펀드 비교**

구 분	사회투자펀드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임팩트투자 펀드
주 재 원	성장사다리	모태펀드(고용부)	모태펀드(중기부)
투자대상	사회적경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등	소셜벤처
조성규모	'18년 300억원(5년내 최대 1,000억원 확대 검토)	'18년 75+ α 억원(모태 75억원, 민간 α)	총 1,000억원(모태 800억원, 민간 200억원)
존속기간	10년 내외	8년	10년 내외
특 징	투자 및 대출 혼용	지분, 전환사채 등 투자	지분 투자

④ 사회적기업의 **크라라우드펀딩** 활용도 제고

- 사회적기업이 ‘업력제한*’ 없이 주식형 클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 * 현행 클라우드펀딩은 업력 7년 이내의 중소기업(벤처기업 등 예외)만 참여 가능
→ 상당수 사회적기업이 인증기간 소요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
- 유망 사회적기업의 주식형 클라우드펀딩시 초기단계에서 투자하는 ‘마중물 펀드’를 마련·지원(성장사다리펀드, ‘18년중 50억원 규모)
 - 아울러, 중개업자의 클라우드펀딩 사이트에 사회적기업 전용 별도 페이지(‘사회적기업 전용관’) 마련을 유도
- 예탁결제원-클라우드펀딩 중개업자간 협력을 통해 ‘사회적기업 발굴 프로젝트’를 개최*하여 클라우드펀딩 활성화를 도모
 - * 예탁결제원 나눔재단을 통해 중개업자의 실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50% 지원을 추진(→연간 50개 내외의 사회적기업 지원 예상)
- ‘사회투자펀드’의 투자대상에 사회적기업 클라우드펀딩 중개 실적이 우수한 중개업자를 포함 (⇨중개업자 기업발굴 노력 유도)

라. 협동·지역금융의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

① 신협·신협중앙회의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

- 신협중앙회에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한 전용기금을 설치(年 100억원 규모)하여 사회적경제기업 대출 및 투자재원으로 활용
 - 전용상품 및 별도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신협을 통해 지원하되, 거액의 경우에는 중앙회가 직접 심사·지원하는 방안도 고려
- 신협의 사회적기업 등 他법인에 대한 출자 허용*, 사회적경제기업의 신협 법인조합원 가입유도 등 상호유대 강화
 - * 신협이 他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신협법 개정을 추진

② 새마을금고의 지역·사회적금융 역할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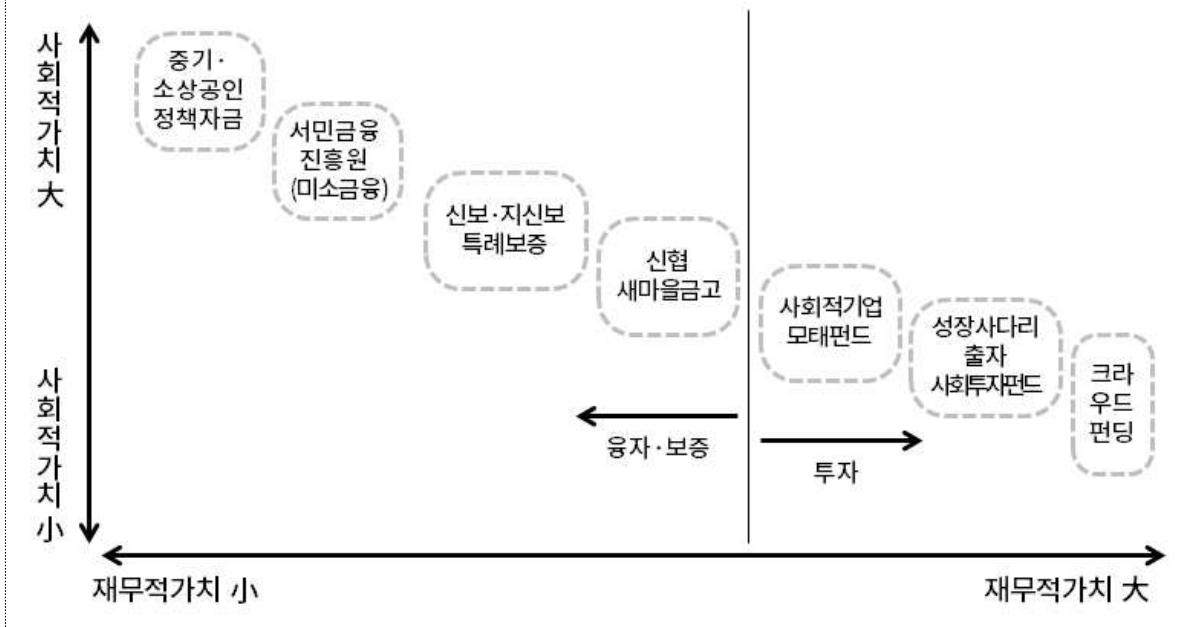
- 지자체-새마을금고-중앙회 공동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지신보와

연계하여 보증부대출 등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실시

* 단, 지역내에서 보증부대출을 취급하는 금고의 범위를 제한하고, 해당 금고가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심사역량을 내재화하도록 유도

○ 새마을금고가 사회적경제기업에 출자할 수 있도록 내규 개정

※ (참고) 사회적금융 사업주체별 중점 자금지원 대상



4 사회적금융 인프라 확충

◆ 정부·공공부문의 사회적금융 공급확대과정에서 심사·평가 및 전달체계 등 인프라 구축을 병행·추진

가. 사회적금융 유관기관간 협력 강화

① 사회적금융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사회적금융협의회' 설치·운영

○ '사회적금융협의회'에는 관계부처, 담당기관* 및 사회적경제 조직이 참여하여 상호 연계·협력을 강화

* 서민금융진흥원, 성장사다리펀드, 모태펀드, 신보·지신보, 신협, 새마을금고 등

- 사회적금융 담당기관간 지원 연계 강화*, 지원정보 공유, 인프라 공동조성, 사후관리방안 등을 협의

- * 사회적경제기업의 인큐베이팅·창업단계에서 성장·재기단계까지 유기적 연계
- 정부보조금사업·인력·판로지원사업 등과도 연계지원이 가능하도록 사회적금융 담당기관과 기타 사업담당기관간 협력도 강화

② 사회적금융 유관기관간 대출·보증·투자 등 정보공유 확대

- 지원내용·실적과 재무·사업 등 기업정보를 사회적금융 담당기관간 공유하여 중복지원 방지와 심사·평가방법 개선에 활용
 - 사회적금융 담당기관은 주기적으로 세부 금융지원 실적을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금융지원의 투명성 제고
- 사회적기업진흥원과 협력하여 기업정보투자마당내(IBK) 전용페이지를 개설하고, 유망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보를 게재

③ 기업마당*내 사회적금융 지원메뉴를 개설하여 사회적금융 담당기관이 제공하는 금융지원 상품·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공시

- *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중소기업 지원정보를 한 곳에 모아 알기 쉽게 제공하는 정책포털사이트(www.bizinfo.go.kr)

나.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육성

①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을 통한 자금지원 확대

- 서민금융진흥원의 민간 사업수행기관을 사업역량 및 지역적 배분 등을 감안하여 추가 선정(현재는 서울지역에만 4개)
 - 서민금융진흥원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사회적기업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업수행기관 선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동 위원회에서 민간 사업수행기관 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우수기관에 대해 운영비 지원, 교부금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
- 사회투자펀드 등 사회적금융 관련 투자자금 운용시도 일반 운용사 외에 사회적금융에 전문성을 갖춘 중개기관의 참여 확대

- 신보·지신보 보증 및 기타 정책자금 운용에 있어서도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 검토

② 사회적금융중개기관과 사회적금융 담당기관간 연계 강화

- 중개기관의 법적형태 및 지원실적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주기적인 현황 조사*를 통해 중개기관 DB를 구축·운영
 - * 대출 중심 중개기관은 서민금융진흥원 투자 중심 중개기관은 성장사다리펀드에서 담당
 - 중개기관 DB는 사회적금융협의회 공동의 자산으로 구축하여 위탁 기관 및 지원 대상 선정 등에 활용
 - 사회가치기금 설치 이후에는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인증제도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중개기관이 사회적금융협의회에 참여함으로써 업계의견 전달 및 네트워크·파트너십 형성을 촉진

다. 사회적 성과 평가체계 마련 등

① 사회적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체계 마련 → 금융지원에 활용

- 우선, 사회적금융 담당기관별로 사회적 목적 실현, 사회적 기여도 등을 반영한 맞춤형 심사·평가체계* 구축·운영
 - * 고용부의 '사회적가치지표' 등을 참고하여 고용안정, 지역사회 기여, 사회적 환원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재무적 특성과의 적정 가중치를 설정
- 추후, 사회적금융 담당기관이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표준 사회적성과 평가체계' 마련
 - 고용부 등 현재 사회적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과 공동 작업으로 추진하고,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평가체계의 수용성을 제고

- 성과 측정시 자의성을 배제하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량 가능한 성과(outcome) 위주의 평가체계를 마련
-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포괄하면서 측정대상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평가지표를 구성하고 각각 객관적 측정방법을 마련
- 개별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가치도를 등급으로 평가·표시할 수 있는 사회적가치 등급제로 발전시키는 방안 검토

② 정부·공공재원의 사회적금융 선별기능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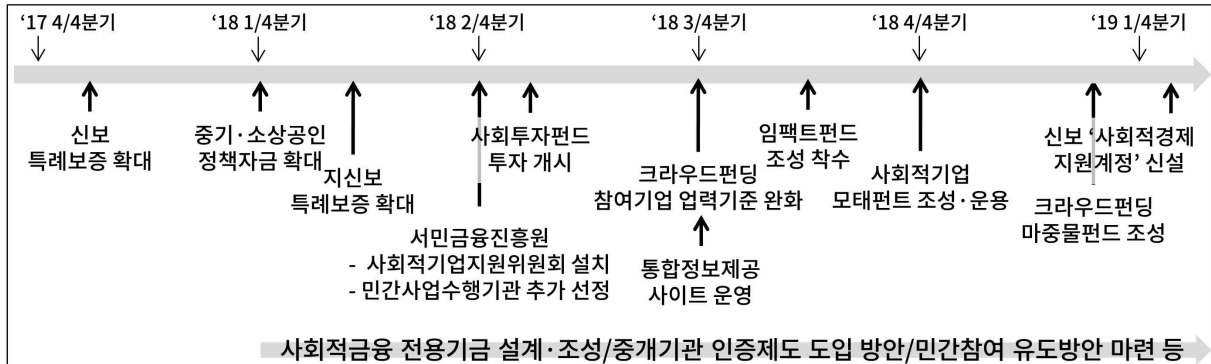
- 정부·공공재원으로 지원시 민간자금과의 매칭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선별기능 보완을 추진
- 신보과 지역신보의 보증에 있어서도 부분보증을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민간 금융기관의 선별기능 활용
- ※ 이러한 시장의 선별 기능의 활용은 민간의 사회적금융 투융자 경험을 확대시키는 효과도 존재

③ 사회적금융 담당기관별로 사회적금융을 통해 창출한 사회적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성과보고서로 작성하여 외부 공개

V. 향후 추진 일정

- '18년중 사회적경제기업에 총 1천억원 이상의 금융지원(대출 450억원, 보증 550억원 등)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
- 개별 정책과제는 다음 일정에 따라 추진하고, 주기적으로 사회적금융협의회를 통해 이행 현황 및 성과를 관리

<과제별 추진 일정>



정책과제	조치사항	일정 · 부처
------	------	---------

1. 사회적금융시장 조성 지원

① 사회적금융 전용기금 조성	'18년중	기재부
②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인증제도 도입	'18년중	기재부
③ 민간자금·금융기관의 사회적금융 참여 유도	'18년중	기재부

2. 사회적금융 공급 확대

가. 대출 확대

① 미소금융 금융지원 확대	▸ 미소금융 자원 활용 확대	'18.2분기	금융위
	▸ 기업·은행재단 등 정관 개정	'18.2분기	금융위
② 중기·소상공인 정책자금 확대	▸ 중기 정책자금 확대	'18.1월	중기부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대	'18.1월	중기부

나. 보증 확대

① 신보 보증지원 확대	▸ 사회적경제 지원계정 신설	'19년	금융위
	▸ 특례보증 지원 확대	'17.10월	금융위
② 지신보 보증지원 확대	▸ 특례보증지원 확대	'18.2월	중기부

다. 투자 확대

① 사회투자펀드 조성	▸ 사회투자펀드 조성·운영	'18.2분기	금융위
②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조성·운영	'18.4분기	고용부
③ 임팩트펀드 조성	▸ 임팩트펀드 조성·운영	'18.하반기	중기부
④ 클라우드펀딩 활용도 제고	▸ 참여기업 업력기준 완화	'18.6월	금융위
	▸ 마중물 펀드 조성·운영	'18.12월	금융위
	▸ 사회적기업 발굴 프로젝트	'18.상반기	금융위

다. 협동·지역금융 역할 강화

① 신협의 역할 강화	▶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기금 설치	'18년중	금융위
	▶ 신협의 타법인 출자 허용	'18년중	금융위
	▶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상품 마련	'18.6월	금융위
② 새마을금고 역할 강화	▶ 새마을금고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18년중	행안부
	▶ 지자체 시범사례 발굴	'18년중	행안부
	▶ 새마을금고의 사회적경제기업 출자 허용	'18년중	행안부

3. 사회적금융 인프라 확충

가. 사회적금융 유관기관간 협력 강화

① 사회적금융협의회 설치	▶ 사회적금융협의회 설치·운영	'18년중	금융위
② 유관기관간 정보공유 확대	▶ 세부 금융지원 실적 공개	'18.하반기	관계부처
	▶ 기관간 지원실적 등 공유 확대	'18.하반기	관계부처
	▶ 기업미당내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정보 게재	'18.6월	중기부

나.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육성

①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을 통한 자금지원 확대	▶ 민간사업수행기관 추가 선정	'18.2분기	금융위
	▶ 기타 중개기관 활용 확대 검토	'18년중	금융위·중기부
② 사회적금융중개기관과 유관기관간 연계 강화	▶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실태조사	'18.하반기	협의회
	▶ 사회적금융중개기관 협의회 참여	'18.하반기	협의회

다. 사회적 성과 평가체계 마련 등

① 사회적성과 평가체계 마련	▶ 담당기관별 맞춤형 평가체계 운영	'18년중	관계부처
	▶ 표준 평가체계 마련	'19년	협의회
② 정부공공재원의 선별기능 보완	▶ 신보지신보 선별기능 보완방안 검토	'19년	금융위·중기부
③ 성과보고서 작성·공개	▶ 담당기관별 성과보고서 작성·공개	'19년	관계부처

2. 광역시도별 통합지원체계 체크리스트

정책 추진체계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한 체크 리스트[광역]

지역명 :

제출기관 :

1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조례 분류	가부	조례명
<input type="radio"/>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 조례		
<input type="radio"/>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 조례		
<input type="radio"/> 마을기업 육성 관련 조례		
<input type="radio"/> 협동조합 육성 관련 조례		
<input type="radio"/> 연관 조례		
<input type="radio"/> 기타		

2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 기본계획 및 정책 수립 현황

주제	가부	내용
<input type="radio"/> 기본계획 수립		
<input type="radio"/> 주요 정책 사항		
<input type="radio"/> 지자체 지원정책 수립		
<input type="radio"/> 관련 예산 규모		
<input type="radio"/> 기타		

3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조 구축 여부

주제	가부	내용
<input type="radio"/>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년 회/
-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활동:
-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행정: 명/ 민간: 명/ 전문: 명/ 기타:

- 실무정책협의회 운영 명
 -협의회의 실질적 운영 년 회/
 활동:
 기타

4 사회적경제 당사자 협의회 구성 현황

주제	가부	내 용
<input type="checkbox"/> 협의회 회원 구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협의회 주요 사업	<input type="checkbox"/>	○ 정책/ 조직/ 교육 등
<input type="checkbox"/> 협의회 예산	<input type="checkbox"/>	○ -----원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협의회 조직 계획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타		

3. 지역기반 정책 설문

광역 시/도별 사회적경제 정책 모니터링 조사서

작성 전 참고사항: 1-1단계에서 확인불가인 경우는 나머지는 응답하지 말아야 합니다. 2단계는 1-2단계에서 '중/상'을 응답한 분이 응답하셔야 합니다.

※ 제시한 정책은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행안부에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추진 중인 정책을 조사한 것을 나열한 것입니다.

목적 및 향후 계획: [1]시/도 단위 중간지원기관 및 협의회를 통하여 중앙 및 광역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체감도와 영향력에 대한 현황조사. [2]이를 통해 ①체감도가 매우 낮은 정책과 높은 정책, ②영향력이 매우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③지역별 편차나 주체별 편차가 매우 큰 정책 확인. [3]①~③관련 전문가 인터뷰. [4] 중앙·지방정부 정책을 진단하고 개선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정책명	시행처 부처 및 시/도	1단계: 체감도			2단계: 지역에서의 영향력 1-2의 '중, 상' 응답자만 응답							3단계: 1, 2단계 응답 이유나 부가설명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역할에 초점을 두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확인 불가	1-2: 체감정도		매우 ← 부정			모르겠음	보 통	긍정 → 매우						
			하	중	상	-3	-2			-1	0		1	2	3	4
농촌 신활력 플러스	농식품부															-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농식품부															-
귀농귀촌활성화	농림축산식품부															-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	산업통상자원부															-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R&D]	산업통상자원부															-
디자인주도 사회적기업 혁신역량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

정책명	시행처 부처 및 시/도	1단계: 체감도			2단계: 지역에서의 영향력 1-2의 '중, 상' 응답자만 응답							3단계: 1, 2단계 응답 이유나 부가설명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역할에 초점을 두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확인 불가	1-2: 체감정도			매우 ← 부정			모르겠음	보 통	긍정 → 매우					
			하	중	상	-3	-2	-1			0		1	2	3	4
사회적경제기업 해외진출 지원 *바이코리아 인콰이어리를 통한 농업회사 법인 수출지원 *사회적경제기업-예술인 매칭을 통한 상품 프리미엄화 지원 * LED분야 사회적기업 해외진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	
도시재생뉴딜	국토교통부															-
생활 SOC																-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고용노동부															-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보건복지부															-
어촌뉴딜300	해양수산부															-
소셜벤처육성사업 * 지역 소셜벤처 육성	중기부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추가정책															-
	각 시/도															-

4.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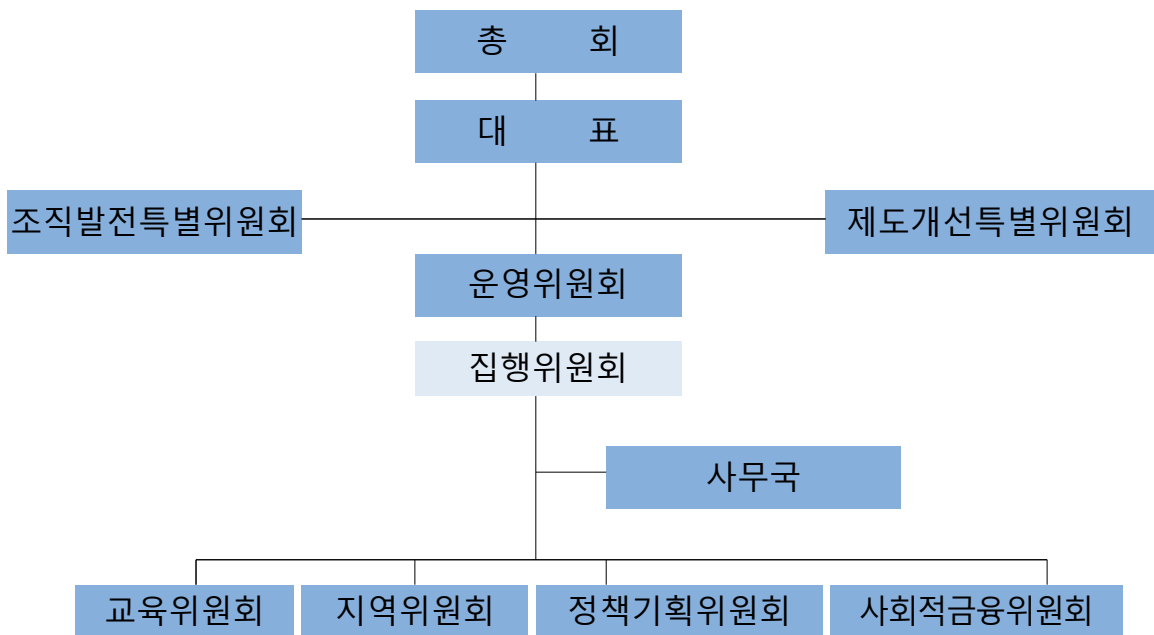
1.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출범 배경 (참고1. 출범선언문)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위해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협동조합기본법제정연대회의>와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해 구성되어 활동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통합된 조직으로, 2012년 11월 21일 출범하였습니다. (2017년 2월 명칭변경. 구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연대회의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 등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활동하는 제 단체들이 연대하고 협력하는 네트워크 조직으로서 한국의 사회적경제운동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살림연합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일하는사람들을위한협동조합연합회 등 20개의 부문.업종연합조직(협의회)와 전북협동사회연대회의,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등 14개 지역연합조직을 포함해 총 63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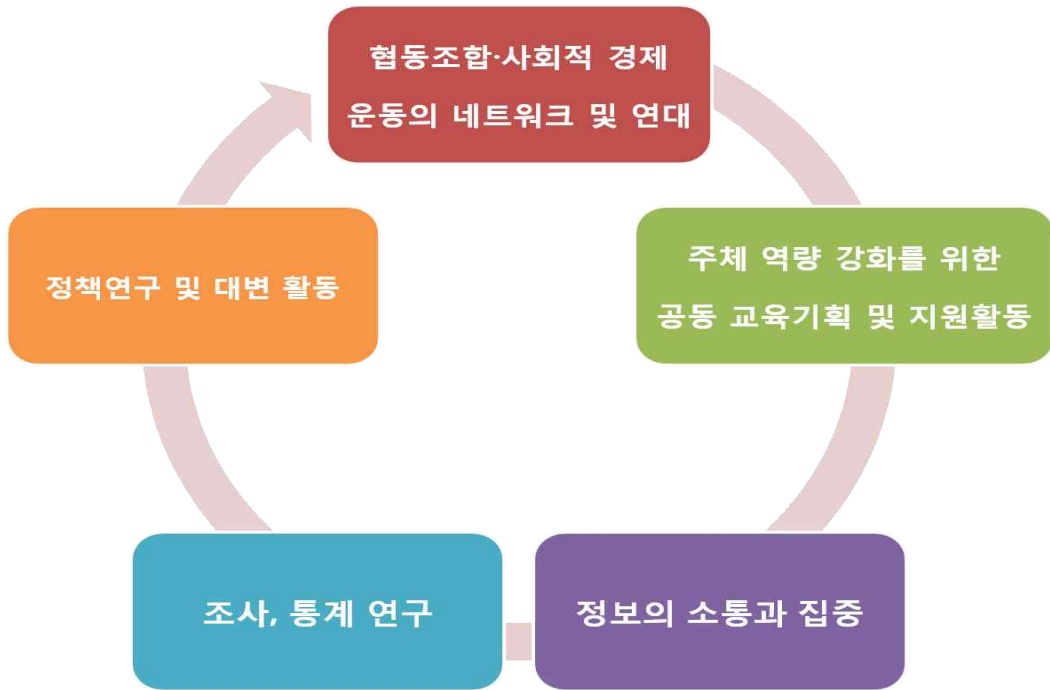
2. 조직도



3. 공동대표단 및 운영위원

<p>공동대표 (7명)</p>	<p>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유영우 (상임대표) 전국자활기업협의회 오인숙 주민신협 이점표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변형석 충남사회적경제협의회 김혜경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p>
<p>운영위원 (15명)</p>	<p>iCOOP조합원활동연합회 박인자 경기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협의회 최현수 사회투자지원재단 문보경 마이크로크레딧 신나는조합 박향희 일하는사람들의협동조합연합회 박강태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육이수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 하덕천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 김경환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최영미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 김진아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민 앵 한국협동조합연구소 김기태 한살림생협연합 정규호 행복중심생협연합회 강은경 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안인숙</p>
<p>정책기획위원회 교육위원회 사회적금융위원회 지역위원회 제도개선특별위원회 조직발전특별위원회</p>	<p>위원장 강민수 외 10개 조직 위원장 박봉희 외 11개 조직 위원장 문보경 외 10개 조직, 중개기관분과, 공제분과 위원장 하재찬 외 11개 조직 위원장 김기태 외 위원 13명 위원장 변형석 외 9명</p>

4. 주요 활동



5. 주요 연혁

2018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 전국대회
 사회서비스 정책포럼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제4회 사회적경제 활동가대회
 사회적경제박람회 2018 사회적경제 보고서 제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부정책 중간점검 보고서 제출

2017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적위원회 자문위원 참여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적위원회 출범식 참석
 19대 대선 정책요구안 마련
 19대 대선후보자 사회적경제 정책 협약식
 문재인정부 사회적경제 정책 특별 토론회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 출범
 사회적경제금융활성화 방안 제출

2016

협동조합 제2차 기본계획 정책토론회
 총선 및 20대국회 정당 공동공약 민간대표 요구안 확정 및 토론회 개최
 총선 및 20대 국회 대응 간담회 및 전달식
 장기 민간역량 강화 정기포럼 (1~3차)
 사회적경제 부문·업종·지역 간담회

2015

정책포럼 “지역단위 사회적경제조직간 연대조직의 자생력 강화 방안” (1~4차)
 협동조합 주간행사 연대회의 주최 토론회 “우리 안의 미래”-협동조합의 도전과 과제
 성명서 발표 “원칙과 약속을 지키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논의를 촉구한다”
 -경제재정소위 논의 무산에 대한 민간 사회적경제진영의 입장
 서울시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간담회
 전국 사회연대 지방정부협의회 간담회
 2016년 지역 사회적경제 시책 수립을 위한 워크숍 1~2차 (춘천, 전주)
 총선공약개발을 위한 사회적경제 우수 정책사례 설명회

2014

국회 협동조합 활성화포럼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의 사회적경제위원회 활동
 6.4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국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실천협의회
 Bruno Roelants(CICOPA 사무총장) Mikel Lezamiz(몬드라곤 협동조합 홍보) 초청간담회
 미래부, 연구재단과 사회적 격차 해소 기술연구사업
 “사회적경제 진영이 사회적경제를 논하다” 릴레이토론회
 사회적경제기본법 전국 순회 간담회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제출
 국회 기재위 사회적경제기본법 공청회 참석

2013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컨소시엄 구성
 협동조합의날 기념식 및 협동조합주간행사 공동조직위원회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금융의 역할 토론회
 국제사회적경제포럼(GSEF2013), 캐나다 퀘벡 상티에 초청
 -“상티에의 경험을 통한 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의 발전 전망 모색” 강연 및 토론회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 발의 국회의원,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합동 기자회견
 전국 협동사회경제 활동가대회 - 협동사회경제의 '지금 선 자리, 갈 길'

2012

제18대 대통령선거 사회적경제 의제 제안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창립총회

참고1.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출범선언문

- 협동과 연대로 더 나은 세상을 향하여 -

오늘날 지구촌 곳곳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다. 이유는 이윤 추구가 최대 목표인 자본 기업이 중심이 되어 이끌어온 세계 경제가 세상을 심각하게 병들게 했기 때문이다. 부의 집중으로 양극화는 심화되었고 굶주리는 사람은 더 늘었다. 노동자들은 실업과 해고의 위협으로 시달리고 있다. 급기야 ‘묻지마 살인’과 같은 심각한 사회 병리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사회적 위기 속에 사회적 경제는 자본가, 투자자의 이윤을 위한 경제 활동이 아니라 협동조합, 공제조합과 같이 조합원의 필요나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 행위를 한다. 국가의 전체 경제에서 사회적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편에 속하는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의 나라들이 제일 살기 좋은 나라로 꼽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 사회적 경제라는 영역이 등장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다. 사회적 경제의 한 분야인 소비자협동조합은 일제 침략기인 1920년대에 출범하여 활발하게 진행되다가 총독부의 탄압으로 막을 내렸다. 이후 해방과 군사 독재시대를 거치면서 민간 소비조합이 여러 차례 시도되었지만 활성화되지 못했다. 반면,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고 육성지원한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는 조합원의 호혜와 자율 운영이 실종된 채 양적으로 성장했다. 협동조합을 제외한 사회적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진행되었다. 노동자들이 실업을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조직을 만들고 자활단체를 시작했다. 그리고 2007년에 정부가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법을 시행하면서 본격적으로 사회적 경제가 등장하였다.

이런 가운데 “세계 협동조합의 해”인 2012년은 한국의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운동에서 큰 자취를 남긴 해다.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협동조합기본법으로 노동자, 소비자, 농민, 자영업자 등 누구나 5인 이상만 모이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동안 한국에는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생협 등은 있었으나 노동자협동조합을 비롯하여 다양한

협동조합을 만드는 길은 막혀 있었다. 그래서 2007년부터 시작된 사회적 기업도 협동조합으로 하지 못하고 주식회사와 같은 상법상의 기업 또는 사단법인 등의 형태로 해야 했다.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으로 사회적 기업, 자활기관 등 여러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협동조합이라는 적합한 옷을 입고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간 민간은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 시행되자 사회적 경제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이고 정부 대응력을 갖추기 위해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를 만들고 2011년에는 협동조합기본법을 만들기 위해 ‘협동조합기본법제정연대회의’를 조직하여 활동해왔다. 이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두 조직이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라는 이름으로 새로 출범하고자 한다. 두 조직을 통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둘째, 사회적 경제에 속한 조직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다. 셋째, 정부와 소통하는 창구를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오늘 출범하는 연대회의는 특히, 사회적 경제 현장 조직들이 성공하고 중심이 되도록 지원할 것이다. 아울러 각 분야의 연합 조직이 튼튼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이제 자본 중심의 폭주하는 기관차는 멈추어야 한다. 그래야 아름다운 푸른 별 지구가 보전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 중심의 경제에서 벗어나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경제가 되어야 한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2012년 11월 21일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참고2.

회원단체 조직현황

	구분	단체명	대표자	주소
1	전국 조직 부문 · 업종 연합회 (협의체)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이경란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14 201호
2		나눔의집협의회	최준기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19길 16
3		두레생협연합회	김영향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291 KT텔레캅빌딩 4층
4		iCOOP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업연합회	박인자	경기도 군포시 공단로149, 401호 (당동, 아이밸리 군포)
5		전국주민협동연합회	정덕용	서울시 중구 다산로 18길 29 중앙빌딩 1층
6		한국자원순환사회적협동조합	박준우	서울시 노원구 상계로23길 4, 덕원빌딩 2층
7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	김상현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12 2층
8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최영미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97 4층
9		일하는사람들의협동조합연합회	박강태	서울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열린사무실 5호
10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	김진아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3길 36 2층
11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	안혜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동1로 80 영등포사경지원센터 301호
12		한살림연합회	조완석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19 4층
13		한국여성노동자회	임윤옥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62-5
14		한국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경창수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18동 306호
15		(사)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박준홍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49 보은개발빌딩 701호
16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변형석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제1동 1층
17		행복중심생협연합회	강은경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71 벽산디지털밸리 3차 208호
18		(사)전국실업단체연대	최인규	서울시 중구 정동 22 경향신문빌딩 15층
19		한국YMCA전국연맹	김흥수	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 68
20		전국학교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김홍섭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3길 36 2층
21		한국자활기업협회	오인숙	서울시 중구 다산로 18길 29 중앙빌딩 1층
22		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	김대형	세종시 전의면 운주산로 1197
23		통합지원기관전국협의회	김재경 주태규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으로 489, 유창빌딩 5층(동산동 11-4번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226, 운천빌딩 5층(운천동)
24	지역조직 (지역 네트워크, 지역 연합회/ 협의회/ 지역 전문기능 조직)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송병주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경제통상진흥원 본관6층
25		(사협)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우순자	강원도 원주시 원일로 137
26		충남사회적경제협의회	김혜경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 56 산학연구관 503호
27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	하덕천 이혜정	충북 청주시 흥덕구 흥덕로 159 BYC 빌딩 2층
28		경남사회적경제협의회	구영민	경남 합천군 쌍백면 묵골2길 43
29		경기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협의회	최현수	경기 남양주시 홍유릉로 248번길 39, 다남프라자 304호
30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김종현	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
31		(사협) 대경협동경제네트워크	박송묵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862 2층
32		(사)플뿌리사람들	송인준	대전시 중구 대흥로10번길 9

	구분	단체명	대표자	주소	
33		경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박진해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32-7	
34		커뮤니티와 경제	김재경	대구시 중구 국채보상로 489 유창빌딩 5층	
35		(사협) 사람과 세상	주태규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동탄지성로 470번길 34, 상가 2층	
36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유영우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1동 1층	
37		사회적경제연구원	유승민	대전시 중구 보문로293 협동의집 3층	
38		경기지역협동조합협의회	이점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15-1 상가 101호	
39		(사협)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문흥석	울산시 중구 신기8길7 2층	
40		(사협) 살림	이종국	광주시 서구 상무중앙로 43 BYC빌딩 7층	
41		사람과경제	하재찬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226 운천빌딩 5층	
42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강익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B109	
43		경기도마을기업협회	한희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610번길 21 1층	
44		사단법인 상생나무	김종익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82, 전문건설회관 3층	
45		전문 기능 조직	사회연대은행(사)함께만드는세상	김성수	서울시 중구 수표로 7 인성빌딩 7층
46			사회투자지원재단	김홍일	서울시 노원구 상계로 23길 4, 2층
47	성공회대사회적기업연구센터		이영환	서울시 구로구 연동로 320 성공회대학교내	
48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신나는조합		정명기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사조빌딩 200호	
49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성재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03호	
50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진남영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동1로 33, 3층	
51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최영찬	세종시 조치원을 터미널안길 60 고용복지플러스센터 7층	
52	(재)함께일하는재단		송월주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6길 36번지	
53	(사)환경정의		김일중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6길 39 시민공간나루 2층	
54	(주)한국사회혁신금융		이상진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12길 20, 606호, 607호	
55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너름		장경호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80-2 풍양빌딩 2층	
56	(사)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재욱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1길 34-3	
57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연합회		김종안	세종시 조치원을 터미널안길 60	
58	단위 조직		논골신용협동조합	유영우	서울 성동구 금호로 140 e-편한세상상가 B동 106호
59		동작신용협동조합	안재남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179	
60		주민신용협동조합	이점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15-1	
61		장안신용협동조합	안병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016	
62		안중제일신용협동조합	이상훈	경기도 평택시 안중은 안현로 381	
63		경동신용협동조합	김봉선	서울시 동대문구 고산자로 487	
64		단원신용협동조합	채복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234 109호	
65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규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1동 508호	

2019 사회적경제 정책 모니터 보고서

2019.12.31.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 유영우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19 서초월드

www.ksenet.org

ksen121121@gmail.com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